

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운용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구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안 소 영

<참여연구자>

연구원 김 설 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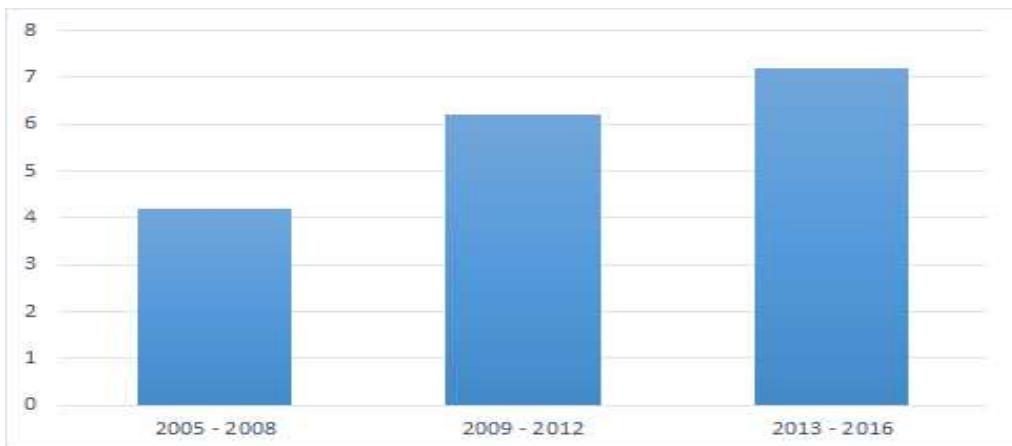
연구원 박 지 문

연구원 배 철 한

1 연구배경

- 아시아태평양지역(Asia-Pacific)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무역절차 활용 방법을 강구해왔다. 특히, 자동화된 세관 시스템(automated customs systems), 전자적 단일창구(electronic single windows) 구축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최근 들어 서류없는 무역 조치(paperless trade measures)는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통관 및 물류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 국제무역에서 서류없는 무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협정문상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에서 「서류없는 무역(paperless-trade or paperless-trading)」으로서 최근 들어 관련 조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FTA협정 상 서류없는 무역 조치 수가 2005년-2008년 대비 2013년-2016년에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FTA 서류없는 무역조치 관련 (규정) 수 (2005-2016)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에 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의 「역내 서류 없는 무역 실현」 등의 목표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통관 자료 교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¹⁾

- 특히 국내 수출기업의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애로와 무역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 e-C/O 교환 확대 논의 선도가 필요하다.

<표 1> C/O와 e-C/O 절차 비교

절차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방문 및 발행 • 추가서류를 위한 재방문 및 발행 • 응용프로그램의 수동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어디서나 가능 • 추가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가능 • 자료 검증의 자동화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양식의 C/O • 직접 혹은 우편으로 수령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C/O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e-C/O 발행 • 온라인 수령 및 당사자 직접 인쇄 • e-C/O 정보가 세관으로 발송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와 수입신고서 • 복잡한 통관절차 • C/O의 위조, 손실, 발행 지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당국 간 e-C/O 정보 교환 • 간단한 통관절차 • 문서의 신뢰성 보장 • 참고비용 절감

자료: 저자 작성

□ 앞으로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이동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한-중 FTA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운영으로 C/O의 형식적 오류 심사 간소화 노력 등이 고조되고 있다.

- 정부는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과 FTA 이행환경에 개선을 위한 통관(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 또한, 협정에서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FTA 기체결국의 원산지자료 관련 운영현황 및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아시아태평양전자상거래이사회(Asia Pacif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 AFACT)는 UN/CEFACTUN/CEFACT에 의해 제정되는 무역 및 전자거래 표준에 의거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무역 및 전자거래 정책과 활동을 촉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최의 「Asia-Pacific Trade Facilitation Forum」은 무역원활화를 주요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며 8번째 회의는 2017년 9월에 개최되었다.

- 넓은 범위에서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 절차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FTA 무역데이터의 전달 및 처리와 관련한 국내외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의 무역원활화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
- 국가별 전자자료교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앞으로 한국형의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 ① FTA 既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
 - ② 국가별 C/O 발급기관 및 C/O 조회사이트 정리
 - ③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 및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단계 정리
 - ④ 국가 간 / 지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교환현황 파악
 - ⑤ e-C/O 교환 중인 국가 (양자간/다자간) e-C/O 교환형식 및 근거법령 파악
 - 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 FTA 既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 우선적으로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의 9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중남미지역의 10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중동국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EU²⁾(전체)로 총 26개국을 조사하였다.
- 국가별 C/O 발급 주체 및 e-C/O 조회 사이트를 정리하였다.
 - (C/O 기관발급) 기관발급인 경우, 발급기간과 세관 및 세관 간 전산연결을 통해 e-C/O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발급 주체는 크게 정부기관(산업부, 무역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구분된다.

2) EU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조회사이트 여부를 조사하였다.

- 기관발급의 경우 대부분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 (C/O 자율발급) 자율 발급이면서 표준 서식이 존재*하는 경우, e-C/O 발급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 등

□ 조사대상국의 국가간 / 지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현황 및 향후계획을 조사하였다.

- (교환 현황) (1) 국가 간 (Bilateral) 교환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여부
(2) 지역단위 (Sub-regional)로 교환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아세안, 중남미 중심)

- (교환 형식) e-C/O 교환 중인 국가들의 교환 형식 (웹/전용망) 및 자료 형식 (스캔형태/데이터형태)

- (근거 법령)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환 협정상 근거법령 · 국내법 근거조항

□ 조사대상국의 국가단일창구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다.

- (단일창구) (1) 국가별 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세안, 중남미 중심)

- (2) 국가별 단일창구의 지역별 단일창구로의 연결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세안, 중남미 중심)

□ 국가별 전자무역서류 교환을 위한 표준시스템을 분석하였다.

- (국제표준) 조사대상국별 지역 간 e-C/O 교환시스템을 위한 국제표준 시스템 모델 조사

□ 한국의 e-C/O 도입 시 기대효과 및 확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중 EODES 데이터 수집을 통한 운영현황 진단
- 향후 e-C/O 도입 및 확대 시 기대효과 분석
- 한국의 e-C/O 시스템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

3 연구 결과

-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국은 총 25개국³⁾으로 국가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조사하고, e-C/O 관리 현황 즉, e-C/O 신청·조회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국이 타 국가와의 e-C/O 교환 여부에 따라 교환 형식 및 근거법령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국의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진행 현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 (single window system)의 구축 여부와 국제표준모델 도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25개 조사대상국 중 23개 국가가 e-C/O 신청 및 발급 조회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 (현황) 미얀마, 이스라엘, EU를 제외한 23개 국가들은 e-C/O 신청 및 발급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급주체) 정부기관(산업부, 무역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나뉜다. 대부분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 (활용) 일반적으로 등록된 수출업체는 언제, 어디서든지 웹사이트를 통해 e-C/O 처리 진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국가별 e-C/O 교환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식적으로 교환단계인 국가들은 양자간(bilateral) 혹은 지역 단위(Sub-regional)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3) EU국가는 인증수출자 조회사이트 여부를 조사하였다.

- 대표적으로 조사대상국 중 아세안과 중남미 지역은 지역단위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및 통관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교환방식) 조사결과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인터넷형 (웹 방식)과 발급시스템형 방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근거법령)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교환은 FTA 협정상의 근거 조항 혹은 국내법 근거 조항 바탕으로 이뤄진다.
- 지역단위의 e-C/O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C/O 양식의 표준화 여부와 교환이 이루어질 환경이 되는 국가단일창구의 역할이 크다.
- (전자무역의 국제표준) 전자 무역 서류의 제출 및 교환을 위한 세계적인 표준형식으로는 WCO의 Data Model (DM), UN의 UN/TDED, UN/EDIFACT, UN/CEFACT 그리고 ISO 표준이 있다. 이중 조사대상 국가들의 e-C/O 교환을 위한 표준화 형식으론 WCO DM 모델이 대표적이다.
 - (WCO DM)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로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은 국가단일창구에서의 e-C/O 교환에 적합하다.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버전인 3.4는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 (ATIGA FORM D)를 포함하고 있다.
 - (국가단일창구)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단일 창구 시스템의 구현은 무역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된 통관서류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아세안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모델을 도입했거나 구축중이다.
- 아세안국가들의 대부분은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모델인 WCO DM(Data Model)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는 아세안상품

무역협정(ATIGA)의 역내원산지증명서인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표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ATIGA Form D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완료하였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실시간 전자교환(real-time electronic exchange) 단계인「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여 역내 원산지증명서(ATIGA Form D) 및 통관서류를 공유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NSW의 연동을 통한 ASW로의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가 승인되는 대로 ASW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 ASW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 (중남미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편차가 있으나, 인근 국가와 교환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인근 국가와의 양자간(bilateral) e-C/O 교환을 활발히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5월부터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정식 e-C/O 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 또한, 이들 국가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자들이 한 번의 접속으로 전체통관 서류를 한곳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맺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최근 국가 단일창구의 정보처리상호운용 관련하여 협정문상의 무역원활화장(chapter)에 추가하고자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해당 네 국가는 e-C/O를 활발히 교환 중에 있으며, 내년 2018년까지 이외의 통관 서류를 교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⁴⁾ 회원국가 간 공통적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 e-C/O 교환을 추진 중이다.

- 2004년에 ALADI는 공통의 프레임 하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디지털화 제안」을 준비함으로써 국경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ALADI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원산지증명(Digital Certificate of Origin)을 구현하여 실제 무역서류 발급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무역활동에서 발생하는 절차비용을 감소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 '17년 5월부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e-C/O 교환을 시작하였으며,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들도 조만간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콜롬비아의 경우 단일창구인 VUCE를 근접 국가들의 단일창구와의 통합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C/O 교환(시범 단계 포함)이 있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이루고 있는 근접 국들과의 양자간 (Bilateral) 혹은 지역단위 (Subregional) 형태로 e-C/O 교환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 대상국 중 아세안회원국들과 중남미의 경우가 지역단위 형태로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뿐만이 아닌 전자적 통관 서류 교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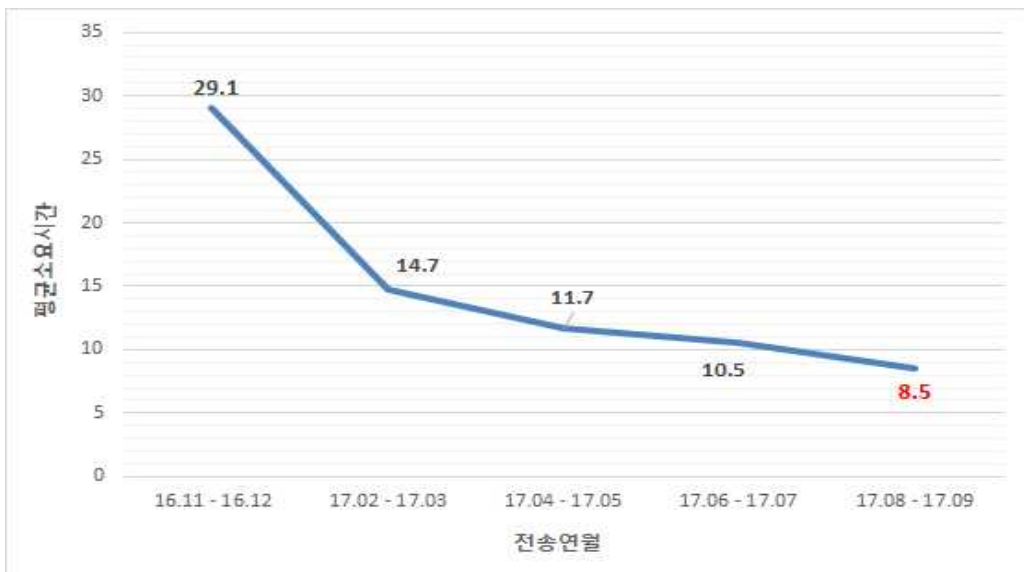
□ 이로서 국가별 ① e-C/O 운용 현황, ② e-C/O 시스템 교환 현황, ③ 국가 단일창구 ④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4) Asociacion Latino Americana de Integracion의 약자이며 회원국들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있다.

e-C/O 현황 및 향후 e-C/O 도입 및 확대 시 기대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 (통관시간) FTA 체결국과의 e-C/O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통관시간 절감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CO-PASS 시행 후 통관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C/O 교환 평균 소요시간이 CO-PASS 시범기간('16년 11월 - '16년 12월)의 약 29시간 대비 정식시행기간('17년 08월 ~ '17년09월)은 약 8.5시간으로 20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e-C/O 시스템 도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통관시간 감소에 기여하며, 시스템이 안정화될수록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중 CO-PASS e-C/O 교환 평균 소요시간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 한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본 C/O 제출이 잦은 편이다. FTA 既체결국과의 e-C/O 교환 확대를 통해 원본 C/O 제출 면제와 상호 간 신속한 원산지 증명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환건수) 다음으로 한-중EODES 도입이후 동일 분기 대비 절대적 발급 건(수)의 증가는 원산지 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향후 FTA 활용률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3> 한·중EODES 전면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 실제 발급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6년 1, 2분기의 13,417건 대비 ‘17년 1, 2분기의 71,9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e-C/O 교환시스템 안정화에 따라 1년 동안의 발급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한-중 FTA의 EODES를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격 시행 이후 ‘17년 5월부터 ‘17년 10월까지의 총 발급 건수는 10만 건⁵⁾ 정도이다. 한-중EODES를 통한 한-중 간 e-C/O 총 교환건수는 연간 약 35만 건⁶⁾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한-중 APTA e-C/O 월별 발급 건(수)는 5월(17,480), 6월(16,019), 7월(15,736), 8월(17,472), 9월(20,751), 10월(15,378)로 월 평균 10만 건 이며 연 평균 20만 건 정도이다.

6) 16년 4분기 ~ 17년 2분기까지의 한-중 FTA e-C/O 총 발급 건수에 한-중 APTA e-C/O 연 평균 발급 건수를 합한 값이다.

- (활용률 제고) 실제 한-중 FTA 발효 1년차와 2년차의 수출입 활용률 변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중국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비관세조치 확대 및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서 對중국 수출 활용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55% 대비 '17년 2분기는 42%로 전년분기 대비 약 13% 정도 떨어졌다.
- 수출품목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상이하게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對중국 수출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33% 대비 '17년 2분기는 36.2%로 전년분기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EODES 도입이 중소기업의 FTA활용으로의 편익을 증대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활용만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부재하여 일반 인력에 FTA 관련 업무가 가중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e-C/O 교환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간소화의 결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른 수출활용 증가로도 해석 가능하다.

<표 2>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활용률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 기 업	2016년 (발효 1년차)	49.0	46.5	55.0	54.5	50.2	61.4	50.5	61.2
	2017년 (발효 2년차)	41.0	60.7	42.0	60.5	-	-	-	-
중 소 기 업	2016년 (발효 1년차)	26.1	53.9	33.0	63.4	37.1	66.0	37.8	66.9
	2017년 (발효 2년차)	39.4	68.5	36.2	68.1	-	-	-	-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 한편,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활용률의 증가가 전적으로 한-중 EODES도입에

따른 효과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비용절감) 우선 한-중 EODES 도입 및 활용에 따라 기업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업측면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C/O는 기본적으로 종이형식(hard copy)로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이비용⁷⁾이 발생한다. 그리고 C/O 원본제출 의무화로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C/O 원본이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는 서류 특급 발송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중 EODES의 도입으로 對중국 수출 시 원본 C/O 제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본 C/O 제출을 위한 우편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rray}{rcccl} \text{우편비용} & 35 \text{ 만} & \times & 45,100\text{원} & = & \text{약 } 158\text{억 원} \\ & (\text{발급건수}) & & (\text{국제우편비용}) & & (\text{절감 예측비용}) \end{array}$$

- 또한, C/O의 전자적 발행으로 인해 기업의 FTA활용 편의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FTA활용 전담인력의 업무로드가 줄어들어 따른 인력비용 절감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 당 약 40만원의 인력비용 절감으로 한-중 EODES 도입에 따른 전체 對중국 수출기업⁸⁾의 총 인력비용 절감은 약 128억 원⁹⁾으로 예상된다.

$$\begin{array}{rcccl} \text{인력비용} & 11 \text{ 건} & \times & 6 \text{ 일} & \times & 6,030\text{원} & = & \text{약 } 40\text{만 원} \\ & (35\text{만 건} / 32,064\text{개(기업)}) & & \text{종이C/O발급시} & & \text{'16년 기준} & & (\text{절감 예측비용}) \\ & & & \text{통관까지} & & \text{최저임금} & & \\ & & & \text{소요시간} & & & & \end{array}$$

7) 세관 측에서의 C/O 종이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8) '16년 3분기부터 '17년 2분기까지의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2,064개이다.

9) 산출근거 : 32,064개 (기업) x 40만원 (인력비용)

- 이뿐만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CO 관련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화물이나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물품납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입통관지연으로 인해 생산 및 물품공급에 차질이 생겨 기업이윤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C/O 교환을 하면 물류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EODES의 도입으로 '16년 3분기부터 '17년 2분기까지 3만 여개의 對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시간이 평균적으로 2일¹⁰⁾ 정도 빨라졌는데, 이것은 e-C/O의 도입이 물류흐름이 빨라지는 효과에 도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2참조>)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의 e-C/O 교환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C/O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애로가 많고,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엄격한 국가와의 e-C/O 교환 추진
 - 한국은 우선적으로 C/O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인 국가들 대상으로 한국과의 e-C/O 교환을 제안한 상태이다. e-C/O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지체 사례가 많은 국가가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C/O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국가 e-C/O 교환 추진
 - 한국이 현재까지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 상대국의 C/O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보통 C/O 표준서식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지만 C/O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기업비용 발생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 따라서, 향후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할 국가들은 C/O의 기관발급

10) <그림122>에 따라 통관시간이 20일(약 2일) 단축되었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율발급 또한 교환 가능한 표준서식과 플랫폼만 갖추어 진다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 까지 e-C/O 확대가 가능하겠다. 이러한 경우 C/O의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C/O 교환패턴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발급의 주체가 상이한 것 이외에는 발급형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 e-C/O 교환 추진대상국의 기존에 구축된 국가 간 자료교환시스템에 한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추진 제안

- e-C/O 교환 확대를 위해서는 추진 상대국의 기술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e-C/O 교환모델 중 추진상대국이 既교환중인 모델(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여 향후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D와 같은 경우에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적으로 시범교환 중에 있다. ATIGA FORM-D의 형식은 상호 간 WCO DM 모델 3.4 버전의 기술적 프레임이 갖춰진 하에서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인 UNI-PASS는 관세행정의 표준화에 따라 WCO DM 3.4 모델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 FTA간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 이미 지역 간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ATIGA FORM-D의 기술적 프레임에 한국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의 e-C/O 교환 표준화 기술 프레임 제안

- 앞으로 국가 간 e-C/O 교환 추진 시에 전자 무역 서류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WCO, ISO, UN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통일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추이를 보며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이 e-C/O 교환 확대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bilateral) 상호인정(호환) 보다는 더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WCO DM 표준 모델과 상호 호환 가능하며 국제 표준 모델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각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관리 및 교환현황	14
제1절 국가별 현황	14
(1) 중국	14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4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7
③ 향후 발전계획	19
④ 무역원활화 현황	20
(2) 일본	22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2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23
③ 향후 발전계획	26
④ 무역원활화 현황	26
(3) 인도	27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7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30
③ 향후 발전계획	32
④ 무역원활화 현황	32

(4) 아세안_인도네시아	35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35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36
③ 향후 발전계획	39
④ 무역원활화 현황	39
(5) 아세안_말레이시아	41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41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42
③ 향후 발전계획	45
④ 무역원활화 현황	45
(6) 아세안_필리핀	48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48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48
③ 향후 발전계획	50
④ 무역원활화 현황	51
(7) 아세안_싱가포르	53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53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54
③ 향후 발전계획	57
④ 무역원활화 현황	58
(8) 아세안_태국	60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60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60
③ 향후 발전계획	61
④ 무역원활화 현황	61

(9) 아세안_베트남	63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63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64
③ 향후 발전계획	69
④ 무역원활화 현황	70
(10) 아세안_라오스	72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72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73
③ 향후 발전계획	75
④ 무역원활화 현황	76
(11) 아세안_캄보디아	78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78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78
③ 향후 발전계획	80
④ 무역원활화 현황	81
(12) 아세안_미얀마	82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82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84
③ 향후 발전계획	86
④ 무역원활화 현황	86
(13) 중남미_칠레	88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88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90
③ 향후 발전계획	92
④ 무역원활화 현황	92

(14) 중남미_과테말라	94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94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95
③ 향후 발전계획	97
④ 무역원활화 현황	98
(15) 중미_엘살바도르	100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00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01
③ 향후 발전계획	104
④ 무역원활화 현황	105
(16) 중남미_콜롬비아	106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06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07
③ 향후 발전계획	109
④ 무역원활화 현황	110
(17) 중남미_페루	111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11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12
③ 향후 발전계획	114
④ 무역원활화 현황	115
(18) 오세아니아_호주	116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16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21
③ 향후 발전계획	124
④ 무역원활화 현황	124

(19) 오세아니아_뉴질랜드	125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25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33
③ 향후 발전계획	141
④ 무역원활화 현황	142
(20) 중남미_에콰도르	143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43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43
③ 무역원활화 현황	144
(21) 중남미_멕시코	145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45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46
③ 향후 발전계획	147
④ 무역원활화 현황	148
(22) 중동국_이스라엘	149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49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50
③ 무역원활화 현황	151
(23) MERCOSUR_브라질	152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52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55
③ 향후 발전계획	158
④ 무역원활화 현황	158

(24) MERCOSUR_아르헨티나	162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62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65
③ 향후 발전계획	167
④ 무역원활화 현황	168
(25) MERCOSUR_파라과이	169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69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70
③ 향후 발전계획	171
(26) EU (한-EU FTA)	172
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72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The Registered Exporter's System)	172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 (The Registered Exporter's System :REX) ·	173
④ 무역원활화 현황	176
제2절 e-C/O 교환 근거 조항	178
(1) ALADI · MERCOSUR	178
(2) ASEAN	181
(3) 뉴질랜드-중국 FTA	183
제3절 종합적 연구결과	185
제3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192
제1절 e-C/O 논의 현황	192
제2절 e-C/O 도입·확대 시 기대효과	194
제3절 한국 e-C/O 시스템 발전방안	200

제4장 결론 206

참고문헌 210

표 목 차

<표 1> 서류없는 무역 조치의 유형 및 FTA 조항 2

<표 2> C/O와 e-C/O 절차 비교 9

<표 3> 既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12

<표 4> 중국 지역별 단일창구 21

<표 5>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활용률 (%) 197

<표 6> 既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200

<표 7> 既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201

<표 8> e-C/O 교환모델 현황 202

<표 9> WCO DM 모델 버전별 특징 203

<26개국 e-C/O 관리 및 교환현황> 190

그림 목 차

<그림 1> FTA 서류없는 무역 조치 수 (2005-2016)	2
<그림 2>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개요	6
<그림 3> 한-중FTA e-C/O 교환 절차	8
<그림 4> 중국 iTowNet (信城通네트) 홈페이지 화면	15
<그림 5> CCPIT 원산지증명서 인증절차	16
<그림 6> AQSIQ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17
<그림 7> CCPIT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18
<그림 8> 중국 중국검험검역전자업무망	21
<그림 9> 일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화면	22
<그림 10> 일본의 수출 서류 전송시스템 파일럿 실험 환경 구성	24
<그림 11> 말레이시아 - 일본 eCO 실증 테스트	25
<그림 12> 일본 단일창구 NACCS 화면	26
<그림 13> 인도 EIC 홈페이지 화면	27
<그림 14> 인도 MPEDA 홈페이지 화면	28
<그림 15> 인도섬유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29
<그림 16> 인도 EIC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30
<그림 17> 인도 EIC의 PCO 발행 사이트 화면	31
<그림 18> 인도 단일창구 SWIFT	33
<그림 19> 인도 단일창구 SWIFT	34
<그림 20> 인도네시아 eSKA 홈페이지 화면	36
<그림 21> 인도네시아 eSKA 조회사이트 화면	37
<그림 22> 인도네시아 e-SKA 조회사이트 화면	37
<그림 23> 인도네시아 단일창구 화면	40
<그림 24> 말레이시아 ePCO 발급 절차	43
<그림 25> 말레이시아 ePCO 조회 사이트 화면	44
<그림 26> 말레이시아 단일 창구 myTRADELINK	46

<그림 27>말레이시아 단일창구 기능	46
<그림 28> 필리핀 단일창구	51
<그림 29> 싱가포르 TRADEXCHANGE ECO 시스템	55
<그림 30> 싱가포르 Gets ECO 시스템	56
<그림 31> 싱가포르 세관 단일창구 접속 사이트	58
<그림 32> 태국 단일창구	62
<그림 33> 베트남 ECOSYS ECO 조회사이트 화면	65
<그림 34> 베트남 ECO 시스템이 취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65
<그림 35> 베트남 ECOSYS ECO 조회사이트 화면	66
<그림 36> 베트남 VCCI ECO 신청시스템 화면	67
<그림 37> 베트남 VCCI ECO 신청양식 작성 화면	68
<그림 38> 베트남 단일창구	70
<그림 39> 라오스 ECO 조회사이트 화면	74
<그림 40> 라오스 ECO Form AK 작성 화면	74
<그림 41> 라오스 단일창구	76
<그림 42> 라오스 트레이드 포털	77
<그림 43> 캄보디아 ECO 조회사이트 화면	79
<그림 44> 미얀마 UMFCCI ECO 신청 및 발급 진행과정	84
<그림 45> 미얀마 UMFCCI ECO 신청 화면	85
<그림 46> 칠레산업연합회(SOFOFA) 사이트 로그인	90
<그림 47> 칠레산업연합회 (SOFOFA) 원산지증명서 작성 서식	91
<그림 48> 칠레산업연합회 (SOFOFA) 원산지증명서 조회	91
<그림 49> SICEX 메인화면	93
<그림 50> 과테말라 VUPE 온라인 조회	96
<그림 51> 과테말라 VUPE 온라인 작성	97
<그림 52> 과테말라 SEADDEX의 사용 가이드 매뉴얼	98
<그림 53> 과테말라 - 온두라스와 시스템 연동 추진	98
<그림 54>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100
<그림 55>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조회 결과	102

<그림 56>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102
<그림 57>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작성	103
<그림 58> 엘살바도르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104
<그림 59>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로그인 화면	107
<그림 60>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108
<그림 61>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디지털 발급	108
<그림 62>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화면	109
<그림 63> 콜롬비아 VUCE 메인 화면	110
<그림 64> 한-페루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111
<그림 65> 페루 VUCE 로그인	113
<그림 66> 페루 VUCE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및 작성 화면	113
<그림 67> 페루 VUCE의 메인 화면	115
<그림 68> 호주 비즈니스 컨설팅 및 솔루션 홈페이지	117
<그림 69> 호주 남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118
<그림 70> 퀸즈랜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119
<그림 71> 호주 서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119
<그림 72> 호주 산업협회 홈페이지	120
<그림 73> 호주 Business Chamber PCO 신청 및 조회사이트	121
<그림 74> AANZFTA PCO 조회 사이트	122
<그림 75> 호주 PCO 신청 시스템 eCertify 화면	123
<그림 76> 뉴질랜드 Export NZ 화면	125
<그림 77> 뉴질랜드 NZCFTA 화면	126
<그림 78> 뉴질랜드 NZC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127
<그림 79> AANZFTA 화면	128
<그림 80> 뉴질랜드 AANZ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129
<그림 81> 오클랜드 지역 상공 회의소 화면	130
<그림 82> EXPORT NZ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133
<그림 83>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134
<그림 84>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135

<그림 85>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136
<그림 86>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137
<그림 87>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사용법	138
<그림 88>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등록	138
<그림 89> 뉴질랜드 지역별 상공회의소 사용자 등록	139
<그림 90> NZCFTA 뉴질랜드 세관 수출 규칙	140
<그림 91> AANZFTA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141
<그림 92> 뉴질랜드 무역 단일 창구	142
<그림 93> 에콰도르 Ecuapass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143
<그림 94> 에콰도르 단일 창구	144
<그림 95> 멕시코 단일 창구	145
<그림 96> 멕시코 단일 창구	146
<그림 97>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화면	149
<그림 98>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홈페이지	152
<그림 99> 브라질 각 주별 산업연맹 홈페이지	153
<그림 100> 브라질 각 주별 PCO 발급기관	154
<그림 101>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	155
<그림 102>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	156
<그림 103>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156
<그림 104>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 설명	157
<그림 105>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159
<그림 106>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사용법	160
<그림 107>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상의 전자원산지증명서	161
<그림 108>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162
<그림 109>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163
<그림 110>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원산지증명서	164
<그림 111>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165
<그림 112> 아르헨티나 수출입연합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166
<그림 113>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167

<그림 114> 파라과이 원산지증명서 지정기관	169
<그림 115> 파라과이 단일 창구	171
<그림 116> EU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REX) 화면	175
<그림 117> EU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REX) 조회 화면	175
<그림 118> 유럽 해운물류 단일창구 (European Maritime Single Window)	177
<그림 119> 아세안 단일창구 네트워크 (ASW)	187
<그림 120> ALADI - 전자원산지증명서 (COD)	189
<그림 121> 한·중 CO-PASS 처리 절차	192
<그림 122> 한·중 CO-PASS e-C/O 교환 평균 소요시간	194
<그림 123> 한·중EODES 전면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1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아시아태평양지역(Asia-Pacific)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무역절차 활용 방법을 강구해왔다. 특히, 자동화된 세관 시스템(automated customs systems), 전자적단일창구(electronic single windows) 구축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서류없는 무역 조치(paperless trade measures)는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통관 및 물류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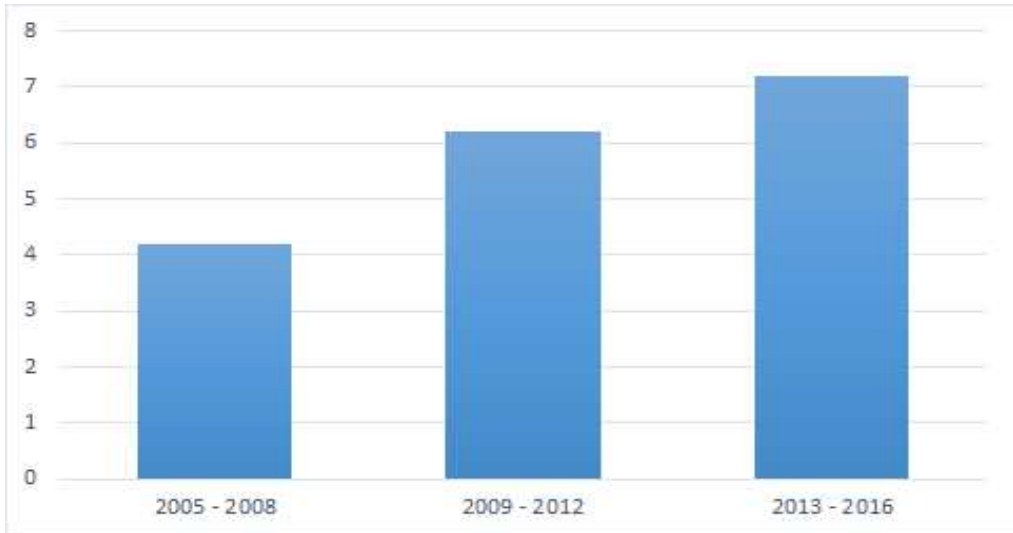
「서류없는 무역」은 공식적으로 무역 관련 문서의 교환을 포함하여 전자통신 기반의 무역으로 정의된다. 2016년 5월 UN ESCAP 회원국들이 채택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서류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의 전자양식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공식화하였다¹⁾. 이는 WTO의 「무역원활화협정」과 APEC의 「국경 간 서류없는 무역」으로 목표를 함께하고 있다. 서류없는 무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흐름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기업과 정부(business to government)간 에서 정부와 정부(government to government)간 으로의 확대로 무역 관련 서류 흐름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²⁾.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소비자(B to C) 및 기업과 기업(B to B)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는 전자상거래와는 다르다. 국제 무역에서 서류없는 무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상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에서 「서류없는 무역(paperless-trade or paperless-trading) 조항」으로서 최근들어 관련 조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FTA협정 상 서류없는 무역

1) <http://www.unescap.org/resources/framework-agreement-facilitation-cross-border-paperless-trade-asia-and-pacific>

조치 수가 2005-2008년 대비 2013년-2016년에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FTA 서류없는 무역 조치 수 (2005-2016)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다음의 <표 1>은 「서류없는 무역조항」과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을 정리하였다. 총 24개의 서류없는 무역 조치이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국내 이해당사자 간의 전자형식의 정보 교환(1-12), 두 번째, 국경 간 전자적 자료 및 서류 교환(13-24) 마지막으로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둔 전자인증서 및 전자서명과 관련된 조항(14-18) 이다.

<표 1> 서류없는 무역 조치의 유형 및 FTA 조항

	조치/규정	내용
1	전자사본 수용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관련 문서는 서류(종이)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호주-중국 EPA Art.13.9)

2	무역관련 문서의 전자적 처리 및 제출	이 규정은 도착 전 처리를 위한 전자 문서의 사전 준비 조항, 상품의 신속한 선적, 도착 전자자료의 전자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한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급화물로 수입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단일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예: 한-뉴질랜드 FTA 제4.4,4.7,4.8조)
3	해운 화물 적하목록의 전자 제출	WCO 개정 교토 협약 및 관련 국제 해상기구 (IMO) 협약의 적용 받는다.
4	항공화물 적하 목록의 전자 제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특급화물에 포함된 모든 물품을 다루는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예:한-베 FTA 제4.7조)
5	수출 / 수입 면허의 허가 전자 시스템	유라시아 경제 조약에 관한 조약, 제3국과 관련한 비관세 규제 조치에 관한 부속서,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허가 및 허가 규칙 제 2 조
6	위생 검역 인증 전자시스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7.12조
7	원산지증명서 전자시스템	이규정은 제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COO전자인증시스템(e-certification system)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특혜관세를 요구한다. (호주-중국 FTA제3.16조) 전자형식의 CO발행은 전자시스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인도-말레이시아 ECA 부속서3-3 7(a)) COO의 검증을 위한 E-system (예:중국-칠레 FTA 부속서6)은 COO의 전자교환 하에서 이뤄진다.
8	전자 기록 보관	이 규정은 수출입과 관련이 있으며 보관되어야 할 서류는, 원산지와 관련된 제반 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포함 할 수 있다. (예:중국-싱가폴 FTA 제3.1조)
9	전자 지불 시스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0	전자통관시스템/ 관세행정 자동화 시스템	관세 행정 기관의 전자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무역 업자는 상품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중국-페루 FTA 제 54.4조) 세관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 (예 EFTA- 콜롬

		<p>비아 FTA 부속서 vii, 3.2 (b)</p> <p>캐나다 - 콜롬비아 FTA 제 413 조와 관련한 협약에는 통관 자동화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수입 및 수출 단계에서 세관신고를 제출할 목적으로 단일 관리 문서 또는 전자적 플랫폼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예: EU- 카메룬 EPA 제.35 1 (b)). 모든 세관보고를 위한 전자적 수단의 수립 (예: 호주 - 칠레 제5.11조)</p>
11	단일창구시스템	ASEAN Single Window 구축 및 이행 협정
12	내부 조직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 시스템	<p>본 규정은 관할 당국과 무역 공동체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시스템과 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적 수단이 포함된다. (호주-중국 제 4.6조)</p> <p>그러나 단일창구시스템과 달리 거래자에 의한 정보를 단일 제출은 암시되어 있지 않다.</p>
13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본 규정은 관할 당국이 제정한 법령, 규제 및 조치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체 규정도 포함한다. (예: 호주 - 칠레FTA 제 16.5 조)
14	전자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사용	본 규정에는 전자서명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공식 서명(도장)도 포함된다. (예: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제10장 제5조)
15	(상호) 인증 기술 결정	본 규정에는 전자 인증과 같은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증진이 포함된다. (예 : 뉴질랜드 - 대만, 중국 PoC ECA 제9.2 (c) (ii))
16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을 위한 회의 표준	호주-일본 EPC 제13.6조
17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 서명의 상호 인식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제10장 제5조
18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증서의 상호운용성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제10장 제5조
19	무역 관련 전자 데이터 교환	본 규정은 국제무역데이터의 정부 간 교환 (예: 도미니카-중앙아메리카 FTA 제5.3조), 전자데

		이더 교환을 위한 ICT의 설립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한다. (예: 한- 베트남 FTA 제4.3.3조(c)항)
20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의 전자적 교환	본 규정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의 전자 우편을 통한 직접 통신을 포함한다. (예: 일본 - 태국 EPC 제2장에서 언급 된 운영 절차 (상품 무역) 및 제3장 (원산지 규칙 11). 또한 COO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다. (예: 중국-칠레 FTA 부속서 6)
21	SPS 관련 정보의 전자 교환	본 규정은 위생 및 검역 (SPS) 관련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전자통신, 전화 · 화상 회의 등의 의사 소통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다. (예: 아이슬란드 - 중국 FTA 제19 조)
22	TBT 관련 정보의 전자 교환	본 규정은 기술무역장벽(TBT) 관련 정보를 논의 하기 위한 전자우편, 전화 · 화상회의의 사용을 포함한다. (예: 호주-한국 FTA 제 5.10 조)
23	금융 정보의 전자 전송	본 규정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당사자 금융 기관 간에 교환되는 신용장, 보험 증명 등이 포함된다. (예: 캐나다-한국 FTA, 부속서 10-B C)
24	서류없는 무역을 위한 국제 표준의 사용	위에서 언급 한 규정 중 하나를 구현하고자 할 때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해석 저자 재작성

조항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국경 간 무역거래 시 복잡한 서류작업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역수속 간소화 관련 조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부분은 7.전자원산지증명서시스템 (E-system of COO), 10.전자자동화통관시스템(E-customs system, customs automation), 11.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20.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적 교환 (exchange of COO related information)이다. 우선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는 약어로 e-C/O라 일컫는다. e-C/O 시스템이란 웹을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 및 인증으로 수출업체는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며 승인 당국은 온라인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인정한다. 또한,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세관, 은행 및 해외바이어 같은 수령인에게 즉시 전송되는 기술 플랫폼이다. 현재 국가별로 e-C/O 도입 현황에 기술적 편차는 있지만 주로 발급주체는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민간기관이다.

<그림 2>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개요



자료: 국제원산지세미나(2017),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e-C/O)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또한, 국가별로 <표 1>의 11번에 해당하는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국가적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 NSW)가 출현하였다. 단일창구의 구현은 무역 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무역과 관련된 제반서류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가별 단일창구로 e-C/O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확장된 범위의 지역(regional) 단일창구 통합으로 e-C/O 뿐만이 아닌 다른 전자적 무역서류도 함께 교환할 수 있다.

지역단위로 통합된 단일창구를 통해 전자적 무역서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인정(호환)이 가능한 통일된 형식을 따라야한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원산지자료 교환을 위해 지역단위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자료 통일(data 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통관 시스템 국제표준으로는 대표적으로 WCO Data Model (DM), UN/TDED, UN/EDIFACT, UN/CEFACT이 있다. 이 중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WCO DM MODEL)은 국가별 단일창구가 국경 간 정부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하여 세관의 법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여러 규제기관의 요구사항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상호 교환 절차를 포함한 국제 표준 모델이다. WCO DM은 최적화된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 간 통관 데이터 요구사항에 부합한 글로벌 표준³⁾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한국은 FTA 협정상대국과의 e-C/O 교환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FTA를 체결한 14개의 협정 가운데 한-중 FTA에 최초로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 (EODES)를 도입하여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인 「CO-PASS⁴⁾」를 '16년 말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관세당국과 APTA⁵⁾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의 시범운영 이후 2017년 5월부터 정식으로 시행중에 있다.⁶⁾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더 이상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APTA의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의 경우에 국가별 단일창구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에 출시된 버전 3.4는 아세안의 상품 무역협정 ATIGA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4)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특혜신청 시 C/O 제출 면제 및 신속한 원산지 심사를 제공하고 있다.

5)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과 맺은 특혜 관세협정이다. 그러나 이중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논의 중에 있다.

6) APTA회원국 간이 아닌 한-중 양국 간 교환중이다.

해당 시스템의 이점으로는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 도착하는 전자 자료로만 수입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교환하여 수입국 FTA 특혜를 신청 할 시에 C/O 제출면제와 신속한 FTA 심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한-중FTA e-C/O 교환 절차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은 중국이외의 다른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e-C/O 도입 및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현시점까지의 추진현황으로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우선적으로 e-C/O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한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확대를 목표로 시작한 기초 조사이다. 국가별 e-C/O 관리 현황, 한-중 e-C/O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에 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발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의 「역내 서류 없는 무역 실현」 등의 목표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통관 자료 교환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개발도상국 우대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무역 원활화」와 「국제 무역 거래비용의 감소」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남아 있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¹⁾의 아시아 「국경 간 서류 없는 무역」 추진 협정의 이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한국 또한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FTA활용 제고 그리고 관세혜택 및 통관자료 교환 간소화를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교환 확대 ·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C/O와 e-C/O 절차 비교

절차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방문 및 발행 추가서류를 위한 재방문 및 발행 응용프로그램의 수동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제 어디서나 가능 추가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가능 자료 검증의 자동화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 양식의 C/O 직접 혹은 우편으로 수령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C/O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으로 e-C/O 발행 온라인 수령 및 당사자 직접 인쇄 e-C/O 정보가 세관으로 발송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와 수입신고서 복잡한 통관절차 C/O의 위조, 손실, 발행 지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 당국 간 e-C/O 정보 교환 간단한 통관절차 문서의 신뢰성 보장 참고비용 절감

자료: 저자 작성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표 2>와 같이 종이형식 원산지증명서(C/O)와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신청 → 발급 → 국가 간 교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비교해보면,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들에게는 FTA 이행환경 개선으로 인해 FTA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고 통관 시 검증을 담당하는 세관 당국에게는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중 FTA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에 따라 C/O의 형식적 오류 심사 간소화의 노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과 FTA 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통관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FTA협정에서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既체결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 절차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FTA 무역데이터의 전달 및 처리와 관련한 국내외 전자 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의 무역원활화 현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하다. 국가별 전자적 원산지자료 교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원산지자료 교환 시스템 확대를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

- ① FTA 既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
- ② 국가별 C/O 발급기관 및 C/O 조회사이트 정리
- ③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 및 전자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단계 정리
- ④ 국가 간 / 지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교환현황 파악
- ⑤ e-C/O 교환 중인 국가 (양자간/다자간) e-C/O 교환형식 및 근거법령 파악
- 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1. 주요 연구내용

제 2장에서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핵심 주제인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국가의 선정에 있어서 한국과 e-C/O 교환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표 3>과 같이 협정의 규정과 e-C/O 교환의 적합도, C/O 관련 통관애로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C/O 관련으로 통관 지체 등의 통관 애로가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는 아세안, 인도,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최종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을 e-C/O교환의 적합도가 ‘적합 (1순위)’, ‘적합 (2순위)인 국가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EU²⁾(인증수출자)를 선정하여 총 26개국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FTA 既체결국·협상진행국·여건조성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활용 실태파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별 C/O 발급 주체와 C/O 조회 사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2) EU의 경우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조회 시스템 여부 조사를 하였다.

<표 3> 既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협정	C/O 발급방식	통관애로 발생빈도	e-C/O교환 적합도
칠레	자율	소수	적합(2순위)
EFTA	자율	없음	부적합
ASEAN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인도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중국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EU, 터키	자율	없음	부적합
페루	자율	소수	적합(2순위)
콜롬비아	자율	소수	적합(2순위)
베트남	기관	소수	적합(1순위)
미국	자율	없음	부적합
호주	자율, 기관병행	없음	부적합
캐나다	자율	없음	부적합
뉴질랜드	자율	없음	부적합
중미6개국 (발효예정)	자율	소수 (예상)	적합(2순위)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 지역 단위(subregional)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여부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이 가능한 한국의 u-Trade Hub와 같은 통합된 전자무역 단일창구인 국가적 통관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 NSW)가 국가별로 구축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국가적 단일창구는 지역 단위의 통관 단일 창구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스템이다. 추가적으로 국가별로 국제관세기구가 제공하는 국가 간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모델을 도입하였는지 혹은 도입 모델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자간 · 지역단위로 e-C/O 교환 중에 있는 국가들의 e-C/O 교환형식 및 근거 법령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3장에서는 국가별 ① e-C/O 운용 현황, ② e-C/O 시스템 교환 현황, ③ 국가단일창구 ④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e-C/O 현황 및 향후 e-C/O 도입 시 기대효과를 예측해보았다. 또한

앞으로의 한국의 e-C/O 교환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보고서는 '17년 3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계획」의 연장선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한-중 FTA EODES 시스템의 확대방안과 한국형 전자원산지 증명 모델 개발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 체결 증가와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자적자료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무역 관련 연구기관에서 국가별 전자원산지증명서 관리 현황 및 교환 여부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 분석과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의 국가간 무역 자료 교환 시스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보고서로는 국제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서 발간한 무역원활화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국가 별 e-C/O 현황 자료 수집은 각 국가별 e-C/O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후,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위해 현지 국가에 주재하는 관련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밟았다.

제2장 각국의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관리 및 교환현황

1. 국가별 현황

(1) 중국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각 당사국별로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며 각 기관이 공식적으로 위임한 기관들은 각 지역 출입경검험검역국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다. 해당 위임기관들은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웹사이트를 통해 C/O 신청이 가능하다.

(i)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하 AQSIQ)은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과 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원 직속 기구이다.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지역에 설립된 하위기관인 출입경검험검역국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에서 발급업무를 처리한다³⁾. 그리고 중국 지역 해관에서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 적정성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 AQSIQ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중국검험검역전자업무망사이트 (www.eciq.cn) 에서 기업으로 등록해야한다. 제품 및 회사정보를 등록하고 영업 허가, 조직코드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전문적으로 발급해주는 시스템

3)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비우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방법>

(소프트웨어)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한다.

-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Ninetowns (九成전자신청시스템) 및 iTowNet (信城通네트)가 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시스템은인 iTowNet (信城通네트)은 북경 信城通数码科技有限公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상품을 수출입 하는데 사용하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림 4> 중국 iTowNet (信城通네트) 홈페이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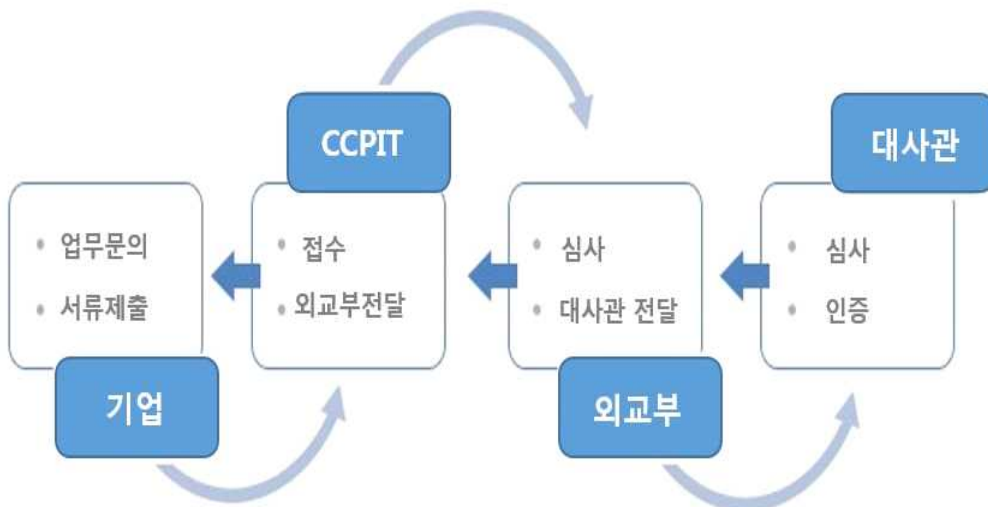


자료: <http://www.itownet.cn/>

(ii)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하 CCPIT)는 1952년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그리고 외국과의 경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회장 및 부회장은 국무원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중국 전역 300여개 지역 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관이 추가 되어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다. (2017년 현재)
-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중국 무역촉진위원회 인터넷 상업 인증 센터(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网上商务认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다.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제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그리고 제출 정보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된다.

<그림 5> CCPIT 원산지증명서 인증절차



자료: http://oldwww.co.ccpit.org/Consulate/Consulate_Flow.html 바탕 저자 재작성

㉔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중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AQSIQ와 CCPIT로 각 기관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조회(확인)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하단의 조회 사이트 접속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상업송장 번호 등을 기입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및 선적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⁴⁾.

<그림 6> AQSIQ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GOVERNMENT
PLATFORM
FOR THE ORIGIN OF
CHINA'S EXPORTS

Verification For Authorized Verification For Public

Certificate No.

Invoice No.

Code

Search

Copy rights by Inspection and Quarantine
Hotline: 010-63018880 63018883 63018886

자료: <http://www.chinaorigin.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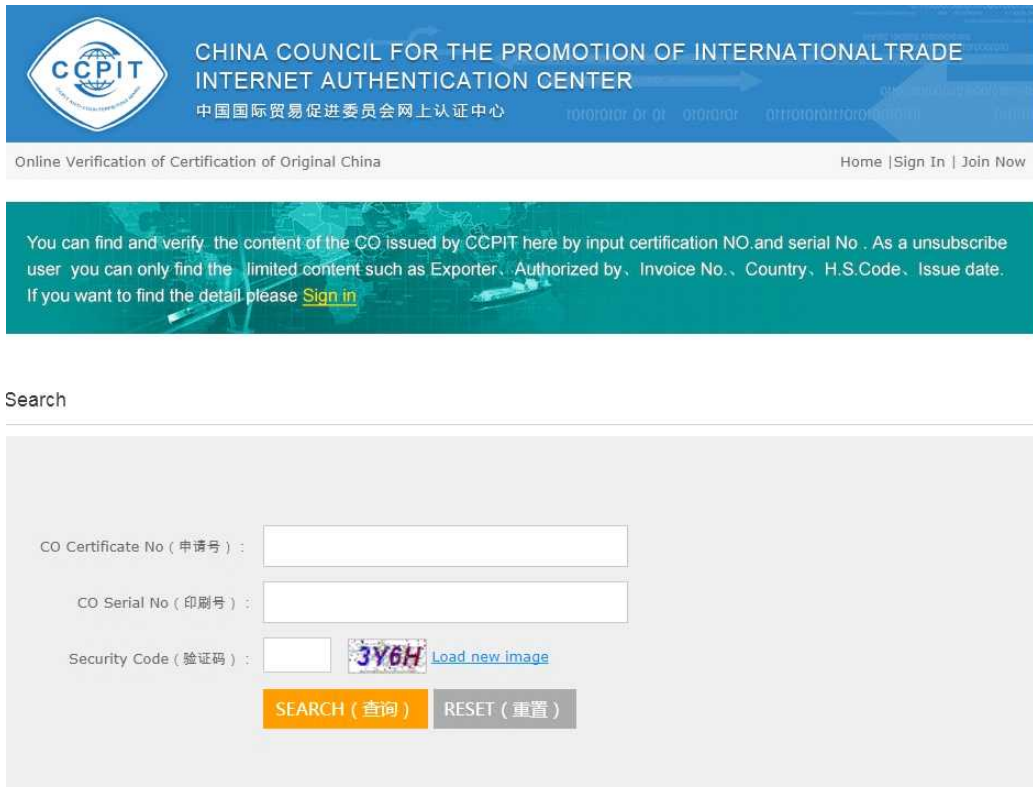
- CCPIT는 2000년부터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 사업을 시작했으며, 기업 들은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CCPIT는 2013년에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원산지 인증 체인에

4) AQSIQ 발급 C/O의 경우 www.chinaorigin.gov.cn에 접속 하여 Verification For Public을 선택 하고 C/O 및 인보이스 번호 입력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한 후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마크와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새로이 추가하여,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를 구축하였다.

- CCPIT 인터넷 상업 인증 센터는 2017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신청 시스템(admin.co-ccpit.org)을 폐지하고, 당분간 网원산지증명서온라인신청 시스템 (<http://www.zoomcommerce.net/index.htm>)과 CCPIT의 원산지증명서 시스템(<http://qiye.ccpitico.net/UserLogin/>)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림 7> CCPIT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co-ccpit.org/>

-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의 원산지증명서와의 서식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하기에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② 교환현황

- 2013년 6월 1일부터 CCPIT는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나라들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방법을 참고하여 e-CO 프로젝트를 정식 시작하였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즉시신청·심사·인쇄 기능을 구현하였다.
- 2015년 11월 26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업무서비스 발전으로 해외무역 추진전략’을 실행해왔으며, 2016년 1분기부터는 정식으로 중국-동유럽 원산지증명서(FORM E), 중국-칠레 원산지증명서(FORM F), 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③ 향후 발전계획

① 중국-칠레 e-C/O 시스템 구축 논의중

-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⁵⁾. 해당 시스템 구축 계획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위조·사기를 방지하며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 교환 호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② 중국-파키스탄 e-C/O 시스템 구축 논의중

-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파키스탄의 Federal Board of Revenue (FBR)은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5) <http://hkmb.hktdc.com/en/1X0A7PAN/hktdc-research/Chile-and-Mainland-China-Working-to-Implement-Electronic-Origin-Certification>

으로 다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높다.

4] 무역원활화 현황

- 상하이 자유무역지역(Shanghai Free Trade Zone)에서 소개된 상하이 국제 무역 단일창구(Shanghai International Trade Single Window) 시스템 테스트는 2013년 10월에 시작되어 공식적으로 2015년 6월 1.0버전으로 출시되었다. 해당 시스템에 비즈니스를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특정 모듈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단일창구 시스템은 ①수출입신고 ②거래비용정산 ③사업자자격확인 ④무역통제 ⑤정보제공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 검사 및 검역, 해상보안, 국경보안, 상업, 세무, 외환, FDA 및 입업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 단일창구 시스템은 규제기관들의 무역관련 정보들을 한 번의 제출을 통해 한곳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무역 관련 기관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통관 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 상하이 이외에 텐진(天津)과 Ningbo(寧波)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단일 창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단일 창구의 표준 시스템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차원에서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표 4> 중국 지역별 단일창구

지역	URL 주소
Shanghai	http://www.singlewindow.sh.cn/winxportal/
Tianjin	http://www.singlewindow.tj.cn/
Xiamen	http://www.china-xmftz.gov.cn/
Fujian province	http://www.fjdport.gov.cn
Hangzhou	http://www.singlewindow.gov.cn/
Jiangsu province	http://58.213.133.203/Ship/
Ningbo	http://trainer.nbeport.com/
Guangzhou	http://www.singlewindow.gz.cn/
Shenzhen	http://www.dcbeport.com/

자료: http://www.asean-cn.org/

- 최근에는 광둥성의 선전과 주해 두 지역에서 AQSIQ가 만든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중국전자검험검역망」을 통한 검역수속이 가능해졌다.

<그림 8> 중국 중국검험검역전자업무망



자료: http://www.eciq.cn/

(2) 일본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일본은 많은 국가들과의 경제동반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은 EPA에 기초한 원산지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을 증명하며, 상대국 관세에서 EPA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정원산지증명서란 EPA에 기반한 원산지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일본은 「EPA에 기초한 특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경제 산업성 대사가 발급기관으로 지정한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會議所)가 특정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i) 일본 상공회의소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www.jcci.or.jp/>

<그림 9> 일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JCCI). At the top right, there is a red button labeled 'English'. Below the header, a navigation bar contains several menu items: '政策提言活動', '中小企業関連情報', '会員向け事業', '地域振興情報', '調査・研究', '国際関連情報', 'IT関連情報', and '日商について'.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 is a '全国の商工会議所一覧' (List of 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with a list of links, including 'EPA特定原産地証明書発給事業' (EPA Specific Origin Certificate Issuance Project)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central part of the page features a large banner image of several men in suits standing together, with the text 'デフレ脱却と地方創生を目指した政策提言活動を行います' (We will carry out policy proposal activities aimed at deflation relief and local revitalization). Below the banner is a 'ニュースライン' (News Line) section with a sub-section for '日商ニュース' (JCCI News) and an RSS icon. The date '07/18 8月8日' is displayed, along with the headline '経営強化の中核人材を獲る・育てるための戦略セミナーを開催(関東経済産業局)' (Organizing a strategy seminar to acquire and nurture core human resources for business strengthening (Kanto Economic Industry Bureau)).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会頭コメント' (Chairman's Comment) section with a photo of the chairman and the text 'Comments of chairman'.

자료: <http://www.jcci.or.jp/>

- 일본 전 지역의 21개 상공회의소는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특정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신청만 가능하다.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원산지상품 판정의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된 상품의 수출자가 진행한다. (일본-호주 협정은 생산자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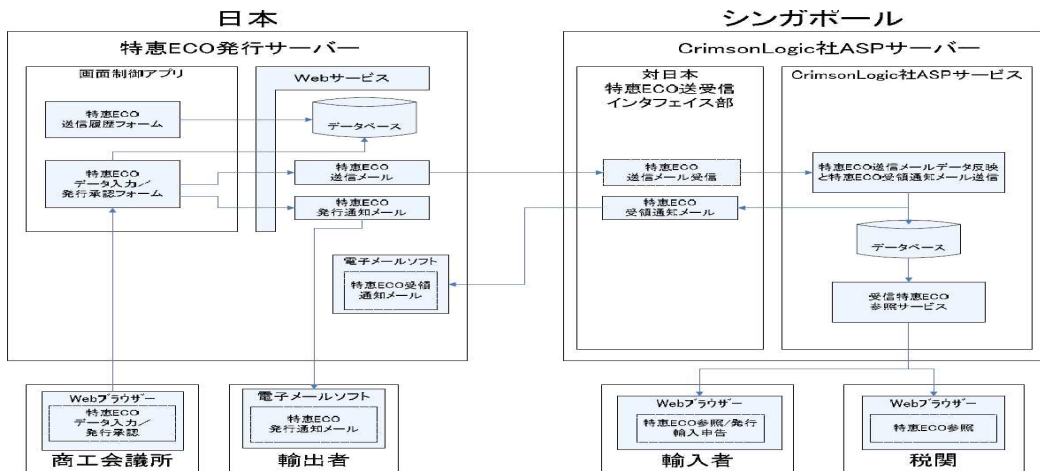
- 일본은 2013년 10월 13일부터 수출입통관에 있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관관련 서류를 PDF등의 전자 기록에 따른 제출이 가능해졌다. 세관에 있어 수출입신고된 내용과 전자 기록에 따라 제출된 통관관련 서류에 심사를 진행하며 서면(종이)에 따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제출된 통관관련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통관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 신고첨부등록업무(이하 MSX)에 따라 제출한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2017년 10월부터는 수입허가 후에 서면 제출은 생략되었다.
- 일본은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은 PDF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한 상태이며 종이형식에서 전자화로의 연결이 매우 느린 상태이다. 2017년 6월 일본 상공회의소는 한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 신청·발급 시스템에 대해 전수받기 위해 서울세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② 교환현황

<일본-싱가포르 FTA e-C/O 교환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일본-싱가포르 FTA 협정 내 제 31조에 (1)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출계약국이 특정한 세관 및 단체에 따라 발행한 것이어야만 한다. (2) 특혜원산지 증명서는 부속서 II B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3)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날짜부터 12개월 간 유효하다. 제 40조부터 43조까지 무역거래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전망을 규정⁶⁾하고 있다.
-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전자적 특혜원산지증명서 교환 파일럿 프로젝트 전자양식은 XML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현재 싱가포르가 이용하고 있는 XML 형식은 원산지증명서에 필요한 정보 이외, 원산지증명서 발행까지의 수속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간의 연결을 자동화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0>일본의 수출 서류 전송시스템 파일럿 실험 환경 구성



자료: JIPEDEC(2008) 特恵原産地証明書の電子化に係るガイドライ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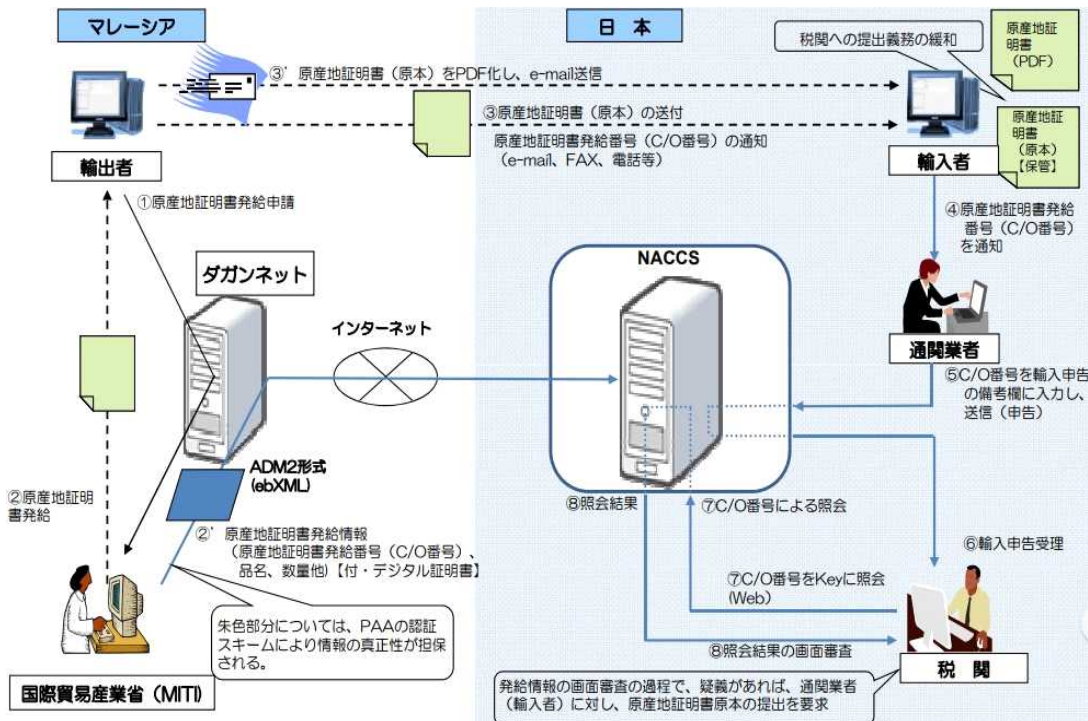
6) 무역거래정보 및 선화증권, 운송장, 신용장, 보험증명서 외에 다른 문서상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입력한 것을 서면이 아닌 전자적으로 보관 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함 이것은 비용 및 시간의 감축을 통하여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인식하여, 양 체결 국간의 무역거래 문서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함

- 본 모델은 전자적 특혜원산지증명서 (e-CO)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1) 상공회의소 → 수출자 (2) 수출자 → 수입자 (3) 수입자→세관에 으로 전송하는 모델이다. 본 모델은 일본과 싱가포르 간의 무역 관련 문서를 전자화 시키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말레이시아 e-C/O 교환 시스템 실증 테스트 시행>

- 일본의 국가 단일창구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NACCS)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의 재무성 관세국과 말레이시아의 국제무역산업성이 맺은 일본-말레이시아 간의 EPA 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전송하는 전자적 원산지증명서정보교환의 실증 테스트를 추진하였다.

<그림 11> 말레이시아 - 일본 eCO 실증 테스트



자료: 原産地証明書の電子化について~証明書番号の連絡による確認スキーム~

③ 향후 발전계획

- 현재로서 일본은 국가 간 e-C/O를 교환할 의향이 없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일본 재무성 관세국·세관은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통관관련서류의 전자화」 및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시키고자 통관관련서류 제출의 생략 및 전자화(PDF 형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통관 단일 창구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NACCS)는 무역에 있어 통관 수속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국제물류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2> 일본 단일창구 NACCS 화면

Japanese English

輸出入・港湾関連情報処理センター株式会社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Inc.

人・物・国をつなぐ 「総合的物流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システム」としてのNACCSを通じて、国際物流の発展に貢献します。

現行(第5次)NACCSに関する情報ページはこちら

NACCS 掲示板
NACCS 掲示板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http://www.naccscenter.com/>

NACCSサポートシステム
<NACCS 利用申込等の電子申請 >
<https://nss.naccs.jp/login/nsscoapp/>

出港前報告制度 掲示板

次期(第6次)NACCS(10月8日更改予定)に関する情報ページはこちら

第6次版 NACCS 掲示板
<https://bbs.naccscenter.com/>

第6次版 NACCS サポートシステム
<https://nss.nac6.naccs.jp/login/nsscoapp/>

第6次版 出港前報告制度 掲示板

NACCS紹介動画

NACCSのご紹介
貨物の早期引取りやペーパーレス化を実現

YouTube 別画面で表示

NACCSについて

자료: www.naccs.jp

[3] 인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도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⁷⁾은 다음과 같다.

(i)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

- EIC는 중앙정부의 자문기관으로 법에 따라 수출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검사를 수행하며 품질 표준을 수립한다. 5곳의 수출검사기관⁸⁾ (EIAs: Export Inspection Agencies)에 대한 기술 및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며 수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특혜관세제도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림 13> 인도 EIC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www.eicindia.gov.in/Services/Compliance/compliance.aspx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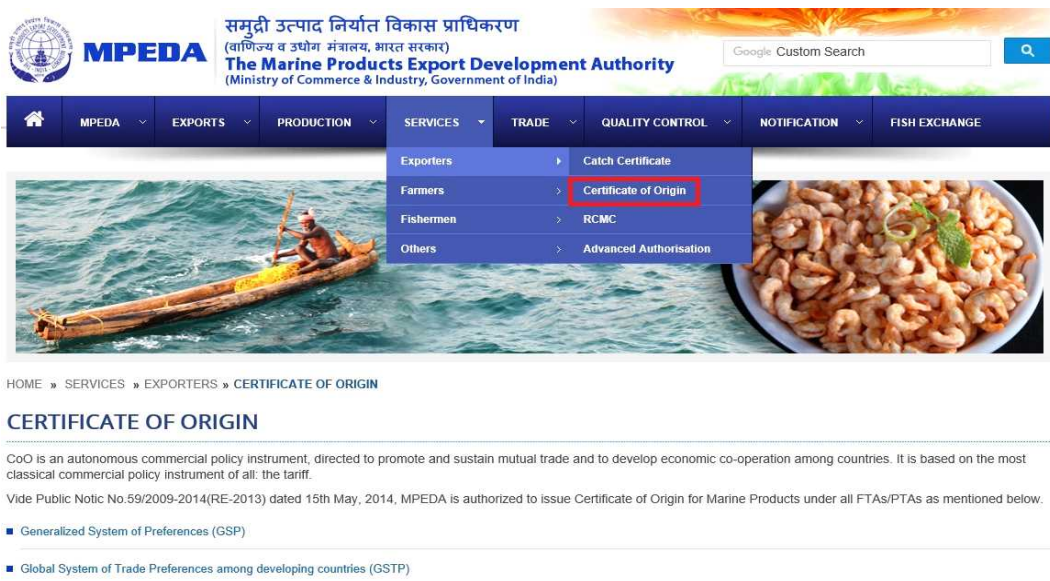
7) 시행규칙 제3장제8조제4항(개정 2016.12.26.)

8) Chennai, Delhi, Kochi, Kolkata 및 Mumbai

(ii) 인도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MPEDA⁹⁾는 수산물 관련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해당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수령 절차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인도 MPEDA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mpeda.gov.in/MPEDA/certificate_origin.php#

(iii) 인도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는 섬유품목에 대한 HS분류, 관련 공장의 등급부여, 제품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회의 EP & QA 부서는 인도 최초의 ISO17020 인증 제3자 검사기관이다. 또한 R&D 활동, 시험방법 개발, 시험포준 수립 외에도 9곳의 생태 실험실을 포함한 17개 연구소를 통해 각종 규제 및 비 규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섬유 관련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9) 고시 No.59/2009-2014(RE-2013)에 따라 2014년 5월 15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을 획득함

<그림 15> 인도섬유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Textiles Committee, Ministry of Textiles, Government of India.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HOME, ABOUT US, SERVICES, SAMPLE STATUS, ISDS, MARKET INTELLIGENCE, FAQ, CONTACT US. The 'SERVICES' section is expanded, showing categories like 'Export Promotion & Quality Assurance', 'Classification of Textiles', 'Training', 'Laboratory', 'Market Research', and 'Total Quality Management'. The 'Certification' page is selected, displaying information about 'Handloom Origin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Origin under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The page content includes a breadcrumb trail: Home > Services > Export Promotion & QA > Certification. The 'Certification' section states: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with developed countries/block like USA, European union, Switzerland; Industrial craft Certificates after conducting limited inspection for ensuring handloom origin for eligible exporters. Exporters desirous of the availing the above certificate may submit the application (Combination committee with the requisite application charges at least a day before the date of inspection). Note: It is mandatory to register with Textiles Committee for availing the above service. Charges: - ① Rs. 350/- per certificate for Endorsement + applicable taxes ② Rs.30/- per set of blank certificates. Download: Combination Form 17.87 KB Certificate of Origin under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Under the schema of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the Developed countries grant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textile product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ommittee has been authorized to issue GSP Certificate in Form-A for...

자료: <http://textilescommittee.nic.in/services/certificate-origin>

(IV) 인도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인도수출입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담당자 명 : Mr. Vivek Bidwai (Deputy Director (Tech))

전화 : +91-11-23748189

이메일 : tech2@eicindia.gov.in

- 인도 면사위원회(Textile Committee of Ministry of textile)

담당자 명 : Mr. K B Rao (Joint Director)

전화 : +91-22-66527507

이메일 : secy.tc@nic.in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거래 ID와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단, 원산지증명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발행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16> 인도 EIC의 PCO 조회 사이트 화면

भारतीय निर्यात निरीक्षण परिषद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वाणिज्य एवं उद्योग मंत्रालय, भारत सरकार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Post Verification System
Certificate of Origin (CoO)

Please enter any one of the below asked information to know the status of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from Export Inspection Agencies and its Sub Offices

Transaction ID: OR CoO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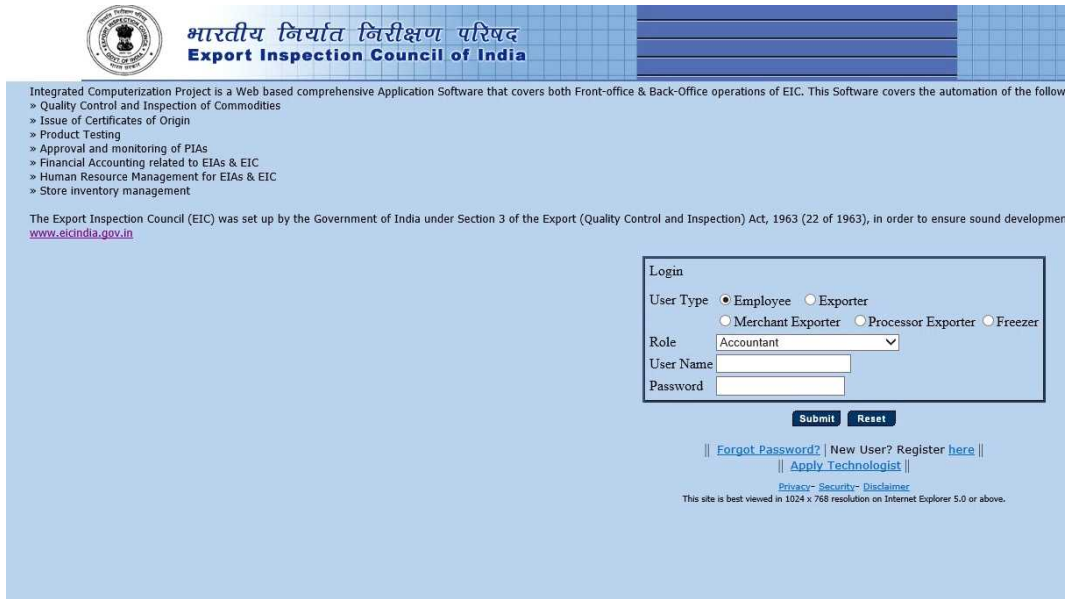
Transaction Id: Unique number written in pencil / pen in the white margin of the certificate
CoO Number: Reference number printed in the right hand corner column of the certificate
For example: Reference number - EI12345.....

* Please note that the system displays the data of a certificate issued during last 3 years

자료: <http://115.112.238.86/public/coostatus.aspx>

- 또한 EIC를 통한 PCO 발행은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는 Integrated Computerization Project 하에서 EIC의 프론트 오피스 및 백 오피스 작업을 모두 포괄하는 웹 기반 종합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그림 17> 인도 EIC의 PCO 발행 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eicindia.net/public/login.aspx>

- 이 소프트웨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 상품의 품질 관리 및 검사
- » 제품 테스트
- » PIA의 승인 및 모니터링
- » EIA 및 EIC 관련 재무 회계
- » EIA 및 EIC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 » 매장 재고 관리

- 그러나 인도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및 인도섬유위원회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현재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발행 및 확인만이 가능하다. 즉, 온라인 통합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② 교환현황

- 인도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PCO 전자 교환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현재 인도 정부는 PCO 전자 교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인도 상공부는(Ministry of Commerce) 전자 우편을 통한 PCO 송부를 금지하고 있다.

③ 향후 발전계획

- PCO 전자 교환의 경우 인도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¹⁰⁾ 산하 양자 및 다자간 무역 관계과(RMTR: Regional & Multilateral Trade Relations)¹¹⁾에 의해 주관되는 정책 차원의 문제로, 향후 PCO 전자 교환을 허용하는 정책 수립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Export Inspection Council)는 지난 2016년, 이메일 송부를 통한 PCO 전자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인도정부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인도세관 단일창구(India Customs Single Window)’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단일창 인터페이스(SWIFT: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로 인도 정부의 중앙 국세청 (CBEC: the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은 인도에서의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Single Window Project의 이행을 채택하였다.

10) <http://commerce.gov.in/>

11) http://commerce.gov.in/writereaddata/UploadedFile/NTESCL_635847671152325617_Officers_RMTR_Work_Allocation.pdf

-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통관서류와 NOC (No Objection Clearance)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함으로써 수입 및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18> 인도 단일창구 SWIFT



자료 : <https://www.icegate.gov.in/SWIFT>

-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인도 식품안전기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인도의약품규제 기관(DCG, 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인도식물검역소(Plant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인도동물검역소(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인도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of ministry of textile), 불법 야생동물거래통제국(Wild Life Crime Control Bureau) 등의 6개 인도 주요 통제 기관으로부터의 NCO 관련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Single Window는 통합 신고(Integrated Declaration)¹²⁾, 자동 라우팅(Automated routing)¹³⁾, 통합 위험 평가(Integrated Risk Assessment)¹⁴⁾, 온라인 통관의 연결성(Connectivity for Online clearance), 종이 없는 프로세스(Paperless Processes), e-수수료 및 수수료 지불(e-Payment of fees & charges), 자동 라이선스 확인¹⁵⁾(Automatic

12) 예) the Customs Gateway (ICEGATE)

13) 통관을 요구하는 수출입품의 자동식별

14) 기존의 세관 위험 관리 시스템 (RMS) 소프트웨어 에 추가 기능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15) 문서 발급자가 해당 전자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무역업자가 제시

License Verification), 단일 웹기반 정보(Compliance Information Portal)¹⁶⁾, 진행 사항 알림서비스(Event Notification Service)¹⁷⁾,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 인도 단일창구 SWIFT



자료 : <https://www.icegate.gov.in/SWIFT/>

-
- 한 라이선스, 허가, 인증서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 16) 모든 통관 관련 절차단계, 관세, 수수료 및 모든 상품의 수출입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단일 웹 기반 소스를 통해 제공
- 17) 무역업자와 운송업자가 세관, PGA 및 물류 제공 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가져온 진행사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4] 아세안_인도네시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인도네시아 무역부 (MOT, Ministry of Trade)

: <http://www.kemendag.go.id/>

-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의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아래 Directorate of Export and Import Facilitation가 있으며 그 내에 Deputy Director for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관련한 부서가 소속해 있다. 해당 부서가 실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실제 원산지증명서는 Section Head for Rules of Origin, Section Head Certificate of Origin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IPSKA (Instansi Penerbit Surat Keterangan Asal)」는 인도네시아 전국에 85개 지점이 있으며 그 중 28개의 IPSKA는 온라인으로 CO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57개의 IPSKA는 (準)온라인베이스¹⁸⁾로 발급한다.

(ii) 인도네시아 수산검역청 (Badan Karantina Ikan, Pengendalian Mutu, BKIPM : Fish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http://www.bkipm.kkp.go.id/>

18) (準)온라인베이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57개의 IPSKA 기관의 경우, 제조업자가 소재한 지역의 IPSKA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

- 무역부 관할 외의 원산지 발급기관도 있다. 2013년 4월 3일 해양수산물관련규칙 제7조 (No.7/PERMEN-KP/2013)에 따르면, 해초의 수출에 수산물 품질 · 안전 유지 · 수산검역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할 의무를 발표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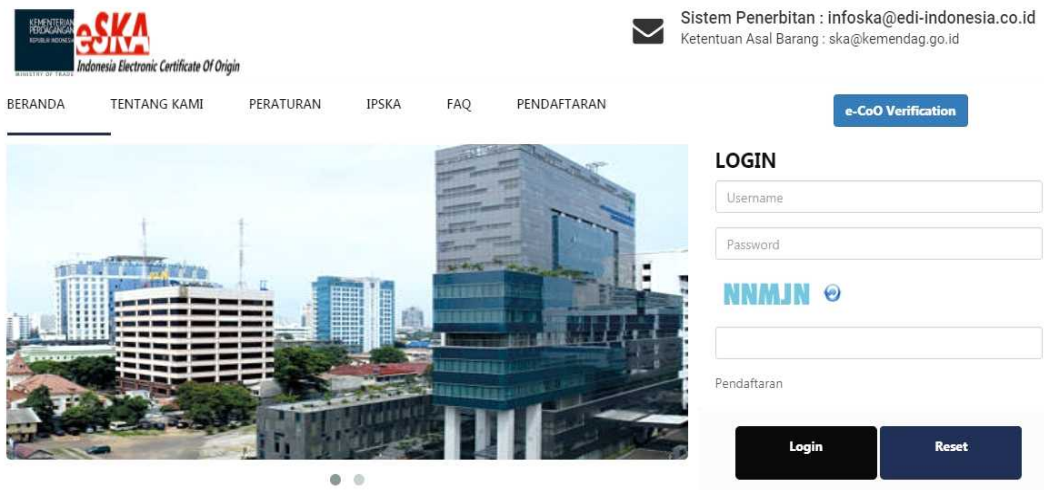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i) 인도네시아 전자원산지증명서 eSKA (Indonesia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http://e-ska.kemendag.go.id/cms.php>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운영하는 「eSKA Indonesia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 ·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28곳의 IPSKA의 경우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에 관한 최신 동향이 업데이트 되며, 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 규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0> 인도네시아 eSKA 홈페이지 화면



자료: <http://e-ska.kemendag.go.id/home.php>

19) <https://www.jetro.go.jp/world/qa/04A-051006.html>

<그림 21> 인도네시아 eSKA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e-ska.kemendag.go.id/home.php/custom>

- 해당사이트의 ‘E-verification Service’ 에서 원산지증명서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선택 후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FORM AK)

<그림 22> 인도네시아 e-SKA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s://e-ska.kemendag.go.id/cms.php/form>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을 위한 시스템 e-SKA에는 특혜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게재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순서는, 해당사이트 (e-SKA)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출업자는

e-SKA에 등록하고, 이용자 ID를 발급받는다. 또한, e-SKA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수출신고서 (PEB), B/L (Bill of Lading) 또는 AWB (Airway Bill), 납세자번호 (NPWP), 인보이스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업로드 한다.

- 수입원재료를 포함한 수출품의 경우는 가격 구성의 계산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붙임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명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 수출업자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원본을 인쇄한 후, 그것을 재차 발급기관에 가져가서 서명관의 서명을 받는다. 원산지증명서 조회를 통해서 제출된 종이형식으로 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교환현황

- 아세안국가들 간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아세안단일창구 (ASW)의 초기 단계에서는 ASEAN회원국들 사이에 원산지증명서 (Form of Draft of Origin)의 전자 문서로 교환 가능하다.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통관이 종종 지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ASW를 통해 「SKA Form D」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특혜 적용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 ASW²⁰)를 통해서 아세안 역내 원산지증명서 (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 ATIGA²¹ Form D)를

20) ASW (ASEAN Single Window)는 ASEAN 회원국의 NSW (National Single Windows)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지역적 단일창구이다. ASW는 거래, 운송 및 상업 데이터를 정부 기관 또는 거래 커뮤니티간에 전자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안전한 IT 환경 및 법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21) 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은 1994년 1월 발효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역내관세 철폐 스케줄을 계승하고 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조치, 원산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2010년 5월 발효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발표) ASEAN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 형식(hard copy)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 ASW의 구현은 아세안 회원국들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같이 NSW (National Single Window)를 보유한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외 아세안 회원 국가들은 NSW에 대한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ASW구현이 연기되었다.

③ 향후 발전계획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Ministry of Trade)가 아세안 지역 간의 전자정보 교환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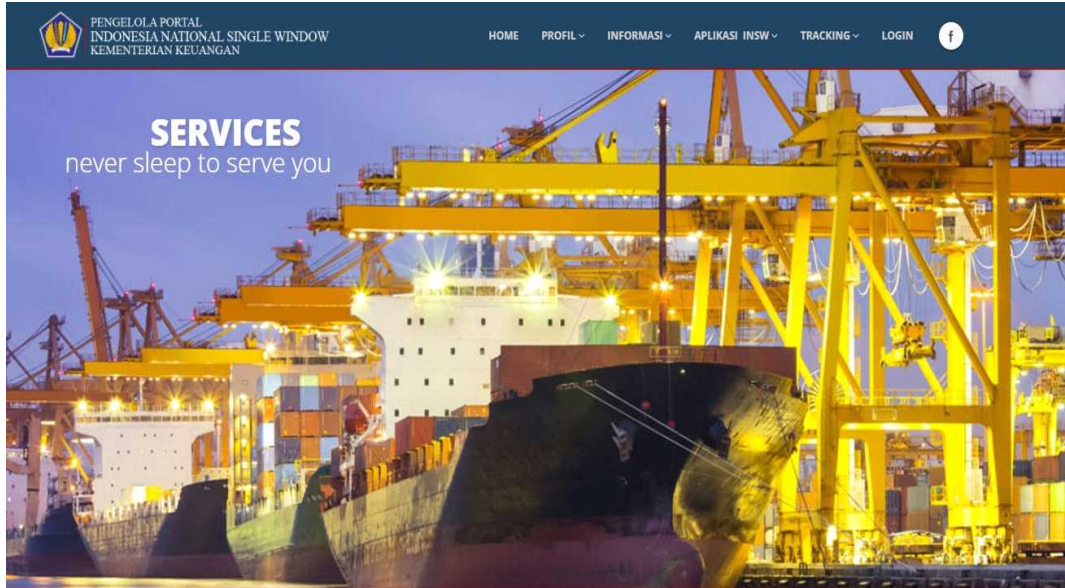
④ 무역원활화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07년 단일창구시스템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 INSW) 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구축 당시에 열악한 IT 환경, 부족한 인프라 지원, 소규모 항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 등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현지 세관과 무역부가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시점에서는 INSW를 구축 완료한 상태되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의 INSW 시스템은 수입 및 수출 허가, 무역원활화 및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가 중심이 되어 21개 항구 및 공항에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업무의 92%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²²⁾. 타 아세안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이다.

22) <http://www.antaraneews.com/berita/569483/pelaksanaan-asean-single-window-dinilai-masih-sulit-terwujud>

INSW의 최종목표는 통관 절차 및 국가 물류 촉진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국가적 물류 통합과 무역 원활화 시스템이다.

<그림 23> 인도네시아 단일창구 화면



Info Terkini

자료: <http://www.insw.go.id/>

[5] 아세안_말레이시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²³⁾으로 말레이시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이하 PCO)를 발급하는 기관²⁴⁾은 다음과 같다.

(i)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http://www.miti.gov.my/>

- 2013년에 MITI는 E-PCO(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생산자와 수출자들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도모하고 있다. 모든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인 DagangNet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한 원산지증명서 조회가 가능하다.

(ii) 말레이시아 국제상공회의소 (MICCI: Malaysia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http://www.micci.com/>

- 말레이시아의 국제 상공회의소는 MITI로부터 세계 모든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 받았다. 단, MICCI는 비특혜원산지명서만을 발행한다. 말레이시아의 MICCI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3) 시행규칙 제7조제1항

24) 시행규칙 제8조제3항

(iii)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 (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 FMM)
: <http://www.fmm.org.my>

-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은 MITI로부터 특혜원산지증명서 (PCO)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았다. 전자 원산지 증명서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시스템을 통해 원가분석(Cost Analysis),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제출하여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다. e-PCO의 기능은 MITI의 온라인 승인과 원산지 증명서 신청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IV) 말레이시아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담당자명 :Mr. Mohd Faizol Isma Amzan
부서 및 직위: Senior Assistant Director, ASEAN Economic Integration Division
전화: Tel: +603-6200 0390
이메일 : faizolisma@miti.gov.my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부서: Trade Cooperation and Industry Coordination Section
전화: 03-80008000 Fax: 03-62012337
이메일: webmiti@miti.gov.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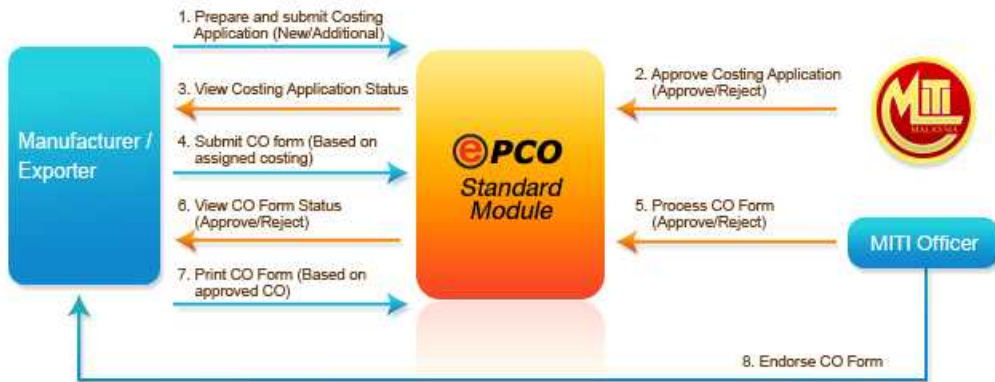
2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 온라인 조회여부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를 통해 발급되는 PCO의 경우 DagangNet이 운영하는 www.newepco.dagangnet.com에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하단의 그림은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절차를 보여준다.

- 수출업자는 우선 회사를 등록하고 PCO 신청을 하는데, 작성 후 PCO를 인쇄하여 국제통상산업부에 제출해야한다. PCO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들은 MITI attachment section에 필수사항을 기입하고 필수 서류²⁵⁾를 첨부한다. 이 서류들은 온라인 신청 시에만 제출하고, 실제 국제통상산업부에 제출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Reference Number이 발행되고, 그 번호에 따라 추후에 조회가능하다. ePCO의 승인은 영업일로 1일 걸린다.

<그림 24> 말레이시아 ePCO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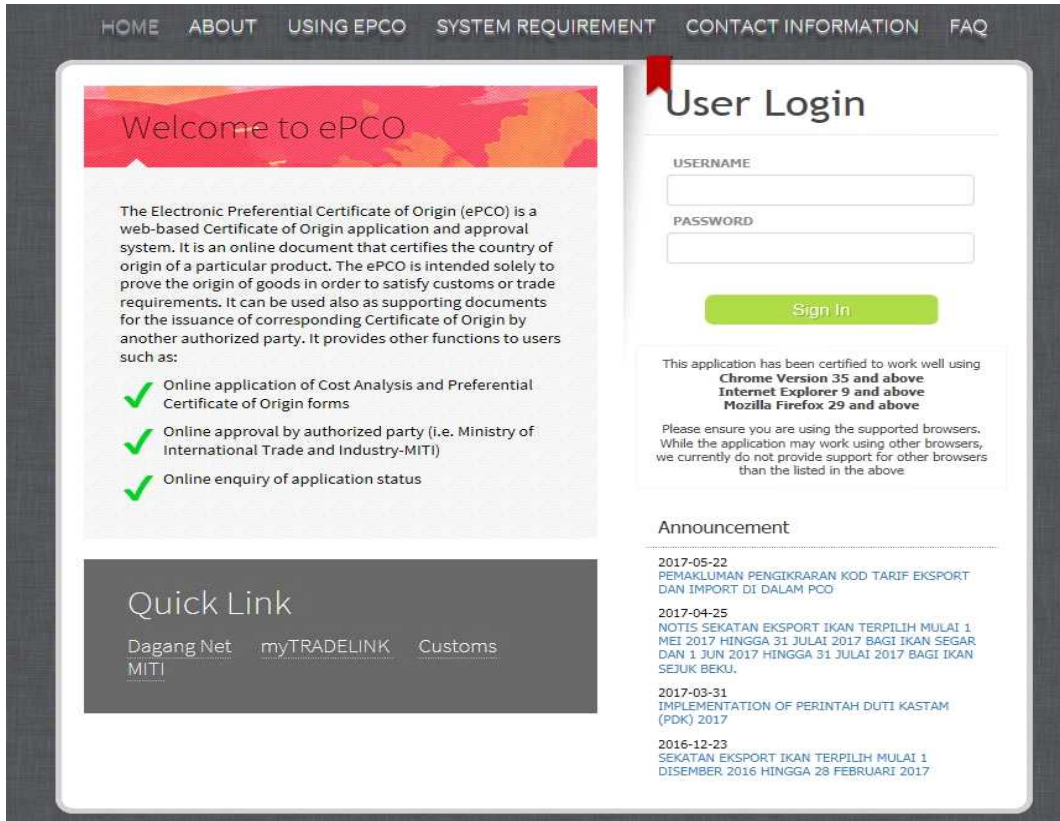
자료: <http://www.asean-cn.org/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54&id=41>

- 또한, 당사자에 한해서만 온라인 조회를 허용하는데 수출자와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관계자만 별도 확인이 가능하다. epcodagangnet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원가분석(Cost Analysis)과 특혜원산지증명서(PCO)의 온라인 신청
- » 온라인을 통한 MITI의 승인처리
- » 원산지증명서 신청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및 확인 가능

25) B/L, 세관신청Form, Invoice, P/L 필요서류가 불충족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그림 25> 말레이시아 ePCO 조회 사이트 화면



자료: <http://newepco.dagangnet.com.my>

② 교환현황

-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 ASW²⁶)를 통해서 아세안 역내 원산지증명서 (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 ATIGA²⁷)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발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에

26) ASW (ASEAN Single Window)는 ASEAN 회원국의 NSW (National Single Windows)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지역적 단일창구이다. ASW는 거래, 운송 및 상업 데이터를 정부 기관 또는 거래 커뮤니티간에 전자적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안전한 IT 환경 및 법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함

27) 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은 1994년 1월 발효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역내관세 철폐 스케줄을 계승하고 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조치, 원산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2010년 5월 발표

따르면 자료 교환만을 시행하는 제한적인 환경에 합의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 현재 ASW는 참여 회원국(Particing Member States : PMS)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간 ASEAN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hard copy)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3] 향후 발전계획

- 차후에 ASEAN 회원국 외 타 국가와의 특혜원산지증명서 입증을 위한 전자적 자료 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기업에 민감한 사업정보, 공급자 · 원료 정보 제공은 제한할 예정이다.

4] 무역원활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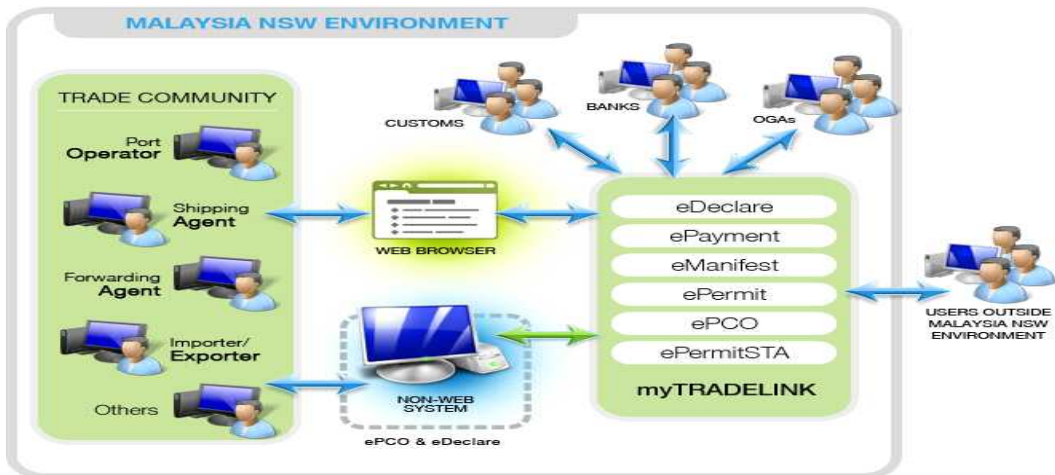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단일창구 (Malaysia National Single Window)인 myTRADELINK를 출범시켰다. myTRADELINK는 Dagang Net Technologies에 의해 운영되며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을 위한 무역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환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다.
- 또한, myTRADELINK는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를 단일 연결을 통한 무역 촉진으로 무역 국가로서의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myTRADELINK를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거래 서류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준비, 제출, 적용 및 승인 할 수 있으므로 수동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무역 거래 촉진 이외에도 myTRADELINK는 무역 정보 허브로서 거래 활동을 간소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26> 말레이시아 단일 창구 myTRADELINK

자료: <http://www.mytradelink.gov.my/>

○ 하단의 그림과 같이 myTRADELINK 6가지의 주요 서비스²⁸⁾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을 통해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무역 문서 교환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단일 연결 액세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림 27> 말레이시아 단일창구 기능



자료: <http://www.mytradelink.gov.my/>

28) 전자세관신고서 (eDeclare), 전자관세지불시스템 (ePayment), 전자적적하목록(eManifest), 전자적허가 (ePermit), 전자직원산지증명서 (ePCO), 전자적허가전략교역법(ePermitSTA)

- 운송 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운송 대리점, 창고 및 창고 운영자, 운송 및 물류 커뮤니티, 은행 및 보험 대리점은 물론 아세안 및 국제선을 통해 myTRADELINK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는 수동 서류 작업 및 물리적 프로세스의 상당한 감소가 있다. 동일한 데이터 또는 정보의 불필요한 방출을 억제시켜 준다.

[6] 아세안_필리핀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²⁹⁾으로 필리핀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³⁰⁾은 다음과 같다.

(i) 필리핀 관세국 수출조정부 (Philippine Bureau of Customs,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 <http://customs.gov.ph/>

- 필리핀 관세청은 특혜원산지증명서 (PCO)를 발행하는데, 발급기관은 마닐라의 관세국 수출조정부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Bureau of Customs) 또는 각 항구의 재무성 산하의 관세수출부 (Export Division in district ports Bureau of Customs, Department of Finance)이다.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필리핀 관세국 (BOC)은 부가가치서비스 (Value - Added Service Provider : Vasp) 제공업체인 Inter Commerce Network Services, Inc (INS)를 통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CO) 작성을 자동화하여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³¹⁾. 일반원산지증명서와 Form D를 다루는데, Form D는 아세안 상품 협상 (ATIGA)하에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아세안 역내 교환 원산지증명서이다. 그리하여 필리핀 관세국 (BOC)은 2016년 아세안 회원 국가들로부터 무역 특혜를 받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29)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0) 시행규칙 제8조제3항

31) INS의 e-CO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VASP 그룹으로 결성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합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 PAA)에 의해 만들어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디지털화하는 전자적원산지증명서시스템(e-COS) 시행을 시작하였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만 가능한 상태이다. 최종적으로 「CO 제출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²⁾.

- 2016년 6월 발표된 CMO(Customs Memorandum Order) No. 17-2016은 6월 27일 발효되었으며,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발급 촉진」과 「아세안상품무역 협정(ATIGA)에 따른 특혜 조치」를 다루고 있다. 또한 「원산지판정요청서 (Requests for Origin Ruling : RFOR)와 전자적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제출에 대한 운영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먼저 수출업자는 공인된 VASP의 e-COS를 사용하여 RFOR 양식에 맞춰 제출한다. 전자요청 사본을 인쇄하여 수출조정부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 ECD) 또는 항구수출부 (Port Export Division : ED)에 관련 지원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조정부와 항구수출부는 e-CO 신청의 기초 역할을 하는 RFOR 판결을 승인하고 발부함과 동시에 승인된 사항을 e-COS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알려준다. 승인된 RFOR가 있는 수출 품목만이 e-CO 신청을 위한 작성 시 선택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난다.³³⁾.
- 수출업자는 e-COS를 통해 e-CO를 신청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들은 e-CO를 인쇄하기 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수출업자는 지불 확인서를 받은 후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바코드가 찍힌 e-CO를 인쇄할 수 있다.
- 수출업자가 서명한 후 ECD 혹은 ED 담당 세관원의 서명을 받기위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한다. 담당 세관원은 바코드가 찍힌 종이 형식의 eCO를 받게 되면 eCOS를 통해 참조번호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 한 후, eCO 양식에 관세국의 인증과 함께 서명 및 우표를 붙여준다³⁴⁾.

32) <http://www.portcalls.com/boc-launch-electronic-filing-certificates-origin/#>

33) <http://www.bworldonline.com/>, <http://portcalls.com>

34)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Customs (2016), 「Guidelines and procedur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System (eCOS)」

② 교환현황

- 2000년에 결성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연맹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 PAA)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치 있는 IT 기반 시스템을 홍보하고 제공하여 연맹 국가 간 원활한 거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재 PAA는 필리핀의 InterCommerce, 태국의 CAT Public Company Limited, 중국의 China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entre (CIECC), 싱가포르의 CrimsonLogic, 말레이시아의 Dagang Net, 한국의 KTNET 일본의 NACCS, 마카오의 TEDMEV, 홍콩의 Tradelink, 대만의 Trade-Van, 인도네시아의 PT EDII 등 전자무역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결성하고 있다³⁵⁾.
- PAA의 회원인 대만의 Trade-Van은 2007년에 한국 KTNET과의 원산지증명서 교환프로젝트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xchange Project)의 성공에 힘입어 2017년 5월에 개최한 PAA의 55번째 회의를 통해 PAA 파트너인 동남아시아 5개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인도네시아 (PTEDII), 필리핀(InterCommerce), 싱가포르(CrimsonLogic), 말레이시아 (DagangNet), 태국(CAT)과의 초국경 원산지 증명서 전자화 협정(Cross Border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xchange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 덧붙여 한국(KTNET)은 타이완(Trade-Van)과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서비스 외에도 전자 위생 및 식물 위생 증명서의 교환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한 서명을 완료했다. 또한, 2017년 5월 필리핀의 InterCommerce는 eCO 제출을 위해 타이완의 TradeVan과 계약 체결을 하였다.

③ 향후 발전계획

- 필리핀은 현재까지 다른 국가와 e-C/O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필리핀의 단일창구가 완벽히 구축된 후에 ASEAN 회원국가와의 특혜원산지

35) <http://www.paa.net>

증명서 입증을 위한 전자적 자료 교환을 할 예정이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필리핀은 무역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한 곳의 진입 지점에서만 제출하는 국가 단일 창구인 (Philippines National Single Window)인 TradeNet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NSW는 무역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모든 수출입 및 운송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일 진입점으로 정보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다.
- 2016년 상반기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의 회원국들과의 합의에 따른 ASEAN 단일 창구(ASW)의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자 서명하였으나, 당시 참여가 불가능하였다. ASW와의 상호 연결에는 운영 중인 NSW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NSW 2단계 프로젝트는 입찰에 대한 임시금지명령(TRO)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서명당시에는 PNSW 개발의 초기단계에 그쳐 있었다.
- 필리핀 세관은 US-ACTI에 ASW 기술 지원을 위해 요청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시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시점에서는 시범 운영 단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회원국은 NSW의 개발과 ASW 플랫폼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28> 필리핀 단일창구



자료: <https://nsw.gov.ph/>

○ 초기단계인 현재의 PNSW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 인터넷을 통해 NSW에 수입업자 / 수출업자 등록
- » 수입 및 수출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허가, 면허 및 허가의 신청 및 발급
- » 문서 보안을 위한 디지털 서명
- » 세관 운영 시스템 (Customs Operational System)으로의 PNSW의 링크는
상품 통관 절차에서 거짓 허가 및 면허의 발생 경감

[7] 아세안_싱가포르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싱가포르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

: <http://www.customs.gov.sg>

- 싱가포르 관세청은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일반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³⁶⁾에서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관세청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 우선 관세청에 공장 등 제조시설 등록 후에 관세청으로부터의 승인 레터를 받아야한다.
- 제조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FTA 또는 관세특혜 제도의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조원가계산서 (Manufacturing Cost Statement)를 제출한다.
- 세관에서 제조원가계산서 확인이 완료되면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신청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무역 자동화망 (TradeNet System; <http://www.tradexchange.gov.sg>)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게 된다.

36) · Singapore Commodity Exchange Ltd (Transaction on rubber only)
·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Singapore Malay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Manufacturers' Federation

- 수출자가 TradeNet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대리업자에 위탁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허가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담당하는 Crimson Logic Service Bureau에서 수취 가능하다.
- TradeNet 이용비용: 한 개의 계정 초기 등록비 : S\$50, 계정 한 개의 ID에 따른 월 사용비 S\$20 (그 외에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가 비용이 있음)
-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통관 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TradeXchangeTel: +65 6887 7888-2번 , tradexchange@crimsonlog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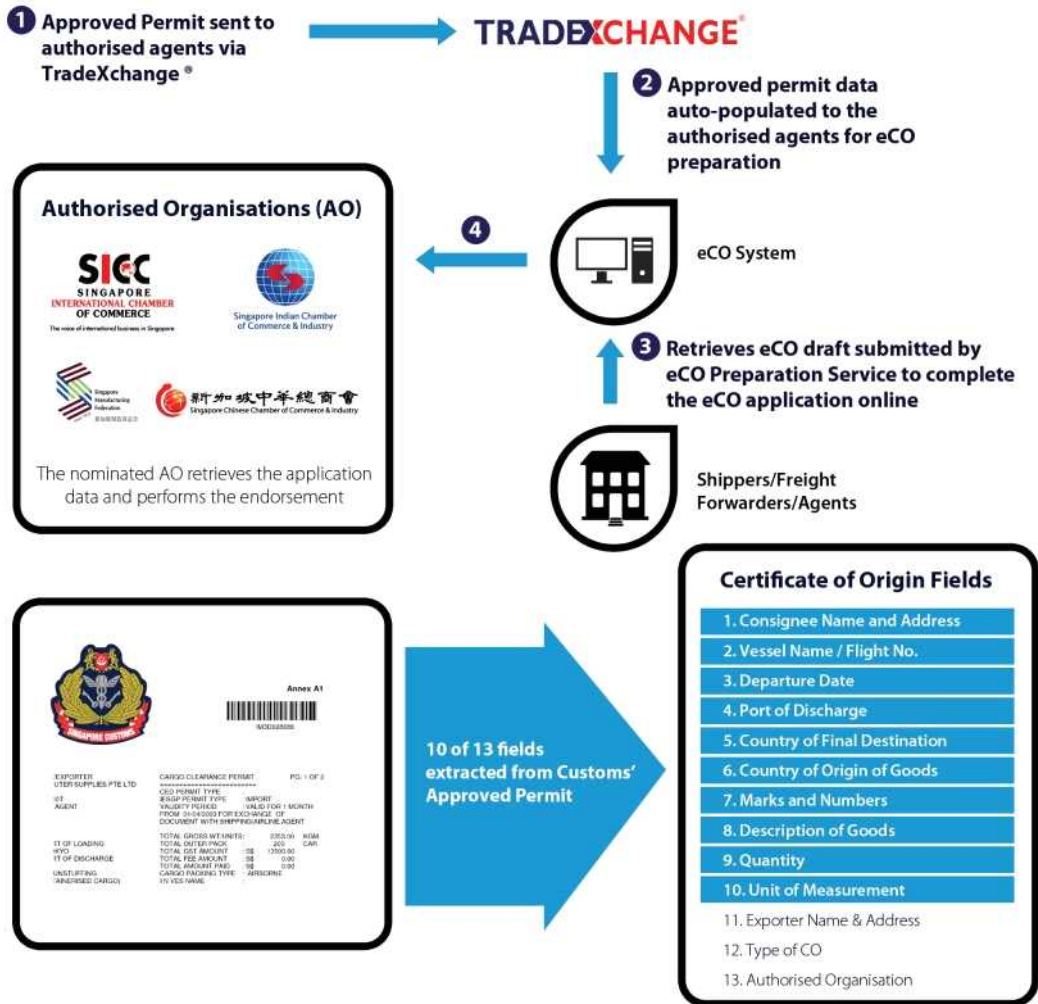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i) Tradexchange : <https://www.tradexchange.gov.sg>

- TradeXchange eCO Preparation 서비스는 화주와 공인 대리인이 세관의 승인된 허가서의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CO)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수출상품 설명과 같이 데이터 집약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총 13 개의 데이터 입력 부분 중 10 개는 승인 된 허가에서 추출 할 수 있다. e-C/O 신청서에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이를 통해 e-C/O를 보다 신속하게 적용하고 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29> 싱가포르 TRADEXCHANGE ECO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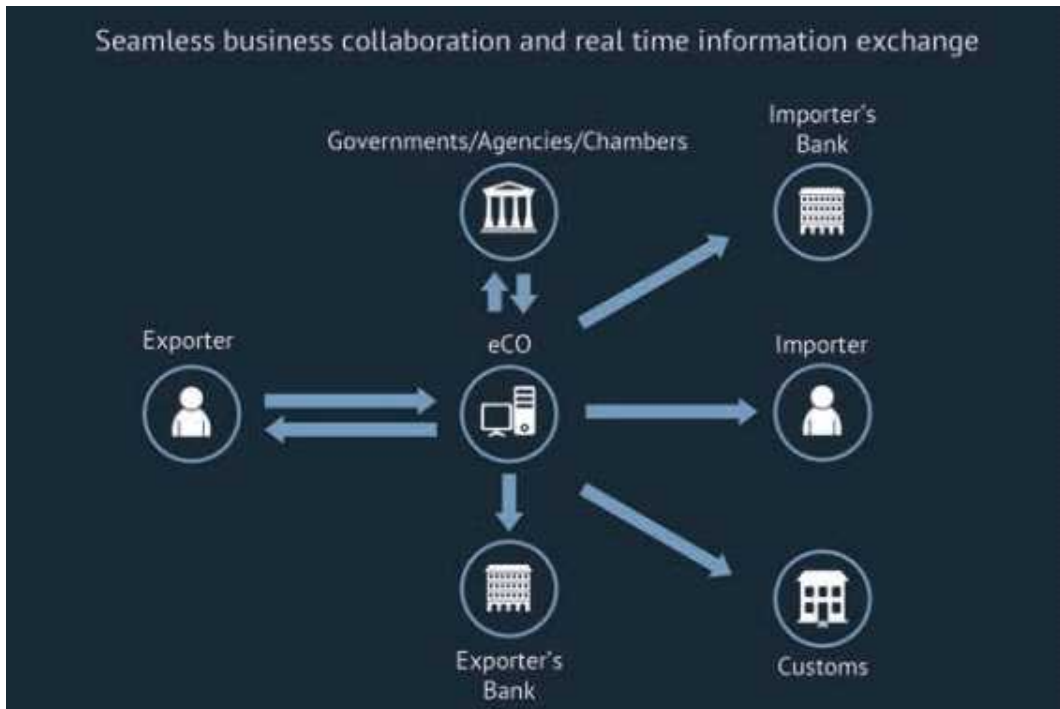


자료: <https://www.tradexchange.gov.sg/>

(ii) Global e-Trade Service (GeTS) -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Electronic CertOfOrigin (eCO) 시스템은 원산지 증명서 (CO)를 적용하고 인쇄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인증 시스템이다. eCO 시스템은 수출업체가 응용 프로그램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승인 당국은 지원 서류를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승인하고 인증 할 수 있다. 승인 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원, 은행 및 해외 바이어와 같은 수령자에게 즉시 전송 될 수 있다.

<그림 30> 싱가포르 Gets ECO 시스템



자료: <http://www.crimsonlogic.com/news.html>

- 문서의 전자전송 및 원활한 데이터 통합을 통해 CO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더 빠른 상품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은행이 부과하는 이자에 대한 현금 흐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언제 어디서나 다른 지역의 여러 당사자에게 인증된 CO 및 인쇄 기능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공한다. 전자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 전송을 통해 수출업체 및 대행사의 시간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한다. 승인된 모든 CO에 대해 광학 워터 마크 기술, 인쇄 제어 및 독창적인 웹 기반 발급 확인 기능을 통해 CO의 독창성을 보장한다.
- 문서의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해 CertOfOrigin은 프린터 제어 언어 또는 Post Script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프린터를 직접 제어하고 광학 워터 마크 기술을 사용하여 인증서에 워터 마크를 삽입하는데 이것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그리고 인쇄업자, 대리점, 은행, 세관 등이 인쇄물이 필요할 때 인증된 CO를 인쇄 할 수 있도록 인쇄 기능을 제공한다. 이 인쇄 기능은 공인된 조직에 의해 제어되고 감시된다.
- 또한, CertOfOrigin은 작업이 필요할 때 또는 진행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인증서 응용 프로그램 승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통해 알려준다.
 - » 응용 프로그램 처리상황
 - » 신청서가 승인 또는 거부 상황
 - » 승인 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대리인, 은행, 관세 등에 의해 접수/ 인쇄 처리 상황
- CertOfOrigin은 공개적인 키 인프라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 최종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카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기본적인 상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② 교환현황

- 싱가포르세관 (Singapore Customs)은 ASEAN 단일 창구 (ASEAN Single Window)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ASEAN 국가 별 단일 창구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게 하였다³⁷⁾. 현재 ASW는 아세안 역내 원산지 증명서인 ATIGA Form D를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③ 향후 발전계획

- 현재로서 싱가포르는 아세안국가 외 타 국가와 교환할 의향이 없다.

37) Circular 15/2017

4) 무역원활화 현황³⁸⁾

- 싱가포르의 국가적 단일 창구 (Singapore National Single Window)인 TradeNet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무역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입, 수출 및 환적 문서 처리 절차를 통합하고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가 무역 절차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TradeNet을 통해 싱가포르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상품의 이동을 감지하고 건강, 안전 및 기타 규제 요구 사항을 시행한다. 취급문서로는 Declaration, Permit, Certificate, License 등 국가단일창구인 TradeNet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관청의 수속 문서를 다룬다. TradeNet은 무역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및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며, 화물의 정리를 신속히 처리하고 수수료 및 세금을 전자적으로 공제한다.

<그림 31> 싱가포르 세관 단일창구 접속 사이트

SINGAPORE CUSTOMS

Singapore Government
Integrity · Service · Excellence

Login

Announcement
For your attention: CorpPass will be implemented for different government e-Services in phases from Sep 2016 to Dec 2017. Please ensure that your TradeXchange®/TradeNet® User ID's UEN/Entity ID and NRIC/FIN/Passport matches the data with your login CorpPass ID.
Should you need to update your TradeXchange®/TradeNet® User ID's NRIC/FIN/Passport(except for Declarants), email us at customeradmin@crimsonlogic.com.

Login using your TradeXchange® / TradeNet® ID.

Username:

Password:

Forgot your TradeXchange/TradeNet ID password? Please complete and print this [Password Reset Request Form](#), and fax it to us at 6873 0837 to request for password reset.

Login

Login using your CorpPass ID.

Have you registered for CorpPass? CorpPass will be implemented for different Government e-Services in phases from Sep 2016 to Dec 2017. We strongly encourage companies to register for CorpPass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inconveniences in the future when the TradeXchange®/TradeNet® User ID/Password login is no longer available.

Register for CorpPass now at www.corppass.gov.sg.

CorpPass Login

자료: <https://www.tradexchange.gov.sg/tradexchange/login.portal>

38)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TradeNet.html> for more detail
<http://asw.asean.org/nsw/singapore>

-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은 국가단일창구(NSW)구축을 완료하였다. 본래는 수출기업이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등 각 기관에 직접 별도로 신고하던 절차를 단일창구로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하였다. 국가들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별 국가단일창구를 통합한 국가단일창구에 아세안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역내 원산지증명서(ATIGA Form D)등을 공유하고 있다.

- 또한, 싱가포르의 CrimsonLogic은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합(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³⁹⁾에 참여하는 전자무역사업자 협의체로, 기업 간 B2B 전자무역문서의 교환과 상호 보안 인증 등 글로벌 전자 무역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39) PAA는 2000년에 결성되어, 태국의 CAT, 중국의 CIECC, 싱가포르의 CrimsonLogic, 말레이시아의 Dagang Net, 필리핀의 InterCommerce, 한국의 KTNET, 일본의 NACCS, 마카오의 TEDMEV, 홍콩의 Tradelink, 대만의 Trade-Van, 인도네시아의 PT EDII가 가입되어있다.

[8] 아세안_태국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태국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 <http://www.dft.go.th>

-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는 태국 상무부 통상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ii) 태국 유관기관 연락처

-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Tel. +66 2-547-4753, +66 2-547-4832 Web: www.dft.go.th/en-us/Intro

[2]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원산지 증명서 원본 사이트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은 태국 상무부 내 대외무역국 ‘E-Service’ 관련 홈페이지인 <http://edi.dft.go.th> <https://verify.dft.go.th/verify>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② 교환현황

-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 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 ASW)를 통해서 아세안 역내 원산지 증명서(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 ATIGA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고 있다.
- 2017년 4월 한국-태국 원산지 협력 세미나를 통해 태국 관세청 담당자와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③ 향후 발전계획

- 태국 국가 단일 창구 (NSW)는 2011년에 시행되었으며, 약 1만 개의 무역회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및 사업기관을 포함하여 36개의 핵심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태국 단일 창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통합된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통합된 페이퍼리스 등록 시스템과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태국 국가단일창구는 ASEAN 단일 창구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ASEAN 협정에 따라 시작되었다. 태국 국가 단일 창구 (Thailand National Single Window : TNSW)는 2008년에 초기 운영을 시작 하여 2011년 공식적으로 시행하였다.
- 정부기관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전자상거래의 표준 프레임워크인 ebXML⁴⁰⁾ 및 공개키인프라 (PKI) 그리고 단일 전자 창구 환경에서 안전한 전자 문서 교환을 위한 디지털 서 명에 동의했다. 태국은 TNSW 및 전자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 설립 및 글로벌 연결에 따른 전자 데이터 교환 및 무역 촉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40) APEC 전자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 문서 표준화를 위한 양식

<그림 32> 태국 단일창구



자료: <http://www.thainsw.net/INSW/index.jsp>

- TNSW 시스템은 통관신고 및 세관신고, 관세납부와 관련해서 전자문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TNSW의 핵심 기능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 정부 기관 및 무역 공동체를 위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국가 표준 데이터 포맷
 - » 통합된 서류없는 등록 시스템 및 다양한 국내 단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 트랙 및 추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회원이 직접 액세스하는 보안 서비스
 - » 표준 변환, 디지털 서명 및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한 기술
 - » 국가 간 데이터는 태국 정부 당국과 세관국, 상무부, 농무부, 대외 무역부, 노동부 및 태국 상공 회의소와 같은 정부기관과 다른 국가 정부기관 간의 정보 교환
 - » 국가 간 데이터는 태국 기업과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정보 교환

[9] 아세안_베트남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⁴¹⁾으로 베트남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⁴²⁾은 다음과 같다.

(i) 베트남 상공성 관할의 각 지역⁴³⁾의 수출입관리과 (Regional Export Import Management Bureau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OIT)

○ 베트남의 산업무역부는 원산지증명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관한 국가 기술규정을 제정하였다. 2006년 이래 산업무역부는 전자 인증서 발행 관리시스템인 eCoSys를 구축하여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2015년에 산업무역부는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험절차를 발표하였다.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스템은 www.ecosys.gov.vn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며 행정 수속 간소화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ii) 베트남 상공회의소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VCCI)

○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일반 GSP 관세우대 원산지증명서 및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2008년부터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41)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2)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3)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dong nai, hai phong, binh duong, vung tau, lang son, quang ninh, lao cai, thai binh, thanh hoa, nghe an, tien giang, can tho, hai duong and binh tri thien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시스템인 www.covcci.com.vn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iii) 베트남 유관기관 연락처

-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ebsite: <http://www.moit.gov.vn/en/Pages/default.aspx>
주소: 54 Hai Ba Trung Str, Hoan Kiem District, Ha Noi, Viet Nam
전화: (04) 22202222
Fax: (04) 22202525 / Email: bbt@moit.gov.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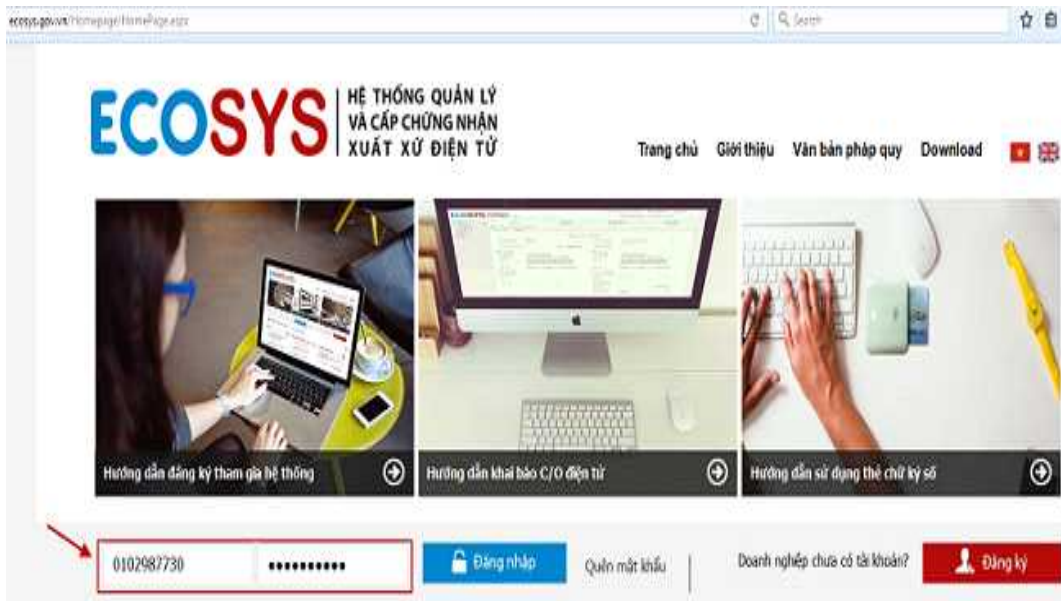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시스템 (ECOSYS)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 산업무역부의 06/2011 / TT-BCT에 의거하여 수출업자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는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전자양식으로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 인터넷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없는 한 ECOSYS를 통해 관련 문서를 종이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⁴⁴⁾
-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FORM VK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M AK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M D (ASEAN countries) 등 이다.

44) <http://www.customs.gov.vn/>

<그림 33> 베트남 ECOSYS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ecosys.gov.vn/>

<그림 34> 베트남 ECO 시스템이 취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자료: <http://www.ecosys.gov.vn/>

-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CO)를 사용하는 Circular No. 22 / 2016 / TT-BCT가 산업 및 무역부 장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세칙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ASEAN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는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CO를 제공하는 생산자, 수출업자 및 조직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는 현행 3년 대신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CO 데이터를 보관해야한다. 베트남의 ECOSYS 시스템을 통한 e-C/O 신청의 자세한 절차는 해당 사이트⁴⁵⁾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발급하는 PCO의 전자발급시스템은 COVCC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VCCI의 법률 사무총장은 기업편이를 위한 관점에서 C/O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35> 베트남 ECOSYS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covcci.com.vn>

45) www.ecosys.gov.vn/Homepage/GuideDetailByAlias.aspx?CateAlias=huong-dan-khai-bao-CO

- VCCI는 베트남의 북쪽지역에서 남쪽지역으로 걸쳐 소재하고 있는 지점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VCCI 온라인 C/O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들이 C/O를 신청하기 위해 VCCI가 제공하는 MST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C/O용 서식파일이 나타난다.

<그림 36> 베트남 VCCI ECO 신청시스템 화면



자료: <http://covcci.com.vn/index.aspx?sModule=addmodule&stypeid=44&spage=15>

- 온라인 C/O 양식의 내용은 종이양식과 유사하게 작성한다.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완료한 후 양식에서 2차원 바코드가 나타나는데, 이 바코드는 관독기를 통해 VCCI의 시스템에 양식 정보를 제공한다.
- 온라인 C/O 양식은 다음의 첨부된 그림과 같다.

<그림 37> 베트남 VCCI ECO 신청양식 작성 화면

The image shows a web-based application form for a Certificate of Origin (ECO) from VCCI. The form is in Vietnamese and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Header:** VCCI logo and 'CERTIFICATE OF ORIGIN' title.
- Registration Info:** Mã số thuế: 01001080921, Số công ty: 01001080921, and other identifiers.
- Applicant Info:** Tên công ty: Công ty TNHH Thương mại và Công nghiệp Việt Nam, Địa chỉ: Số 9 - Đường Nguyễn Đình Chiểu, Quận 5, TP. HCM.
- Goods Table:** A table with columns: Mã HS, Tên hàng (Chứng VPH), Số lượng, Đơn vị tính, Trị giá, Ngành M, Mã CAT. It lists several HS codes (2204.21.00, 2204.22.00, etc.) and their corresponding quantities and values.
- Signature and Date:** Fields for 'Số chứng', 'Ngày' (07/03/2018), and 'Số và tên hàng xuất'.
- Declaration:** A section for 'Lời chứng' where the applicant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자료: www.covcci.com.vn

② 교환현황

- 베트남 세관국 (GDVC)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ASW를 통해 공식적으로 ASW를 교환하기 위해 2017년 현재는 비준 절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향후 발전계획

(i) 베트남-칠레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 교환

- 베트남과 칠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전자 시스템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VCFTA (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된 후, 베트남과 칠레는 통보된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Form VC)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개최될 다음 회의에서 전자 시스템 실행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i) 베트남 국가단일 창구 시행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ASW 연동

- 2014년 중반에 아세안단일창구(ASW)의 구축 프로젝트 참여에 동의한 베트남은 ASW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인 NSW(National Single Window)를 구축하였다. 그 후 2015년 말 베트남 국가단일 창구인 Vietnam Single Window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의 기술적 연동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NSW의 연동을 통한 ASW로의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가 승인 되는대로 ASW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2018년 1월 예정)
- 또한, 2020년까지 수출입 화물관리에 참여하는 ①모든 부처들의 행정절차를 국가 단일창구 제도를 통해 처리하고, ②단일창구제도를 통해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수수료 전액을 전자방식으로 납부 받고, ③통관소요 시간 단축 성과를 아세안 국가 중 상위 4개국 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⁴⁶⁾.

46)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4658

4 무역원활화 현황

- 베트남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재무부 산하 관세청을 포함한 9개 부처의 참여로 베트남 국가 단일창구(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VNSW)를 시행하였다. VNSW를 개발하게 되어, 이를 통해 국제 운송 및 무역활동에 있어서의 정부기관 및 비즈니스 공동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8> 베트남 단일창구



자료: <https://vns.gov.vn/>

- » 국제 무역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표준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단일 지점에서 제출 및 전송한다.
- » 정부 기관은 데이터 및 정보를 처리하고 통일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 » 정부기관 간에 정보교환 협정을 토대로 시스템에 전송한다.

- » 수입품의 신고, 통관 및 해제, 물품 및 운송의 수출에 대한 세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MITI의 승인에 따른 허가 발급 절차를 제공한다.
- » 항만 당국의 허가 하에 출입국 선박의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 » VNSW에서 전자 문서 보관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아세안_라오스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⁴⁷⁾으로 라오스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⁴⁸⁾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중반까지 한-아세안 FTA의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라오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MOIC)에서 발급하였는데,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발급기관이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LNCCI)로 변경되었다.

(i)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LNCCI)

: <http://www.laocci.com>

○ 라오스 상공회의소 (LNCCI)는 라오스 정부와 민간 기업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독립기관이다. 현재 13개 주의 비즈니스 협회나 그룹들을 통틀어 천 명 정도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공 회의를 통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LNCCI의 최대 임무는 각국의 무역 및 투자확대를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또한, 라오스 상무부 (MOIC)에서 위임받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라오스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발급이다. 라오스 수출 산업의 성장 및 확장을 고려하여 최근에 원산지증명서의 준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중에 있다⁴⁹⁾.

47)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8)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9) <https://www.gmsbizforum.com/index.php?r=site/content&id=29> (검색일: 2017년 6월 1일)

(ii) 라오스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담당자 연락처

-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ndard Division

담당자명: Kaysone Phomvihane Ave, Ban Phonphanao

전화: (856-21) 453 312 Ext: 118, 119

팩스: (856-21) 452 580

이메일: Incci@laocci.com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라오스 정부는 2016년 4월 무역원활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였다.⁵⁰⁾ 라오스의 상무부가 구축한 전자원산지증명서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O)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접수를 받는다.
-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만 발행 할 수 있었으나 ECO 신청 시스템 웹사이트가 (<http://www.ecolao.gov.la/>) 구축⁵¹⁾됨에 따라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에 심사통지를 인쇄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절차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문서를 신고하는 전자적 절차이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자와 수출자로 한정되어 있다.
- 현재 이 시스템은 상공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나 상공회의에도 곧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향후 종이형식이 아닌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Paperless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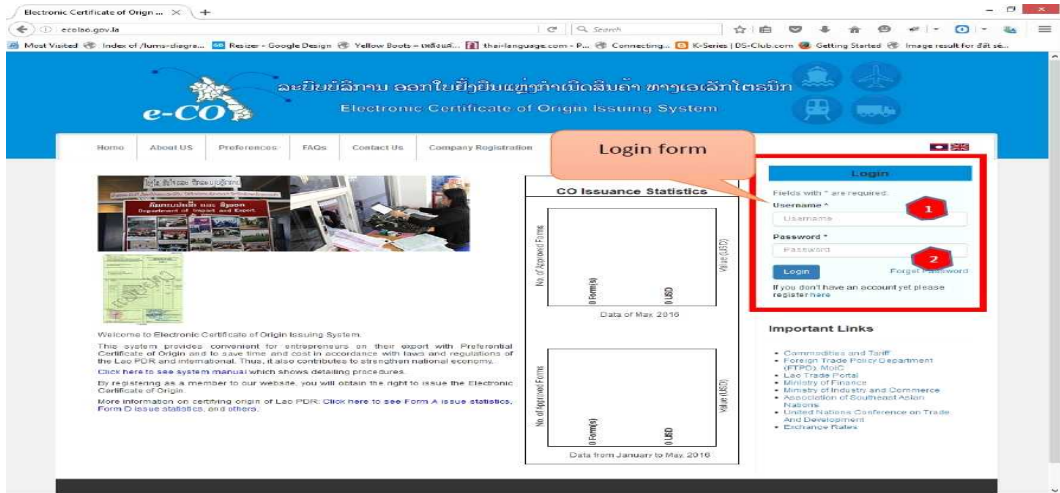
50) <http://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site/display&id=1005#.WTTeguvyhhH>

(검색일: 2017년 6월5일)

51) 2016년 2월 26일자 전자원산지증명서 0369/MoIC.DIMEX에 근거로 함.

52)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18211>

<그림 39> 라오스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www.ecolao.gov.la>

○ 다음은 해당사이트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작성 시의 화면이다.

<그림 40> 라오스 ECO Form AK 작성 화면

Form AK

Create Form AK

Fields with * are required.

Exporter Information

Cyber
01, Samsenthai Road, Xiengnnon Village, Chanthabouly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Transport Information

Transport Route

Shipment date

Departure date
Departure date

Vessel Flight No
Vessel Flight No

Port Discharge
Port Discharge

Port of Discharge

Importer Information

Importer Name
Importer Name

Importer Address

Country
— Please Select Country —

List of Confirmation of Product Eligibility

Cyber CPE 123 : Cyber CPE

Vessel's name / Aircraft etc.

Item Details
Add Item Remove Item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Number and date of invoic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Custom description"/> <input type="text" value="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Please Select HS Code -- <input type="text" value="Amount"/> <input type="text" value="Quantity"/>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Update Gross weight"/> <input type="text" value="Total Value"/>	<input type="text" value="Invoice and date of invoices"/>

List of upload documents

Document type*	Reference number*	File*	Title*
<input type="checkbox"/> -- Please Select Docu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Browse..."/> No file selected.	<input type="text"/>

Options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HS code of the importing country

자료: <http://www.ecolao.gov.la> (system manual)

② 교환현황

-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E-PCO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전자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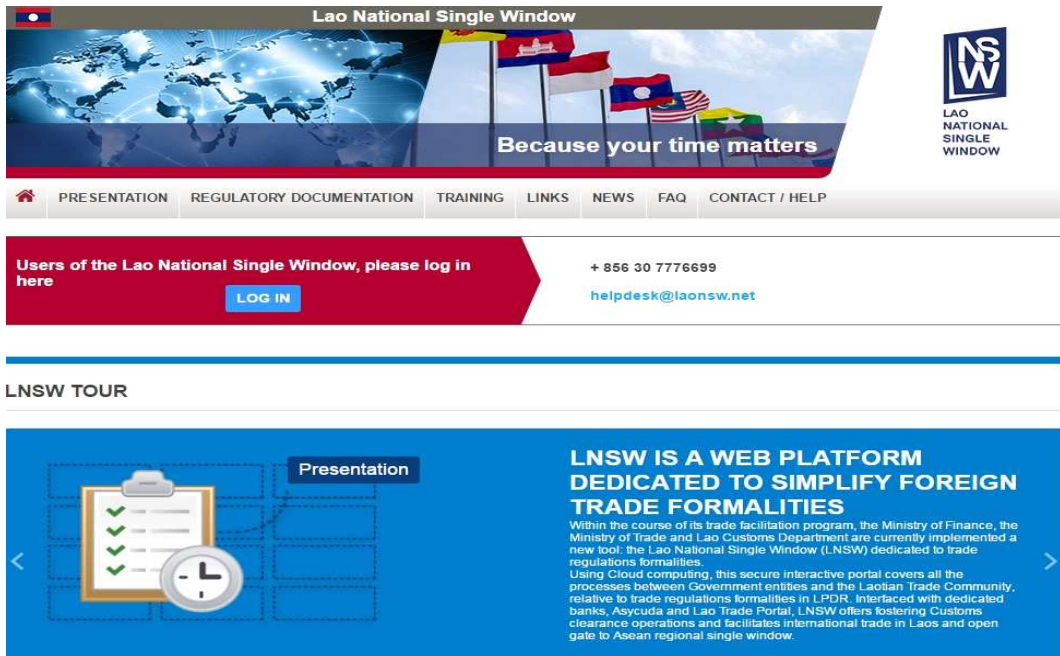
③ 향후 발전계획

- 라오스는 아세안회원국으로서, 라오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는 아세안 지역 간의 전자정보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ASW의 목적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통관 관련 문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화물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아세안 경제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함이다. 라오스의 NSW 구축은 곧 완성될 예정이며 다른 아세안국가와의 통관 관련 전자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4) 무역원활화 현황

- 라오스의 국가단일창구(Laos National Single Window : LNSW)는 수출입 신고 및 전자허가서 그리고 증명서 확인 기능 등이 탑재되어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국가별로 단일창구를 구축해 나가는 추세이다.
- 현재 시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정부 관계자 및 허가된 테스트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라오스의 최종시스템인, Lao National Single Window(<http://www.laonsw.net>) 는 향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자허가서, 증명서 발급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서비스들이 제공 될 것이다.

<그림 41> 라오스 단일창구



자료: <http://www.laonsw.net>

- 추가적으로 한국의 유니패스(UNI-PASS)와 같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지원 시스템으로는 ‘라오스트레이드포털’ 이 있다. 라오스 상공부는 2012년에 무역포털 웹사이트 (<http://www.laotradeportal.gov.la>)를 개설하였다. 이것은 2012년 당시에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전에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대외적인 교역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구축된 것이다.
- 라오스트레이드포털은 통상 분야 법령제도, 수출입 무역거래, HS 코드에 의한 품목분류 및 관세, 통관절차, 수출입규제요건 이행절차, 위생검역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등 전반적인 무역정보가 개시되어있다. 이로써 국민의 무역접근이 보다 용이해 졌으며 이는 아세안과의 무역절차 간소화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42> 라오스 트레이드 포털



자료: <http://www.laotradeportal.gov.la>

[11] 아세안_캄보디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⁵³⁾으로 캄보디아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⁵⁴⁾은 다음과 같다.

(i) 캄보디아 상무부 (MOC, Ministry of Commerce)

: <http://www.moc.gov.kh/>

- 캄보디아는 상무부 (MOC)의 수출입부서 (Export-Import Department)에서 원산지 증명서 관련 일을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해당부서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 2015년 캄보디아의 MOC가 MOC가 원산지증명서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수출업체와 제조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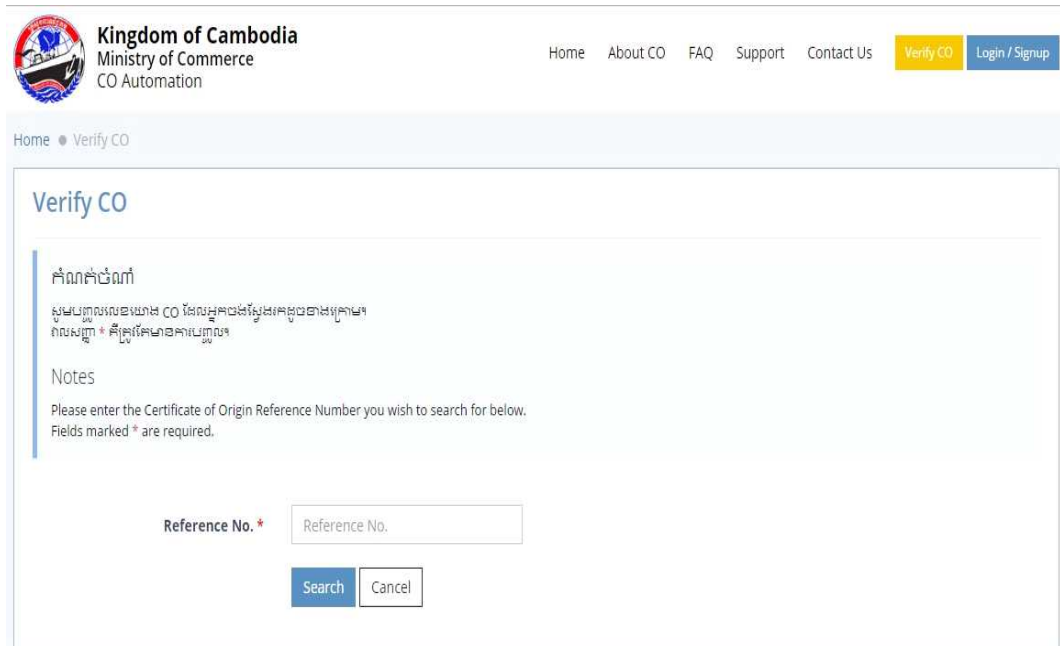
- MOC는 2015년 싱가포르의 Crimson Logic과 공동으로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시스템인 CO Automation을 개발하여 상무부에서 직접 신청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업체가 장관의 우표와 인감이 포함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수령 시간을 단축시킬 목표로 하였다.

53)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4)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해당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상무부의 검토 및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원산지증명서의 상태에 대해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된다. 결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려면 수출업체가 서명하고 상무부의 서명도 필요하다.

<그림 43> 캄보디아 ECO 조회사이트 화면



자료: <https://co.moc.gov.kh/Verify/Index>

- 해당사이트는 CO Automation 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 이외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reference number로 조회가 가능하다.
- 해당 시스템은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유럽 연합 (EU)을 비롯한 대 다수의 무역 상대국이 여전히 서명이 있는 종이형식(hardcopy)의 원본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② 교환현황

- 캄보디아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E-PCO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전자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전자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험 단계에 있으며 아직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③ 향후 발전계획

- 캄보디아 상무부는 아세안 회원 국가들과의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중에 있다. 2014년 4월에 세계은행 (World Bank)의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국가 단일창구 (Cambodia National Single Window) 설계⁵⁵⁾를 완성하였다.
- 또한 상무부와 관련 정부 기관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의 전자 상거래 모델법과 UN 전자 통신 협약에 기반을 둔 전자 상거래의 법적 구조 측면에서 전자 거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일창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정책자문팀, 기술프로젝트팀과 NSW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 2017년 말까지 상무부의 E-CO 시스템에 아세안단일창구(ASW)을 연결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단일창구 \ (Cambodia National Single Window, CNSW) 개발을⁵⁶⁾ 위한 추가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캄보디아 상무부 측에서 예상하기로 몇 년 내에 아세안 역내 e-ATIGA 원산지증명서인 Form D를 교환하는 시범 단계에 참여할 예정이라 밝혔다.

55)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지원하는 아세안싱글윈도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법적 격차 분석을 수행하였음

56) 캄보디아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ercise of Cambodia)이 NSW 계획, 개발,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

4 무역원활화 현황

- 캄보디아 단일창구 (CNSW)는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스템의 기술 및 기능 사양, 관리 및 운영 모델, 조달 전략 및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개발되었다. ASEAN 단일 창구 - 무역 및 투자를 통한 ASEAN 연결성 (ASEAN Connectivity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 ACTI) 프로젝트 하에 수행된 법적 갭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다.
- 또한, 캄보디아는 무역원활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UNCTAD에서 제공하는 세관 자동화시스템인 ASYCUDA Project⁵⁷⁾의 지원을 받고 있다.
- 현재 캄보디아의 단일창구 구축을 위해 지원해주는 ASEAN 연결성 프로젝트 (ACTI)는 나아가 아세안단일창구 (ASW)에 ASYCUDA시스템과 캄보디아 상무부의 e-CO시스템을 연결하는 캄보디아 국가 단일창구 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57) UN에서 제공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통관수속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이다.

[12] 아세안_미얀마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재 한국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미얀마 특혜 원산지 증명서 (PCO)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미얀마 상업부 무역국 (Ministry of Commerce, Directorate of Trade)

: <http://www.commerce.gov.mm>

○ 미얀마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공업성 (Ministry of Industry)에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제품가격명세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 제품 가격 명세서
- 「추천장」 신청 양식 (무역국에서 입수)
- 원재료 및 부속품 수입시의 수입허가증 · 인보이스 · 수입신고서 · 패킹리스트
- 수출입자등록증 (무역국에서 발행)
- 미얀마 상공회의소연맹회원증

○ 다음으로 공업성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추천장」을 발행한다. 수출업자는 추천장을 가지고 무역국에 제품등록카드를 신청한다. (1년간 유효) 이하의 서류와 함께 무역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한다.

- 제품등록카드
- 원산지증명서 (무역국에서 구입)
-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 원산지증명서신청 개요

- 원재료 목록
- 선하증권 (B/L)
- 수출입자등록증 (무역국 발행)
- 수출신고서
-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추천장
- 미얀마 상공회의소연맹 (UMFCCI) 등록증
- 경영자 목록
- 발급수수료 영수증

○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무역국에서 CO를 승인하고 발행한다. (1일 소요)

(ii) 미얀마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미얀마 상업성무역국 (Ministry of Commerce, Directorate of Trade)

양곤지부 주소 : 228/240, Kanna Road, Yangon

전화 : 01-376057 (미얀마어)

(iii) 미얀마 상공회의소연맹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UMFCCI)

: <http://www.umfcci.com.mm/country-of-origin/>

○ 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 일반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서는 미얀마연방 상공회의소연맹 (UMFCCI)에 가입이 필요하다. 수산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UMFCCI가 아닌 미얀마수산업연맹 (Myanmar Fisheries Federation)에 등록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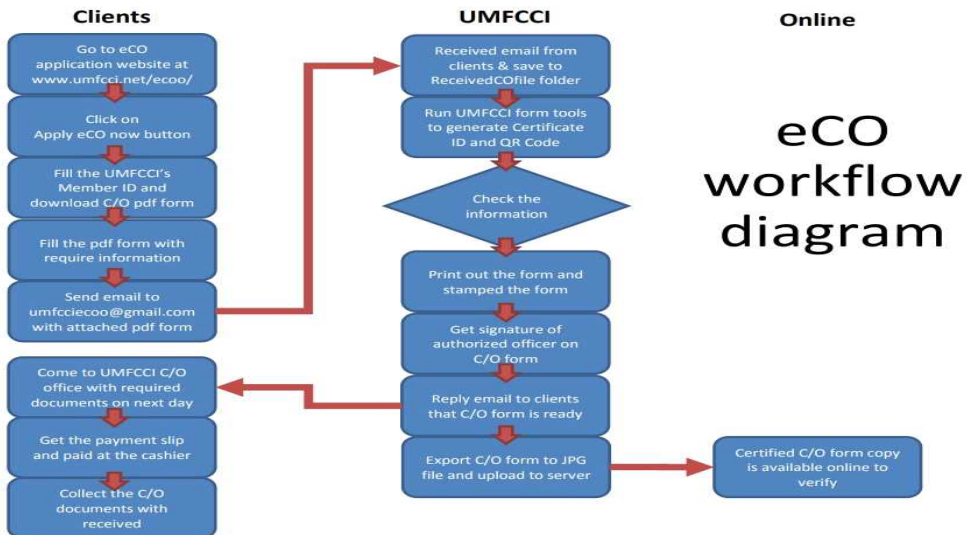
○ 일반원산지증명서는 UMFCCI에서 발행되며,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 사항에 대한 승인 및 PCO의 발행은 미얀마 세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㉔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미얀마 정부는 2013년 8월 상공회의소연맹 전자적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한 시스템 신청 지침을 소개하였다. 우선 다음의 웹사이트 링크 (<http://www.umfcci.net/ecoo>)를 통하여 PDF 형식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회사 이름과 UMFCCI 회원 번호를 저장한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된 PDF 파일을 첨부하여 umfcciecoo@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낸다. 접수된 PDF 파일을 UMFCCI에서 확인 및 승인 절차 후, UMFCCI에서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첨부 서류들을 지참해야한다⁵⁸⁾.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4> 미얀마 UMFCCI ECO 신청 및 발급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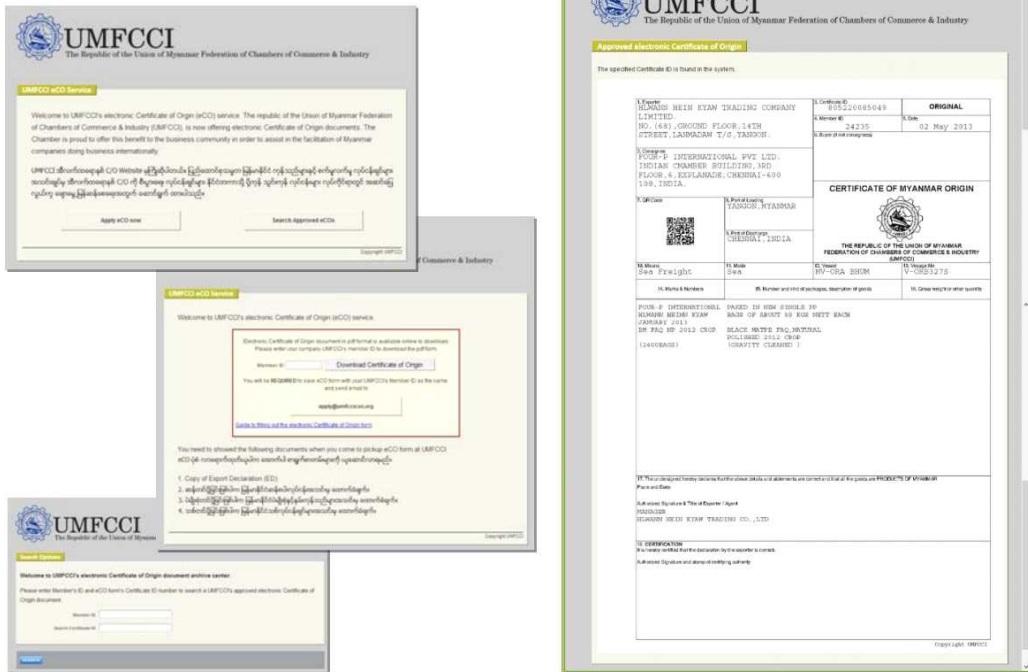


자료: <http://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business.pdf>

58) <http://www.asean-cn.org/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255&id=42>

<그림 45> 미얀마 UMFCOI ECO 신청 화면

eCO Website



자료: <http://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business.pdf>

② 교환현황

- 미얀마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E-PCO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전자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③ 향후 발전계획

-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지역 간의 전자정보 교환을 추진 중에 있다. 아세안단일창구는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단일창구 (NSW)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지역적 단일 창구이다. ASW의 목적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통관 관련 문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화물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아세안 경제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함이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현재 미얀마 세관국(Myanmar Customs Department)은 전자세관(E-customs) 및 국가 단일창구(NSW) 구축을 위해 아직 개발 진행 중이다.
-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발전과 아세안단일창구(ASW)의 이행 지침을 따라야 한다. ASW가 접근 가능한 미얀마의 E-Customs 시스템 개발은 2013년 7월부터 NTT Data⁵⁹⁾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업체로 지정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⁶⁰⁾.
- 이 시스템은 일본의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NACCS)와 통관정보종합판정시스템(Customs Intelligence Database System : CIS)와 같이 MACCS(Myanmar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또는 MCIS(Myanmar Customs Intelligence System)라고 불린다.
-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가 2015년 4월부터 진행 중이며 2016년 11월부터 정식 가동하였다. MACCS의 도입에 따른 무역원활화 및 적절한 관세 징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는 무상원조로 미얀마 세관에 대해서 제도정비와 인재육성을

59) <http://www.nttdata.com/global/en/>

60) <http://www.mof.gov.mm/en/content/customs-department>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의 개혁과 근대화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⁶¹⁾.

- MACCS 시스템에서 관세청은 상무부, 미얀마 항만청, 식품 의약청 (보건 복지부), 식물 검역원, 동물 검역원, 어업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이외에 수입업자, 수출업자, 무역 공동체 및 항공화물 회사의 세관 중개인, 화물 운송 업체, 컨테이너 야드, 항공 회사, 해운 회사, 운송 공동체의 해운 대리점도 참여하고 있다.
- NSW 이행의 첫 단계는 양곤 지역, 본사, 11 개의 항구, 1개의 특별 경제 구역, 1개의 공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SW는 식약청, 동물 검역소, 식물 검역소, 수산부, 경제 은행, 상무부, 미얀마 항만청 등 여러 기관을 연결 하여 운영된다.
- 세관부의 수입통관 절차는 MACCS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MACCS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양곤 지역의 세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말에는 여러 지역으로 확장될 계획이다⁶²⁾.

61) <https://www.jica.go.jp/myanmar/office/information/press/170131.html>

62) <http://asw.asean.org/nsw/myanmar/myanmar-general-information>

[13] 중남미_칠레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칠레 FTA 협정발효(2004년) 당시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은 자율증명(Autocertificacion) 방식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 증명서로 정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양국 통일 양식을 사용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 발행한다. 일부 협정에 따라 ‘칠레산업협회 SOFOFA(www.sofofa.cl)’, ‘중앙원산지증명 기관 UCCO(www.ucco.cl)’ 및 기타 민관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도 있다.

(i) 칠레외교부국제경제실 DIRECON(Direccion General de Relaciones Economicas Internacionales) : <https://www.direcon.gob.cl/>

- 국제 경제 관계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 통상부의 산하 공공 기관이다. 칠레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국가 수출 개발에 협력
- » 양자 및 다자간 협상과 칠레를 포함한 다른 국제위원회에 관여
- » 해외 공공 및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 무역 사절단의 방문을 촉진
- » 재정부 장관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하는 국제 조약과 경제 협정을 협상
- » 정부 경제 정책의 해외 확산
- »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준수해야하는 정책을 조정
- » 국제 시장 부문의 최적 사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제안

(ii) 칠레산업연합회(SOFOFA) : <http://web.sofofa.cl/>

- SOFOFA는 칠레 기업들 연결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약 4,000개 업체, 38개 산업 협회, 2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구성원은 칠레

산업 활동의 100%와 칠레 GDP의 30%를 차지한다.

- SOFOFA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경우 수출 송장과 수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출될 제품의 국가 및 관세 코드가 결정되면, AVOF에 위치한 SOFOFA의 원산지 인증 부서에서 원본 양식을 요청해야한다.

(iii) 중앙원산지증명기관(UCCO) : <http://www.ucco.cl/>

- UCCO의 중앙 사무소는 수출 제품의 원산지 확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감사 및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농산물과 수산업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 인증 및 원산지 확인 작업은 UCCO 소유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며 현재 수출업체가 인증서를 발급, 인쇄 및 인증 사무실에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본사 직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인증서를 승인하기 전에 시스템은 각 수출업체 및 제품이 위험 등급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위험 등급 분석 및 지원은 산티아고 UCCO 본사의 전문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iv) 칠레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SOFOFA 산티아고 사무소

담당자명 : Sr. Alejandro Baierlein H., Jefe Depto

전화 : (56-2) - 2391 31 00

이메일 : tech2@eicindia.gov.in

- 중앙원산지증명기관(UCCO)
 담당자명 : Carolina Espinoza Ruiz
 전화 : 56-2 - 2 365 40 21
 이메일 : cespinoza@ucco.cl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실제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와의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디지털로 교환하고 있다. 칠레산업연합회의 회원사일 경우 로그인을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6> 칠레산업연합회(SOFOFA) 사이트 로그인

Miercoles, 14 de Junio de 2017

SOFOFA

Servicios
CERTIFICACIÓN DE ORIGEN

Mediante este servicio, Usted puede remitir un Certificado de Origen directamente a los analistas del departamento, quienes verificarán los antecedentes y actualizarán el estado de revisión del certificado.

Usted se dirigirá a [nuestras oficinas](#) sólo después de verificar la aprobación del Certificado

[Información Adicional](#)

RUT de la Empresa

Clave de Usuario

[Cambio de Clave](#)

[¿Olvidó su Clave?](#)

[Nuevo Certificado de Origen](#) [Modificar Certificado de Origen](#) [Consultar Certificado de Origen](#)

Sólo empresas debidamente registradas pueden utilizar los servicios en línea. Si no se ha registrado por favor [inicie el proceso aquí](#). Si ya lo ha hecho y desea actualizar sus datos, acceda a [Modificación de Empresa](#).

Agradecemos dirigir sus consultas a enlinea@sofofa.cl o al fono (56-2) 391 3260

자료: <http://www.sofofa.cl/Login/logemp.asp?p=10>

- SOFOFA에는 콜롬비아 외에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와도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작성할 서식을 고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림 47> 칠레산업연합회 (SOFOFA) 원산지증명서 작성 서식



자료: <http://www.sofofa.cl/sofofa/index.aspx?channel=4377>

- 칠레산업연합회(SOFOF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그림 48> 칠레산업연합회 (SOFOFA) 원산지증명서 조회



자료: <http://www.sofofa.cl/sofofa/index.aspx?channel=437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 칠레(인터넷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매뉴얼 참조)

② 교환현황

- 현재 칠레는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와 원산지디지털 정보의 교환을 시행 중에 있다. 콜롬비아와는 2009년 9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de Colombia : www.dian.gov.co)과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Digital)를 교환하고 있다.
- 또한, 에콰도르와는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칠레산업협회(SOFOFA www.sofofa.cl)를 통해 에콰도르와 디지털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향후 발전계획

- 칠레의 경우 교환 범위를 보다 넓혀나갈 계획이 있다. 현재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 중에 있으며 또한, 베트남, 터키, 홍콩,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산지 자료 관련 인증 메커니즘을 활용하도록 협상하고 있다.⁶³⁾

④ 무역원활화 현황

- SICEX는 “통합대외무역시스템”으로서 칠레 관세청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칠레는 2000년 SICEX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수입 및 제품의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과 관련해서 3일이 소요되었던 증명서 발급 작업을 2시간 30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
- 2017년의 목표는 SICEX 시스템을 통한 무역이 전체 무역 대비 60%에 이르는

63) 칠레외교부국제경제실 DIRECON (www.direcon.gob.cl)

것이라고 칠레의 재무장관이 공표하였다. 아직 원산지증명서를 2017년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SICEX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결합할 예정이다.⁶⁴⁾

<그림 49> SICEX 메인화면



자료: <https://www.sicexchile.cl/portal/web/sicex/inicio>

64) www.sicexchile.cl/portal/noticias/-/blogs/sicex-incorporara-nuevos-tramites-este-ano

[14] 중남미_과테말라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과테말라는 중미경제통합체제 (SIECA)의 회원국으로 2015년 SIECA의 회원국인 6개국⁶⁵⁾과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6년 11월 한-중미(中米) FTA 타결을 선언한 후 2017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i) 과테말라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 MINECO)의 수출지원센터 (Ventanilla Unica Para las Exportaciones : VUPE⁶⁶⁾)

○ 과테말라의 경우 정부기관인 경제부(이하 MINECO)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MINECO는 과테말라의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이 외에도 대외 무역 개선 및 촉진, 고용 창출에 유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개발 지원,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공정한 여건 조성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MINECO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관련 협정문 및 증명서 서식을 조회⁶⁷⁾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ii) 과테말라 수출업자협회 (Guatemalan Exporters Association: Agexport)

○ 해당 협회는 과테말라의 수출 부문에 있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출절차에 관련된 기관들을 중앙 집중화하고 조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대외 무역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한다. 수출부문을 위한 서비스로 과테말라의 수출 단일창구인 ‘VUPE’ 를 지원하고 있다.

65)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66) 과테말라 수출 단일창구

67) 과테말라-에콰도르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 확인: <http://www.mineco.gob.gt/content/guatemala-ecuador>

- 2015년 8월부터 VUPE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디에서든 SEADDEX 시스템⁶⁸⁾을 통해 신청 가능해 졌다.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상공회의소 혹은 VUPE 센터를 통해 수령 가능하다.

(iii) 과테말라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담당자명 : Delegada Carmen Turcios

전화 : +50 2 4216-0265

이메일 : vupe@camaradecomercio.org.gt

- KOTRA 과테말라

담당자 명 : Mr. Alexander Cutz

전화 : +50 2 2412-0200

이메일 : acutz@mineco.gob.gt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과테말라의 VUPE는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수출지원 웹인 ‘SEADDEX’를 통해 원산지의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SEADDEX도 타국가의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회원인증이 필요하여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

68) 수출지원 전자 시스템

<그림 50> 과테말라 VUPE 온라인 조회



자료: <http://vupe.export.com.gt/wp-content/blogs.dir/8/files/IT-01-002XInstructivoXElaboraciXXnXdeXCertificadosXdeXOrigenXFormasXA-SeedexXWeb.pdf>

- 과테말라의 SEADEx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서류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이렇게 작성된 전자 증명서들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Nota Importante: Los documentos descargados a través de e-Docs no tienen un valor legal, para obtener una copia del expediente certificado puede abocarse a oficinas VUPE.

요약 : e-Docs를 통해 다운로드 한 문서는 합법적인 가치가 없다.

② 교환현황

- 과테말라는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및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1> 과테말라 VUPE 온라인 작성

Inicio VUPE OPA MINECO AGEEXPORT CHAT

Bienvenido 28/04/2015 - Administrar Perfil

Página de inicio

Selección de Código Exportador

Documentos de Exportación

MINECO

Monitoreo

Generador de Reportes

2. Régimen: DECRETO 29-89

3. Tipo de Exportación: EXPORTACIÓN

Ingreso de Coexportadores

4. Medio de Pago y Medio de Transporte

5. Medio de Transporte

Medio de Pago: COBRANZA

Forma de Pago: ANTICIPADO

Origen de la Exportación

6. Aduana de Salida / Aduana de Zona Franca de Salida

Tipo: Aduana de Salida

Nombre: Aduana de Salida

Destino de la Exportación

7. País de Destino de la Mercadería

País Destino: GUATEMALA

8. Aduana de Entrada (USA y CA) / Aduana de Zona Franca de Entrada

Seleccionar si la salida sera por Aduana o Zona Franca dependiendo de su exportación.

luego enter en NOMBRE para buscar.

Origen de la Exportación

6. Aduana de Salida / Aduana de Zona Franca de Salida

Tipo: Aduana de Salida

Nombre:

Ubicación: CONCEPCION LAS MINAS, CHIQUIMULA

GUATEMALA

7. País de Destino de la Mercadería

8. Aduana de Entrada (USA y CA) / Aduana de Zona Franca de Entrada

자료: <http://portal.export.com.gt/Portal/BOLETINES/Vupe/ManualesSW/Manual%20Usuario%20Seadex%20Web.pdf>

③ 향후 발전계획

- 현재 VUPE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두라스와 오프라인 시스템 연동을 실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현지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SEADEx 시스템의 매뉴얼 및 동영상 등을 배포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2> 과테말라 SEADEx의 사용 가이드 매뉴얼

원산지 가이드의 인증서

-  SEADEx 웹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 가이드 A 형 (627.6 킬로바이트, 2,670 안타)
-  SEADEx 웹에서 EUR1 증명서의 개발을위한 가이드 (595.1 킬로바이트, 2,053 안타)
-  원산지 파나마의 인증 완료 가이드 (574.7 킬로바이트를, 756 안타)
-  원산지 콜롬비아의 인증 완료 가이드 (562.2 킬로바이트를, 875 안타)

<그림 53> 과테말라 - 온두라스와 시스템 연동 추진

19 / 05 / 2017 agrega tu comentario

SISTEMA ELECTRONICO SIN CONEXIÓN PARA HONDURAS

Guatemala 19 de Mayo 2017.
Hora de publicación: 4:17 p.m.




Exportadores, por este medio se les informa que en este momento el **sistema informático de Honduras** se encuentran sin conexión y podrían verse afectadas las autorizaciones de FAUCAs enviados para dicho país.


El departamento de Informática de la 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SIECA) esta trabajando para solventar el inconveniente




soportetecnico.seadex@agexport.org.gt
vupe.export.com.gt

Director Gerente: Estuardo Arriaga | estuardo.arriaga@agexport.org.gt
Responsable del área: Adony Palacios | adony.palacios@agexport.org.gt







④ 무역원활화 현황

- 과테말라는 VUPE라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수출지원 전자 시스템인 SEADEx를 운영하면서 중미 국가 간 시스템 연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과테말라는 멕시코와 「무역 절차 및 형식의 신속화 (Trade Formalities)」라는 명목 하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절차로, 과테말라 수출업자가 수행한 서류 작업을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시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2017년 멕시코의 수출단일창구인 Ventanilla Unica de Exportaciones 기관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수출단일창구와 이미 전자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시범 교환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시스템 간의 채널을 구축하고 대외 무역 거래를 완전히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⁶⁹⁾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테말라의 정부기관인 농업·축산부와 멕시코의 정부기관인 건강·안전부 양쪽의 합의 서명이 있어야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9) https://en.centralamericadata.com/en/article/home/Guatemala__Mexico_Trade_Formalities_Exped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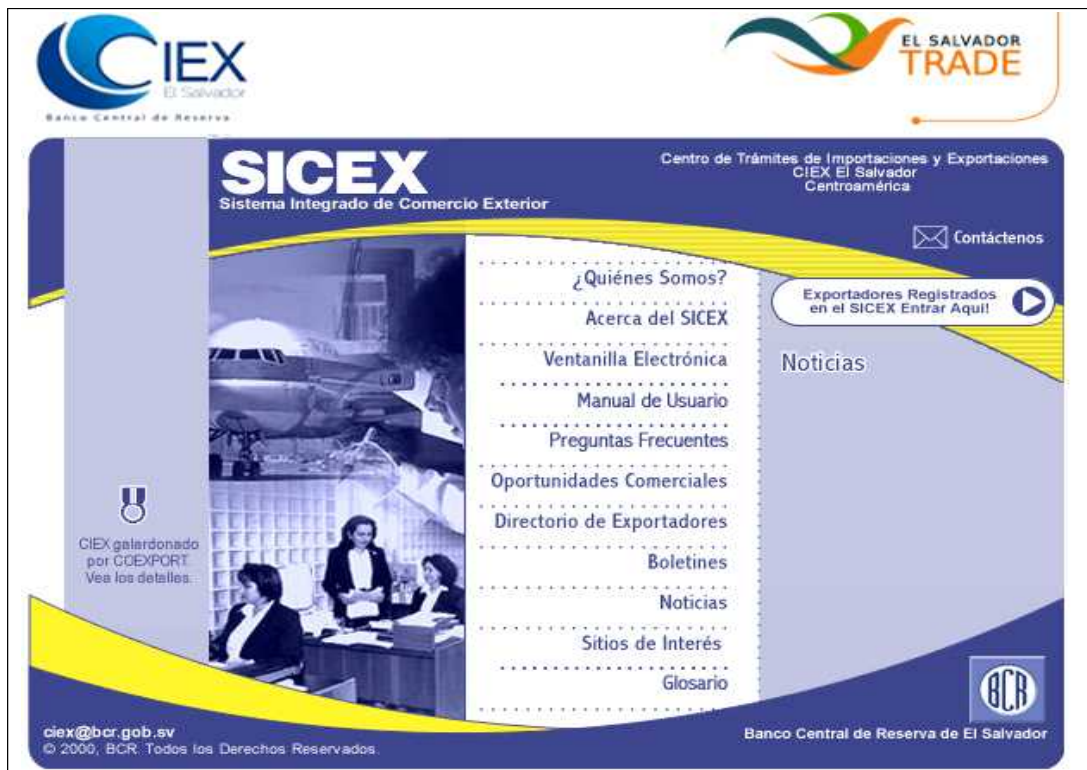
[15] 중미_엘살바도르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엘살바도르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으로 2015년 SIECA의 회원국인 6개국⁷⁰⁾과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6년 11월 한-중미(中米) FTA 타결을 선언한 후 2017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i) 엘살바도르 통합 대외 무역 시스템 (SICEX)

<그림 54>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자료: <https://www.centrex.gob.sv>

70)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 엘살바도르의 통합 대외 무역 시스템(SICEX)은 수출업자, 대외 무역국과 수입 및 수출 지원 센터(CIEX El Salvador)를 연결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 엘살바도르의 수출 기업이 SICEX라는 단일창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출을 위한 각 세관의 서류를 통합하고, 수출 절차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민간 부문 및 국가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 현재 이 SICEX에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위생증명서 등 각종 수출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단,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로그인 ID)가 필요한데 이는 서면으로 신청해서 개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ii) 엘살바도르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KOTRA 엘살바도르

담당자명 : Nydia López de Castillo, CIEX 엘살바도르 수출부서

전화 : (503)2281-8538

이메일 : nydia.castillo@bcr.gob.sv

2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조회 및 발급은 가능하나 발급 하더라도 PDF형식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출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엘살바도르 수출지원센터(CIEX El Salvador)의 수출자 및 당국을 위해서만 .pdf 형식 온라인으로 조회 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수출 작업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이 SICEX에 의해 생성된 10자리 BCR 번호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림 55>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조회 결과

Banco Central de Reserva de El Salvador Centro de Trámites de Exportación		FORMULARIO ADUANERO UNICO CENTROAMERICANO		Página 1 de 1	Total
1. Exportador (Nombre, Dirección, País) EXPORTADOR DE PRUEBA NORMAL ALAMEDA JUAN PABLO IL ENTRE 15 Y 17 AV. NTE. SAN SALVADOR, SAN SALVADOR. EL SALVADOR TEL. 22818090 FAX 22818086					
2. Identificación Tributaria Exp. 00000000000001		3. No. de Factura	4. Registro No.		
5. Código de Exportador 4714		6. Licencia No. 1200026440			
7. Consignatario/Importador/Internador (Nombre, Dirección, País) TOMAS ALFREDO CUTIÉRREZ ENTRE 15 Y 17 CALLE PONIENTE, ZONA 7 NO.24, GUATEMALA		8. Identificación Tributaria 75485-7		9. Tipo de Exportación DEFINITIVA	
10. Modalidad de Pago/Medio de Pago					

<그림 56>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Registrar Solicitud de Exportación

La solicitud de exportación para la operación No. 1200026440 ha sido autorizada por CENTREX.

[>Formulario Aduanero Unico Centroamericano](#)

[>Certificado Fitosanitario](#)

A continuación puede:

1. Guardar esta operación como plantilla especificando el nombre de la plantilla y seleccionando GUARDAR COMO PLANTILLA.

Nombre de la Plantilla : *

* Campos obligatorios.

2. Registrar otra solicitud seleccionando REGISTRAR OTRA SOLICITUD DE EXPORTACION o terminar la sesión seleccionando TERMINAR.

자료: Guia para el uso del SICEX-2 매뉴얼

- 자유 무역 협정 (FTA) 또는 위생 증명서 (Fito 또는 Sanitary Zoo)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원산지결정기준, HS 코드 등을 등록하게 된다.

<그림 57> 엘살바도르 원산지증명서 작성

Registrar Solicitud de Exportación
?
?
SICEX

DATOS ADICIONALES : Seleccione cada producto y especifique el Criterio de Origen. Cuando haya finalizado seleccione Continuar.

No.	Código Arancelario	Descripción del Producto	Cantidad	Criterio para determinar origen	Metodos VCR	Otras instancias
1	09011130	CAFE ORO LAVADO GOURMET	10,000.00	-	-	-

Registrar Certificado Fitosanitario
?
?
SICEX

PASO 1 : Especifique la información requerida para el Certificado Sanitario para esta operación de exportación. Al finalizar seleccione GRABAR CERTIFICADO SANITARIO para registrarla.

Datos Generales

Número de Operación :	129002640	Fecha de Registro :	07/03/2012
Carner del Exportador :	4714	Nit del Exportador :	000000000001
Nombre del Exportador :	EXPORTADOR DE PRUEBA NORMAL	División :	EXPORTADOR DE PRUEBA NORMAL
Nombre del Consignatario :	TOMAS ALFREDO GUTIERREZ	Dirección del Consignatario :	ENTRE 15 Y 17 CALLE PONIENTE, ZONA 7 NO. 24
País de Destino :	GUATEMALA	Aduana de Destino :	VALLE NUEVO
País de Origen :	EL SALVADOR	Aduana de Salida :	LAS CHINAMAS
Medio de Transporte :	TERRESTRE	País de Procedencia :	EL SALVADOR

Detalle de los PRODUCTOS

Código Arancelario	Código Producto	Descripción	Nombre Científico	Cantidad a Exportar	Unidad de Medida
09011130	02001	CAFE ORO LAVADO GOURMET	Coffea arabica L.	10000	KILOGRAMO

Totales

Marca Comercial :	DEL VOLCAN	Número de Bultos :	190
Clases de Bulto :	SACO	Valor FOB :	17000.62 Dls.
Peso Neto :	10000 Kgs.		

Detalle de la información que requiere el Certificado Fitosanit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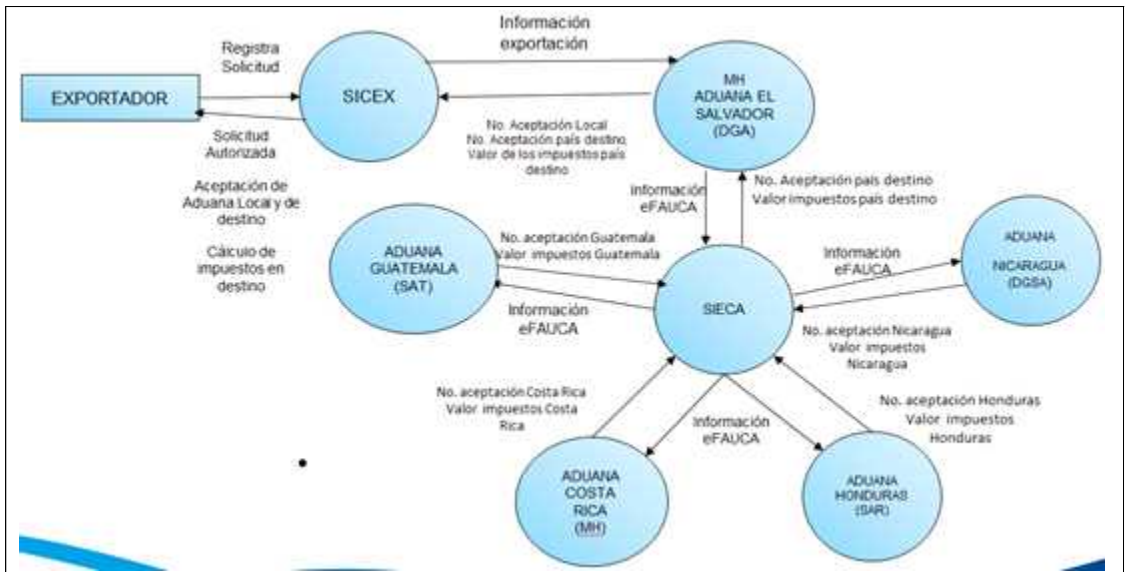
자료: Guia para el uso del SICEX-2 매뉴얼

② 교환현황

- 엘살바도르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는 중미국가들끼리 교환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SIE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 데이터 교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엘살바도르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엘살바도르 세관 중앙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 중에서 원산지 관련 정보는 SIECA로 교환된 전자 데이터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출 정보는 CIEX 엘살바도르의 수출자 및 당국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림 58> 엘살바도르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자료: 엘살바도르 코트라 담당관 자료 회신

3] 향후 발전계획

-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원산지증명서를 타 국가와 전자적으로 교환할 계획도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FTA 협정을 진행할 경우 전자문서도 인증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 수출지원센터(CIEX)는 전자문서를 교환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파트너와 실질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4] 무역원활화 현황

- 엘살바도르는 SICEX라는 시스템을 통해 중미경제통합(SIECA)과 연동중에 있다. SIECA는 중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 설립하였으며, 무역 자유화, 관세동맹 등 중미 국가들 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16] 중남미_콜롬비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콜롬비아 FTA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며,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한 동일한 서식에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특혜 원산지증명서(PCO)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콜롬비아 공식기구는 DIAN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이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각 FTA에서 지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정보 : <http://www.suit.gov.co/VisorSUIT/index.jsf?FI=322>

(i) 세무관세청 : DIAN(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www.dian.gov.co

- DIAN은 콜롬비아의 세무와 관세를 관리하는 콜롬비아의 국가기관이다. 국가의 재정 안정 보장과 국가 경제질서 보호에 기여하고자하며, 대외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관리를 하는 기관이다. 이에는 징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징수, 검사, 청산, 제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ii) 콜롬비아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DIAN 보고타 사무소 세관 관리국
담당자명: Claudia Maria Gaviria Vasquez
전화 : (57 + 1) 6079999 / 이메일 : cgaviriav@dian.gov.co
- DIAN 보고타 사무소 대외무역 관리 부장
담당자명: Inirida Paredes / 이메일: iparedes@dian.gov.co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DIAN에서는 로그인을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로그인을 거친 다음에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59>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로그인 화면

Salida de mercancías	
1- Solicitar embarque	Permite iniciar el proceso de salida de mercancías.
2- Embarcar carga	Permite efectuar los procedimientos para el embarque de la mercancía.
3- Finalizar embarque	Permite realizar los trámites necesarios para finalizar el embarque de una mercancía.
Certificado de Origen	Declaración Juramentada y/o Certificado de Origen
Consulta utilización de documentos VUCE	Consulta utilización de documentos VUCE
Consultar Operaciones	Permite consultar operaciones realizadas en el proceso de Salida
Otros trámites	otros trámites

자료: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c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그림 60>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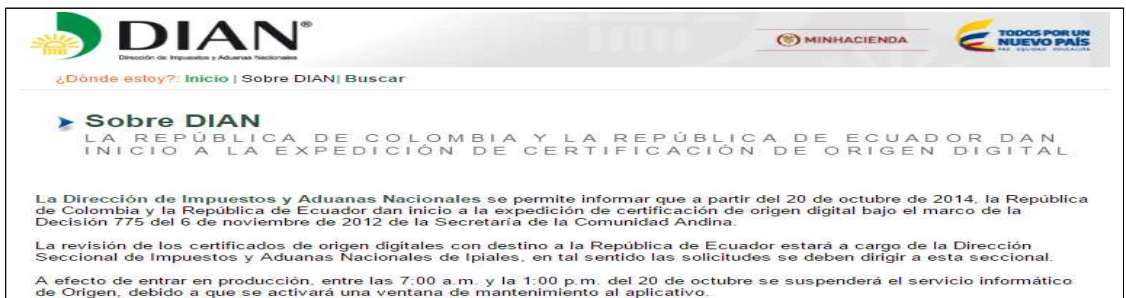
자료: <https://certificadosdeorigen.dian.gov.co/Verifica/indexmex.php>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 콜롬비아(인터넷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매뉴얼 참조)

② 교환현황

○ 실제로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의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디지털로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10월 20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가 사무국을 통해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디지털 발급



자료: <http://www.dian.gov.co/DIAN/12SobreD.nsf/FC22BC5CF1AB7BFA05257030005C2805/4F4AF495A5590AE705257D73006EB652?OpenDocument>

<그림 62> 콜롬비아 DIAN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화면

자료: http://www.dian.gov.co/descargas/DianVirtual/Origen/Manual_Origen.pdf

3 향후 발전계획

- 현재 콜롬비아와 멕시코 간의 원산지 절차 인증을 완화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으며 콜롬비아의 VUCE*와 멕시코의 SIISEX**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VUCE : 콜롬비아의 대외무역 단일 창구로서 정보 교환 및 절차의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통제의 구현 및 촉진을 위해 21개의 주체와 연결된 국가간 교역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 (<http://www.vuce.gov.co>)

**SIISEX : 멕시코의 포괄적 대외무역정보시스템으로서 멕시코의 무역 통계, 이슈, 분쟁해결, 수출 규제 내부 규정 등 무역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http://www.siicex.gob.mx/portaSiicex/>)

4 무역원활화 현황

- 콜롬비아는 VUCE라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역 원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기관 간 조정, 보안, 현대화, 자동화, 프로세스 간소화 및 표준화를 강화함으로써 대외 무역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⁷¹⁾
- VUCE에 등록된 사용자 수는 62,000명이며, VUCE를 통해 거래되는 월평균 서류는 약 30,000개 정도 된다. 대외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에는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콜롬비아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국토 내에서 수행되는 대외 무역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63> 콜롬비아 VUCE 메인 화면



자료: <https://www.sicexchile.cl/porta/web/sicex/inicio>

71) http://www.vuce.gov.co/index!.php?id_menu=2

(17) 중남미_페루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페루 FTA는 협정발효 당시(2011년) 한-페루의 FTA의 원산지증명서 (C/O) 발급은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Certificacion por entidad)과 자율증명 (Autocertificacion) 방식 2개를 병행하였으나 발효 이후 6년차인 '16.08.01 이후부터는 자율증명(Autocertificacion) 방식만으로 원산지증명서⁷²⁾를 발급하고 있다.

<그림 64> 한-페루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한-페루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구분	발효 이후 5년간 ('11.8.1. ~ '16.7.31.)	발효 이후 6년차 ('16. 8.1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협정 부록 4가-1)	-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협정 부록 4가-1)	원산지 증명서(협정 부속서 4나)

- (i) 무역관광부 (El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MINCETUR)

: www.mincetur.gob.pe/

- 페루에서는 특혜 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페루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총 18개가 있으나, 한국관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무역관광부(MINCETUR: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만 해당되었으나 현재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자율발급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해당 기관이 발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 한국 외에 페루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식, 규정 등은

72) <http://www.mincetur.gob.pe/comercio-externior/certificacion-de-origen/>

페루 무역관광부(MINCETUR)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도 word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ii) 페루 담당기관 연락처

- 무역관광부(MINCETUR)

전화 : 513 - 6100 (Central Telefonica)

513 - 6120 (For consultations only on Trade Agreements)

이메일 : cgaviriav@dian.gov.co

-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peru

전화 : 207-1510 / 713-4646

이메일 : vuceayuda@mincetur.gob.pe

- KOTRA 페루(MINCETUR 관련)

담당자 명 : Sheila Vega (Worker on Unit of Origen related to Korea)

전화 : (01) 513-6100 (1060)

이메일 : svega@mincetur.gob.pe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에서는 로그인을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VUCE는 MINCETUR이 관리하는 페루의 대외무역 단일창구이자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외 무역과 관련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부문 대외 무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VUCE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다.

<그림 65> 페루 VUCE 로그인

자료: <https://www.sunat.gob.pe/xssecurity/SignOnVerification.htm>

<그림 66> 페루 VUCE의 원산지증명서 조회 및 작성 화면

VUCE
 Un sólo punto de acceso para sus operaciones de comercio exterior
 SOLICITUDES DE CERTIFICADO DE ORIGEN | BUZÓN ELECTRÓNICO

País: TODOS | Acuerdo/Comercio: TODOS | Fecha desde: | hasta: | Buzón: | Estado: TODOS
 Formato: TODOS | Subcarpetas: | Buzón:

Solicitudes por Asignar | Solicitudes Pendientes de Asignación | **SUCs Aceptadas**

Evaluador: --Seleccionar-- | Asignar

TIPO	FORNITO	NOMBRE	ACUERDO	PAIS	USUARIO	SOLICITO	ESTADO DEL REGISTRO	FECHA DE REGISTRO
<input type="checkbox"/>	10	MCTBI	Exento de Certificado de Origen	ALL Peru-Chile	CHILE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11/02/2013 10:33:17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T.L.C Peru-China	CHINA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18/11/2011 17:21:38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A.C. Petrolera Europea	BOLIVIA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18/08/2013 11:08:54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Comunidad Andina	COLOMBIA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23/06/2013 15:38:33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SOP Unión Europea	ALEMANIA	SABRIZ PLAZA ALEJANDRO CARLOS ANDRES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30/07/2013 18:17:13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SOP Unión Europea	ALEMANIA	SABRIZ PLAZA ALEJANDRO CARLOS ANDRES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18/07/2013 20:49:38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SOP	ARGENTINA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19/02/2013 20:19:46
<input type="checkbox"/>	10	MCTBI	Exento de Certificado de Origen	T.L.C Peru-China	CHINA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24/02/2013 11:18:50
<input type="checkbox"/>	10	MCTBI	Certificado de Declaración Jurada	ALL Peru-Chile	CHILE	FARMINDUSTRIA S.A.	PENDIENTE DE ASIGNAR EVALUADOR	07/06/2013 12:38:57

자료: VUCE 원산지증명서 매뉴얼

② 교환현황

○ 페루는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 상으로 작성 및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국가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지는 않다.

③ 향후 발전계획

○ 페루는 국가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FTA가 체결된 국가(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등)와 각종 증명서/승인서 등에 대한 전자적 교환을 위해 국가 간에 전자적인 연계(페루 VUCE :타국의 전자무역 Single Window)를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KOTRA 무역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⁷³⁾.

73) KOICA (2013) 페루 전자무역 싱글윈도우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4 무역원활화 현황

- 페루는 콜롬비아와 유사하게 VUCE라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외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에는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페루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국토 내에서 수행되는 대외 무역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67> 페루 VUCE의 메인 화면



자료: <https://www.vuce.gob.pe/index.html>

[18] 오세아니아_호주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의 호주와 맺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병행하고 있다. 74).

① (기관발급) 법 제11조제 1항 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자율발급)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및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i) 호주 상공회의소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 <https://www.acci.asn.au/>

○ 호주 상공 회의소는 일반적인 통상 업무 및 호주-뉴질랜드의 합동 인증제도 (JAS-ANZ)에 따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호주의 사업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ISO17020 표준에 근거하고, 발행의 역할은 각 주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위임하고 있다.

○ 호주 상공회의소는 1898년 마르세유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최초의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개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23년 협약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국제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국제 지침, 세계 무역 관련 서류 표준의 일관성을 해당 증명서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있다.

74)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9호 및 제8조제6항

○ 호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특혜 원산지증명서⁷⁵⁾ 발급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 Solutions (NSW)

○ 원산지 증명서는 호주 관세청 및 외교 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기관이 발행해야한다.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and Solutions는 호주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호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호주 세관 서비스 및 외교 통상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림 68> 호주 비즈니스 컨설팅 및 솔루션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 Solutions. The main heading is 'Export documentation'. Below it, there is a paragraph explaining that certified export documentation is required by many countries and is essential for smooth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Two call-to-action buttons are present: 'CertConnect' (Access CertConnect Now, Register for CertConnect) and 'eCertify' (Access eCertify now).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arious export document types such as Certificates of Origin, Certified Declaration of Origin, and TAFETA Export Registration. A 'Contact Us' section on the right provides the phone number 1800 505 529 and a 'Submit Enquiry' link.

자료: <http://www.australianbusiness.com.au>

75)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TFTA), 서남아시아FTA (SAFTA), 한국-호주FTA (KAFTA), 호주-미국 FTA (AUSFTA), 호주-일본 경제동반자협정 (JAEP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중국0호주 자유무역협정 (CHAFTA)

□ Business SA (South Australia)

-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호주 남부의 문서 인증은 호주 남부의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 Inc (비즈니스 SA로 거래) 이름으로 수행된다. 인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출업체를 Business SA에 등록해야 한다.
- 호주 상공회의소 (ACCI)는 호주 정부로부터 호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권한이 있는데, Business SA는 남호주의 원산지 증명 서류를 발급하도록 ACCI의 승인을 받았다.
- Business SA는 호주 남부에서 유일한 권한을 가진 상공 회의소다. 호주 원산지 증명서 발행에 앞서 호주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 된 물품은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호주 원산지 증명서 사본은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하며, 호주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회사는 승인을 위해서 해당 양식 견본을 제출해야한다. 앞면과 뒷면의 문구는 공식 형식과 동일해야한다.

<그림 69> 호주 남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Business SA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How We Can Help", "Membership", "Training & Events", "Advocacy", and "About Us". The main heading is "Export Documentation". Below the heading, there is a sub-head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CO) Is A Document To Certify The Place Of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Goods." The text explains that this certificate is required when exporting to specific countries, when requested by the consignee for customs clearance, or when it's stipulated in a letter of credit. It also states that 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is authorized to issue Certificates of Australian Origi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Business SA is in turn authorized by ACCI to issue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in South Australia. Business SA is the only South Australian-based Chamber with authority to issue Certificates of Australian Origin. The Chamber also issues documents such as Certificates of Free Sale and Certificates of Manufacturing, as well as providing certification services for other documents such as commercial invoices, packing lists and visa letters. There are three links provided: "Read more information on Certificate of Origin documentation.", "Registration form", and "Exporters must be registered with Business SA before documents can be lodged for certification. Please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s below and email to trade@business-sa.com". The bottom of the page lists three links: "Business SA Exporter Registraton Form - Page 1", "Business SA Exporter Registration Form - Page 2", and "Business SA Exporter Registration From - List of authorised signatories".

자료: <https://business-sa.com/>

○ 이외에도 지역별 상공회의소를 통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림 70> 퀸즈랜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CCIQ website with a navigation menu including Membership, International Trade, Services, News, Business Voice, Events, and Abou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Export Documents' and lists 'Certified Declaration of Origin', 'AANZ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ChAFTA Certificate of Origin'.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titled 'What are the different types 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 which lists six types: 1. Thailand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TAFTA), 2.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AANZFTA)- First Protocol, 3. Australia- 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AFTA), 4. ACCI Australia-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 (KAFTA), 5. ACCI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 (JAEP), 6. ACCI China-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hAFTA). It also includes steps on how to obtain a Certificate of Origin, such as completing the Exporter Information C04 Form and submitting it via eCertify, CertConnect, or email.

자료: www.cciq.com.au

<그림 71> 호주 서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A website with a navigation menu including Membership, Our Services, Advocacy, Events & Training, and About 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ertificates of Origin' an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ort worker. Below the image, there is a section titled 'Preferential Certificates of Origin' which includes a 'Please note:' section with two bullet points: 1. The Thailand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AFTA) specifies that a TAFTA Certificate of Origin is required to claim preferential treatment for exports to Thailand. 2. The ASEAN 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specifies that an AANZFTA Certificate of Origin is required to claim preferential treatment for exports to the ASEAN member states (Brunei, Burma,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It also includes a section titled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which states that they issue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using OzDocs Pty Ltd's CertConnect software and Trident Global Pty Ltd's eCertify software.

자료: www.cciwa.com

(ii) 호주 산업협회 (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 <https://www.aigroup.com.au/>

- 호주 산업협회는 호주가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재지는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워딩가로 총 4곳에 있다.

<그림 72> 호주 산업협회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AIG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AIG logo, a phone number (1300 55 66 77),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banner image of three business professional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idebar with a menu where 'Certificate of Origin and Assistance in Accessing Free Trade Agreements' is selected. The main text area contains the title of the page and introductory text about the benefits of 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services provided by AIG. A sidebar on the right offers an 'FTA Guide' download link.

자료: <https://www.aigroup.com.au/business-services/trade/certificateoforigin/>

(iii) 호주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호주 상공회의소

담당자명 :Bryan Clark

전화: Tel: 02 6273 2311

이메일 : bryan.clark@acci.asn.au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and Solutions은 호주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호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호주 세관 및 외교 통상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수출 서류는 두 가지 전자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다.

□ CertConnect-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 Solutions (NSW)

- 호주 상공회의소 (ACCI) 호주 Business Chamber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이메일 형식 발급 및 전자적 제출의 진행을 지원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CertConnect는 온라인 인증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서류를 인증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73> 호주 Business Chamber PCO 신청 및 조회사이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Australian Business Chamber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left is the logo, a blue star with the text 'Australian Business Chamber'. To the right of the logo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Home | About us | Media | Payments | Contact us'. Below the logo is a vertical sidebar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 Products', '> Events', '> Training' (with a 'View cart' icon), '> Business Directory', and '> Media Centre'.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horizontal navigation bar with six categories: 'Business Compliance', 'Business Safety', 'Business Skills', 'Business Results', 'Business Globally', and 'Business Representation'. Below this bar, the breadcrumb path reads 'Location: Home >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Login In'. The central focus is a login form titled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Login'. This form contains two input fields: 'User ID:' and 'Password:'. Below these fields is a blue 'Login' butto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link for 'New User - Registration Form'.

자료: <http://ww2.tradestylus.com.au/nswbc/>

- CertConnect는 몇 분이내로 인증서 및 문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전자적 인증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및 상품설명을 기입한 신고서를 CCIQ International Trade Service에 이메일 (exportdocs@cciq.com.au)로 전송한다. 등록이 접수 되고 승인 후에, CCIQ는 수출업체에 호주-태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송한다. 업체는 해당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기입한 후 이메일(exportdocs@cciq.com.au)을 통한 제출 혹은 eCertify, CertConnect를 통해 전자적제출도 가능하다. 종이양식의 특혜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수입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림 74> AANZFTA PCO 조회 사이트



자료: <http://ww2.tradestylus.com.au/cciq/>

□ eCertify (호주)

- Australian Business Chamber는 eCertify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수출업체 및 화물 운송업체들에 온라인 시스템 제공을 통해 PC로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 서류를 처리하는 세 가지 전자시스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점으로는 문서의 간편한 온라인 작성,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75> 호주 PCO 신청 시스템 eCertify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eCertify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containing links for 'Why eCertify', 'How to eCertify', 'News', 'Registration/Login', 'About', 'Contact Us', and 'Request Demo'.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three main sections for submission methods:

- eCert WebDocs:** Use your Chamber website to create and receive your Certificates online.
- eCert Direct:** Use your Vendor Software to send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 eCert Submit:** Send complete or editable PDF versions of your certificates online.

Arrows from these three sections point down to a central box for **eCert Chamber**, which states: "eCert Chamber receives the certificate from the submitter to stamp, sign and return." To the right of this diagram, there is a testimonial from a user:

“ Using eCertify has put my exporting process into fast gear. Much of the export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required for our shipments is solely my responsibility, so anything to simplify the process is beyond valuable... There's no double that our customers appreciate the quick turnaround. Thank you for providing such a great service!

Below the testimonial, there is a 'Register Now' button. To the right of the diagram, there is a text box that says: "Exporters cut costs and increase profits by using eCertify". Below this, it lists the benefits of saying 'good-bye' to paper processing of Certificates of Origin include:

- Saves money - no more couriers
- Save time - desktop to desktop
- FAST!

At the bottom of the screenshot, there is a section titled "There are three options to submit your export documents to the Chamber" with three icons and descriptions:

- eCert WebDocs:** Use your Chamber website to create and receive your Certificates online.
- eCert Direct:** Use your Vendor Software to send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 eCert Submit:** Send complete or editable PDF versions of your certificates online.

Below this, there is another text box: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ertificates of Origin".

자료: <https://www.ecertify.com/>

- eCert Webdocs 방법을 사용하여 eCertify 온라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원산지 증명서 및 관련 수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수집한다. eCert 방법을 사용하면 eCertify를 사용하여 PDF 형식으로 내보내기 문서를 업로드, 제출 및 수집 할 수 있다.

- eCert Direct는 공인된 eCertify 수출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제출 및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점으로는 문서의 간편한 온라인 작성 및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② 교환현황

- AANZ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eCertify, CertConnect를 통한 제출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 교환이 이루어진바 없다.

③ 향후 발전계획

- 호주 상공회의소는 현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에 적용될 자동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호주는 2004년 해사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정부가 승인하였으며, 호주의 정부기관이 통관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의 무역 서류 데이터 교환 표준화형식을 제안하였다.

(19) 오세아니아_뉴질랜드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한-뉴질랜드 FTA는 자율증명 방식⁷⁶⁾으로 증명의 주체는 수출자 및 생산자이고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증명서식은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하며 자율(표준)서식이고 원산지증명서는 1회사용 원칙이나 12월 이내 포괄증명이 가능하다.
- 한편, 뉴질랜드 - 중국 자유 무역 협정 (NZCFTA)과 ASEAN - 호주 - 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AANZ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뉴질랜드와 중국 간에는 증명서의 교환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Export NZ

<그림 76> 뉴질랜드 Export NZ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EMA website's 'Certificates of Origin' page. The header includes the EMA logo and navigation links like 'Resources', 'News and Media', 'Training and Events', 'Our Services', and 'About 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ertificates of Origin' and explains that any business can apply for a COO to prove goods are made in New Zealand. It features logos for IVS (Independent Verification Services) and EXPORT NEW ZEALAND. A note mentions that products going to China from New Zealand via a third country need a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Pricing is listed as \$25.00 plus GST for Free Trade Agreement COOs and \$15.00 plus GST for Non-Free Trade Agreement COOs. The page concludes with the URL <https://www.ema.co.nz/services/rewards/Pages/Certificates-of-Origin.aspx>.

자료: <https://www.ema.co.nz/services/rewards/Pages/Certificates-of-Origin.aspx>

76) 시행규칙 제3장제7조제2항제11호

<그림 77> 뉴질랜드 NZCFTA 화면

IVS Training Services About Us Shop Contact

NZ / China Free Trade Agreement (CFTA)

Do my goods qualify for a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NZ/China Free Trade Agreement (CFTA)?

The following flowchart is designed to assist you to determine whether your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e New Zealand/China Free Trade Agreement. Originating goods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reductions as per the schedule of tariffs on <http://chinafta.govt.nz> and faster clearance through Chinese Customs (*within 48hrs for most goods*).

By following the flowchart you will be guided to whether your good qualifies for a Certificate of Origin or not. There are three criteria for a good to qualify:

- Wholly Obtained (WO)
- Wholly Produced (WP)
- Product Specific Rules (PSR)

Product may still be sent to China without a Certificate of Origin but will not qualify for any relevant reductions in tariffs or faster processing times through Chinese Customs.

Click the link below to see if your goods qualify for a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NZ/China Free Trade Agreement.
[IVS Goods Registration for China NZ Flowchart_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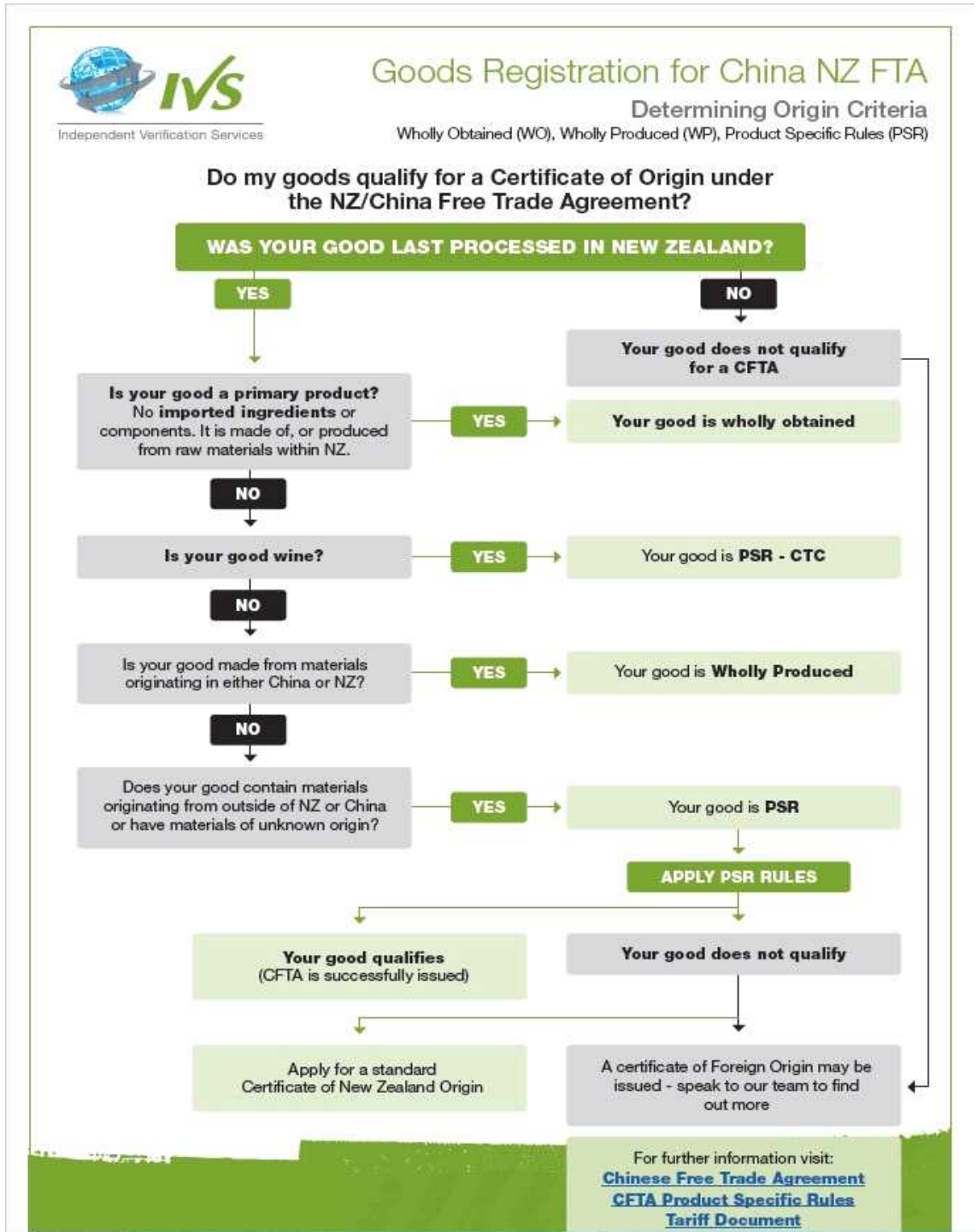
Get in touch

To discuss your requirements in more detail, please contact us on 0800 021 169 or email certifynz@certifynz.co.nz

자료 : <https://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determining-origin-questionnaire-cfta>

- 해당 사이트에서는 원산지증명에 따른 NZC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Flowchart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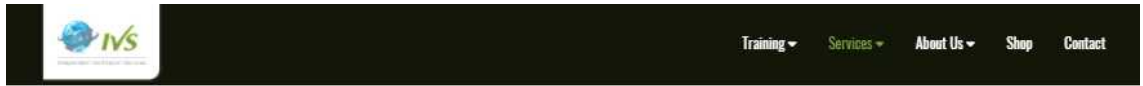
<그림 78> 뉴질랜드 NZC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자료: <https://www.ivslimited.co.nz>

②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

<그림 79> AANZFTA 화면



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Do my goods qualify for a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ASEAN (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e following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assist you to determine whether your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e AANZFTA Agreement. Originating goods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reductions as per the schedule of tariffs on <http://asean.fta.govt.nz/tariff-finder> or <http://asean.fta.govt.nz/annex-5-schedules-of-goods-tariffs/>

*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ASEAN member countries include: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Agreement yet to be implemented in these countries **				

By following the questionnaire you will be guided to whether your good qualifies for a Certificate of Origin or not. There are five criteria for a good to qualify:

- Wholly Obtained (WO)
- Produced Entirely (PE)
- Product Specific Rule (PSR)
- Regional Value Content (RVC)
- Change to Heading (CTH)

Product may still be sent to an AANZFTA member country without a Certificate of Origin but will not qualify for any relevant reductions in tariff.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instructional or other informational materials are excluded from determining origin provided they not invoiced separately and their total value is customary to the good and the good is not subject to an RVC rule.

Packaging material for retail sale should be accounted for only if an RVC rule applies to the good.

When determining origin there is no need to take account of indirect materials as per Article 1 part h of the AANZFTA agreement.

[Click here to see if your goods qualify for a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ASEAN-Australian-NZ Free Trade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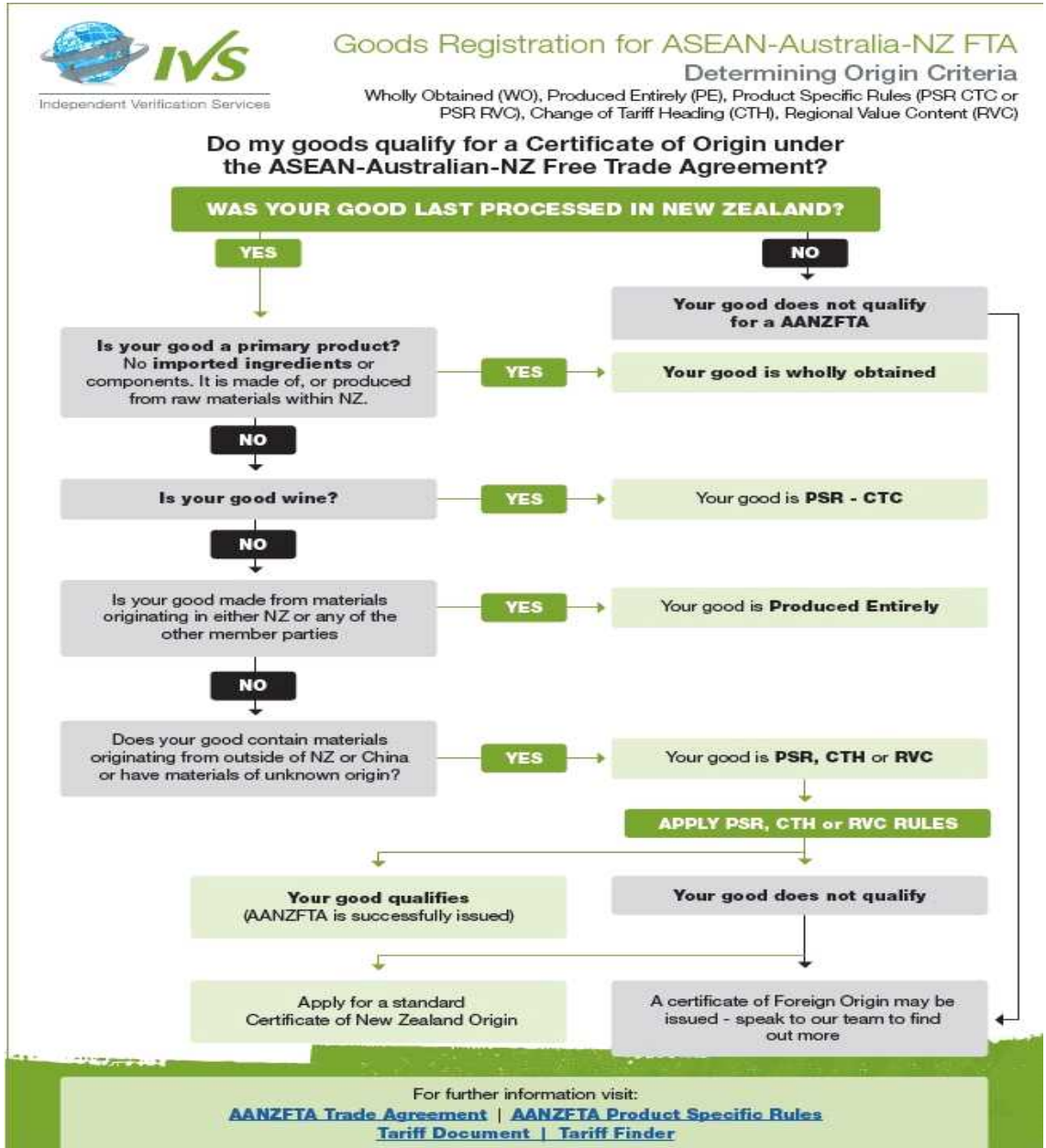
Get in touch

To discuss your requirements in more detail, please contact us on 0800 021 169 or email certifynz@certifynz.co.nz

자료: <https://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determining-origin-questionnaire-aanzfta>

- 해당 사이트에서는 원산지증명에 따른 AANZ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Flowchart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림 80> 뉴질랜드 AANZ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ii) 상공회의소

- 뉴질랜드 전역에는 7개 상공 회의소가 있으며, 이들 각각은 뉴질랜드 · 중국 FTA 및 AANZ FTA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할 권한이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eCertify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① 오클랜드 지역 상공 회의소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 타우 랑아 상공 회의소와 와이 카토 상공 회의소가 커버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북섬 상반부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책임이 있다. (전화:09 309 6100 웹사이트: www.aucklandchamber.co.nz)

<그림 81> 오클랜드 지역 상공 회의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Export Document Certification'.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Member Login, Why Join, Business Support, Business Connect, Events & Training, Global, About Us, and Contact Us. The main heading is 'Export Document Certification'. On the left, a sidebar titled 'IN THIS SECTION' lists various services like Member Login, Why Join, Business Support, Business Connect, Events & Training, Global, Import & Export Services, International Trade Enquiries and Delegations, Services for Visiting Delegations, Export Markets Information, Export Document Certification, Certificate of Origin Guide notes, Global Trade Resources, Business Councils, Global News, About Us, and Contact U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The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makes document certification fast and simple.' with sub-sections for 'ONLINE CERTIFICATION' and 'CHINA NZ AND AANZ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S OF ORIGIN'. A 'NEED HELP?' section with an 'ANSWERS HERE' button is also present.

자료 : <https://www.aucklandchamber.co.nz/global/export-document-certification/>

② 와이 카토 상공 회의소 (Waikato Chambers of Commerce)



- 북서쪽의 포트 와이 카토에서 남서부의 아와키노까지, 두 랑기를 거쳐 카이 이스의 서쪽을 북쪽 동쪽의 코로만 델 반도의 꼭대기까지 위치하는 사업 체의 FTA 인증⁷⁷⁾을 담당한다.

(전화: 09 375 3925 웹 사이트: www.waikatochamber.co.nz)

③ 타우 랑아 상공 회의소



- Kaimai Ranges의 동쪽, Waihi의 북쪽, South의 Whakatane에 위치한 사업 체에 대한 원산지 FTA 증명서 발급⁷⁸⁾을 담당한다.

(전화: 07 577 9823 웹 사이트: www.tauranga.org.nz)

④ 웰링턴 상공 회의소 (Wellington Chamber of Commerce)



- 호크스 베이 상공 회의소 (Hawkes Bay Chamber of Commerce)가 보장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섬 하반부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⁷⁹⁾ 할 책임이 있다.

(전화: 04 473 7224 웹 사이트: www.wecc.org.nz)

77) <http://www.waikatochamber.co.nz/Exporting/Free-Trade-Agreements1>

78) <http://www.tauranga.org.nz/business-services-2/document-and-certification-services/export-documents/>

79) <https://www.wecc.org.nz/services-and-resources/international-support/certificates-of-origin>

⑤ 호크스 베이 상공 회의소 (Hawkes Bay Chamber of Commerce)



- 네이피어 및 헤이스팅스에서 남부의 Dannevirke, SH2는 북쪽의 Wairoa, SH5는 서쪽의 Tarawera에 위치한 사업체의 FTA 인증⁸⁰⁾을 담당한다.
(전화 06 876 5938 FTA 문서 09 375 3925 웹 사이트: www.hawkesbaychamber.co.nz)

⑥ 캔터베리 고용주 상공 회의소(Canterbury Employers' Chamber of Commerce)



- 남섬 정상에서 서해안뿐만 아니라 남쪽의 와이 타키 강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한다⁸¹⁾.
(전화: 03 366 5096 웹 사이트: www.cecc.org.nz)

⑦ 오타고 상공 회의소 (Otago Chamber of Commerce)



- 북섬의 오아 마루 (Oamaru)와 남섬의 바닥 사이에 위치한 사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전화: 03 479 0181 웹 사이트: www.otagochamber.co.nz)

80) <https://www.hawkesbaychamber.co.nz/global/export-document-certification/>

81) <http://www.cecc.org.nz/about/industry-sectors/export-manufacturing/export-documentation/>

㉔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i) EXPORT NZ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82> EXPORT NZ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Certify NZ'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left is the 'EXPORT NEW ZEALAND' logo, a division of BusinessNZ. At the top right is the 'IVS' logo for Independent Verification Services. A blue navigation bar contains 'CERTIFICATE OF ORIGIN', 'About IVS', and 'Contact Us'. The main heading is 'Certify NZ' with a sub-heading 'Welcome to IVS Certificate of Origin Services'. Below this are two main sections: 'REGISTER WITH IVS' and 'LOGIN'. The 'REGISTER WITH IVS' section includes a 'Not Registered?' prompt, a text field for contact details, and a 'Sign Up Now' button. The 'LOGIN' section includes fields for 'Email *' and 'Password *', and a 'Submit' button. A link for 'I have forgotten my password' is located below the login fields. The footer contains the EMA logo, 'Terms of Use | Disclaimer | Designed and developed by Interspeed Ltd', and the 'NEW ZEALAND 2011' logo with the tagline 'Proud to be a part of:'.

자료: <https://exporthnz.certifynz.co.nz/login>

-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비스는 뉴질랜드 관세청과 IVS (Independent Verification Services Ltd)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IVS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 서비스는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용가능하며 빠른 처리속도⁸²⁾와 작성의 편의성⁸³⁾ 그리고 높은 보안성 등의 강점을 가진다.

82) 사전 승인된 제품의 경우 30분 이내 승인

83) 제품 및 수취인을 저장기능, 인증서 추적기능

<그림 83>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Certificate of Origin

IVS has worked hard to develop a superior Certificate of Origin service: we tick all the boxes and offer a quick turnaround time for export documents, including after hours and on the weekend!

Benefits of using the IVS Certificate of Origin Service

Independent Verification Services has worked hard to develop a superior Certificate of Origin service. We are duly authorised by NZ Customs to certify Certificates of Origin to the following trade agreements: NZ-China and ASEAN/Australia/NZ FTA and we do it faster and better than the competition.

- We are always here - IVS offer a quick turnaround time for export documents **including after hours and on the weekend - we don't go to sleep!**
- We know what we are talking about - we have a team of experts with in depth specialized knowledge, so if you are not sure of anything, we are just a phone call away. Test us out - ask us a question, whether it's about international freight or biosecurity export certification.
- Our Online system makes submitting certificates hassle free. It save products and consignees, it tracks and traces your certs, whilst offering layers of security to ensure the integrity and protection of your data.

The beauty of gett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right, is that once it is saved in the system, all the hard work is done. But don't just take our word for it, Jason McFadden (*Branch Manager - Mainfreight Christchurch*), says:

“ IVS Certification Services are an integral part our our airfreight business. Live products requiring CFTA certification 7 days a week and after hours are no problem for the professional, friendly and helpful IVS team.

Ready to start submitting your certificates?

Register

Already a user of the IVS Certify Website?

Login

Steps for requesting a Certificate of Origi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ield Explanations

Determining Origin Questionnaire CFTA

Determining Origin Questionnaire AANZFTA

Determining Origin Questionnaire Non FTA

IVS Goods Registration for China NZ
Flowchart_web

IVS Goods Registration for ASEAN
Flowchart_web

자료: <https://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

-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의 세부 정보를 등록하고 기본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등록 절차 진행시에는 입력한 세부사항⁸⁴⁾이 정확 한지를 email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승인 된 서명자에게 자동으로 사용자이름과 암호가 전송되어 IVS Certify 웹 사이트에 액세스 할 수 있게 된다.

84) 서명 및 서명된 세부정보

- 또한 IVS에 등록되면 기본 연락처에서 로그인 할 때 회사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편집할 수 있다.
- 각 상품과 관련된 정보⁸⁵⁾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이러한 세부 정보는 회사 프로필에 저장되며 향후 인증서를 요청할 때 해당 제품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상품이 입력되거나 수정 될 경우 IVS 시스템은 해당 상품을 ‘승인되지 않음’으로 식별하게 된다.

<그림 84>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My Goods

To qualify for a Certificate of Origin, you first need to determine which criteria your good originates under: Wholly Obtained (WO), Wholly Produced (WP), or Product Specific Rules (PSR). Please [view our questionnaire](#) for help to determine this.

Once the origin criteria has been determined, you can either enter your good directly by clicking 'Add Good' or you can go straight to [My Certificates](#) and add goods when applying for your Certificate of Origin. Goods entered when creating a certificate will also be transferred onto this list. [More info](#)

[Add Good](#)

Name	Description	Your Identifier	Crit	HS Code	App	Actions
Banana	Green Banana		WO	123456	X	

< Previous | 1 | Next >

- ‘승인되지 않은’상품이 인증서에 추가되면 IVS의 검증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처리되고 인증서의 ‘승인되지 않은’상품 상태가 ‘승인 됨’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회사 프로필에 저장된 상품 목록도 업데이트된다.
- 제품의 구성요소나 부품 등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며, 제품의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각 물질의 생산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85) 각 상품에 대해 HS 코드의 처음 6 자리와 상품의 Harmonized System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세관 중개인이 제공합니다.

포함시켜야한다. RVC 계산을 위해서는 비 원산지 재료에 대한 CIF 값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85> IVS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Name	Producer	CIF Value (NZD)	Delete
Apples	Granny Smith		⊘
Grapes	Amy's Vineyard		⊘
Sugar	Chelsea Sugar		⊘
Strawberries	Mixed Berry Company		⊘
Kiwi	Kiwi Fruit Ltd		⊘

○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용 받고자하는 FTA를 확인한 후, ‘내 인 증서’ 로 이동 한 다음 ‘새 인증서 신청’을 선택하고 요구되는 정보⁸⁶⁾를 입력한다.

- 이 과정에서 COO 및 인증서 필드 설명의 샘플 템플릿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신청할 때 수취인 목록, 생산자 및 회사 프로필 아래에 이미 입력된 상품 중에서 선택하거나 인증서 신청 중에 상품의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 이전에 승인된 인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직원이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인증서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에게 email이 발송된다. 그런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인증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내 인증서’에는 적용된 모든 인증서 목록과 해당 상태가 표시되고, 각 인증서에는 ‘인증서 번호’라는 식별 번호가 부여된다.
 -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되고 승인되면 인증서가 PDF로 첨부되어 email로 통지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지만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인증서의 인쇄본을 인쇄할 수 있다.
- (ii)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된 PCO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86>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

86) 생산자의 세부 사항, 수취인의 세부 정보, 운송 세부 정보, 수출되는 물품의 세부 사항

○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87>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사용법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Company/Create>

- 1 단계: 새로운 회사 등록 - Chamber Docs에 회사 등록
- 2 단계: 공인 서명자 등록 - 인증서를 신청할 직원 등록 및 승인
- 3 단계: 상품 등록 - 상품 선호도 및 등록 자격 확인
- 4 단계: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초안, 저장, 편집, 제출

○ 위의 등록절차는 다음의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기능의 이용 및 확인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림 88>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 사이트 등록

Register Company

Please enter your details below to register with Chamber Docs.

CHAMBER OF COMMERCE

From the list below please select the Chamber of Commerce that is authorised to certify FTA Certificates of Origin for companies in your region or region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ntact page](#).

Auckland

ABOUT YOUR COMPANY

Company Legal Trading Name

PHYSICAL ADDRESS

Address

Suburb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Company/Create>

- 또한 모든 기능의 이용 및 확인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별 지역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데 공통적으로 다음의 양식을 사용한다.

<그림 89> 뉴질랜드 지역별 상공회의소 사용자 등록

To Register complete the following details

Welcome to the eCertify Registration page for Auckland Regional Chamber of Commerce!

Once you have completed the form and clicked the green button at the bottom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asking you to confirm your email address.

When your registration request has been processed, you will then receive an Approval email which will contain the link for you to Log in and start using the program.

Fields marked with * are mandatory

Select Language

Select Language: English ▼

Company Details

Register my company

Company Name: *

Country: Choose a Country... ▼ *

Building / Suite: /

Street Address: *

City: *

State: ▼ *

ZIP / Postal code: *

Company Phone: *

Company Fax:

Company Email: *

Company Description:

Timezone: Choose a Timezone... ▼ *

I am an Exporter

I am a Freight Forwarder / Agent

Create My Log In Details

Personal Email *

Confirm Email: *

Password *

Confirm Password: *

Security Question Choose a question... ▼ *

Answer: *

My Details

Title: Choose... ▼ *

First Name: *

Last Name: *

Position: *

Phone: *

Submission Method

Submission Method eCert WebDocs ▼ *

Terms and Conditions [Printable Version](#)

Auckland Regional Chamber of Commerce -Terms and Conditions

I/we the registrant being a duly authorized officer of the applicant organ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mber or issuing body from time to time granting or certifying Certificates of Origin or other documents. I/we hereby agree to accept and be bound by any laws and regulations that apply to the Certificate of Origin being applied for and any terms that the chamber or the New Zealand Chamber of Commerce has in place in relation to the issuing of Certificates of Origin from time to time.

By clicking on 'I accept' below you are agreeing to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I accept. Register me.

자료: <https://webdocs.ecertify.com/Registration.aspx?companycode=CECC&AspxAutoDetectCookieSupport=1>

② 교환현황

- 현재 NZCFTA COO와 AANZFTA COO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만 생성되며 뉴질랜드 세관에 의해서 유효성이 검증된 xml 데이터 파일만이 인정된다. 만약,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뉴질랜드 세관 당국의 포털을 통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사기로 간주된다. 뉴질랜드 상공회의소는 현재 뉴질랜드와 중국 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 개정된 규칙⁸⁷⁾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수출업체는 해당 수출품목의 중국수출 신청 시 NZCFTA COO 번호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2016년 12월 20일부터 NZCFTA COO의 데이터 내용이 중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해당일 부터 원산지증명서 데이터가 관세청에 반입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련 원산지 증명서의 데이터가 없음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 신규 수입 절차가 중국의 수입자에게도 적용⁸⁸⁾중이다.

<그림 90> NZCFTA 뉴질랜드 세관 수출 규칙

The screenshot shows the ChamberDoc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left is the 'ChamberDocs' logo, and at the top right are 'REGISTER' and 'LOGIN' button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New Zealand China Free Trade Agreement NZCFTA'. Under the heading 'RESOURCES:', there are links for 'NZ Customs Fact Sheets', including 'NZ Customs Fact Sheet 37: NZCFTA Importing into New Zealand from China' and 'NZ Customs Fact Sheet 38: NZCFTA Exports to China from New Zealand'. Under the heading 'NZCFTA Texts:', there are links for 'Full text of the NZ China Free Trade Agreement', 'Go to 'Chapter 4' for the 'Rules of Origin and Operational Procedures'. This section explains how goods qualify as being of New Zealand Origin.', and ''Annex 5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Schedule of Product Specific Rules applicable for exports to China to qualify for preference under the New Zealand China Free Trade Agreement.'. Below these are links for 'Decree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175:', 'Full text of Decree 175: This document sets ou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China for goods imported from New Zealand under NZCFTA. Detail is provided regarding the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by China Customs at the time of import.', and 'Certificates of Non-Manipulation (CNM) Requirement'. The final paragraph states: 'Under Article 25 of the NZCFTA and Article 14 of Decree 175 goods are required to be on a 'direct consignment' between the parties. China Customs have required Certificates of Non-Manipulation for consignments trans-shipped via intermediary countries.'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Home/NzChinaFTAInfo>

87) 자세한 정보 : 뉴질랜드 세관 수출 규칙 변경 1997

88) 중국관세청 공고, GACC Announcement No.84, 2016

③ 향후 발전계획

- 뉴질랜드 상공회의소는 현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에 적용될 자동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림 91> AANZFTA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ChamberDocs

REGISTER LOGIN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Countries party to AANZFTA:

- Australia
- Brunei Darussalam
- Cambodia
- Indonesia
- Lao PDR
- Malaysia
- Myanmar
- New Zealand
- Philippines
- Singapore
- Thailand
- Vietnam

RESOURCES:

NZ Customs Fact Sheet:

[NZ Customs Fact Sheet 42: AANZFTA Importing into New Zealand](#)

[NZ Customs Fact Sheet 43: AANZFTA Exporting from New Zealand](#)

AANZFTA Texts:

자료: <https://www.chamberdocs.co.nz/Home/AANZFTAInfo>

4) 무역원활화 현황

- 뉴질랜드의 무역 단일창구(TWS: Trade Single Window)는 뉴질랜드 세관과 산업부의 공동사업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업자, 수출업자, 화물 운송업자, 해운업자, 대리인 등 여러 무역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화물정보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해당 사이트주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92> 뉴질랜드 무역 단일 창구



자료: <https://www.tsw.govt.nz/prod/external/application/login/app.html>

- 현재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 화물업자, 관리자 등 각각에 적용되는 TSW 온라인 가이드⁸⁹⁾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89) <http://www.customs.govt.nz/features/jointbordermanagement/Pages/tsw-online-guides.aspx>
2017년 4월에 개정된 온라인 TSW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공 중

[20] 중남미_에콰도르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과 에콰도르는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상을 진행 중⁹⁰⁾이다.
- 에콰도르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은 산업자원부(MIPRO, Ministerio de Industrias y Productividad)⁹¹⁾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 정보를 에콰도르의 국가 세관 서비스(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 del Ecuador)인 Ecuapass System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2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등록된 수출자의 경우 Ecuapass 시스템을 통해 PCO의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93> 에콰도르 Ecuapass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자료: <https://portal.aduana.gob.ec/>

90) 2016년 11월 키토(에콰도르의 수도)에서 5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91) <http://www.industrias.gob.ec/>

② 교환현황

- 현재 에콰도르는 칠레와 2014년 6월부터 전자원산지정보의 교환을 시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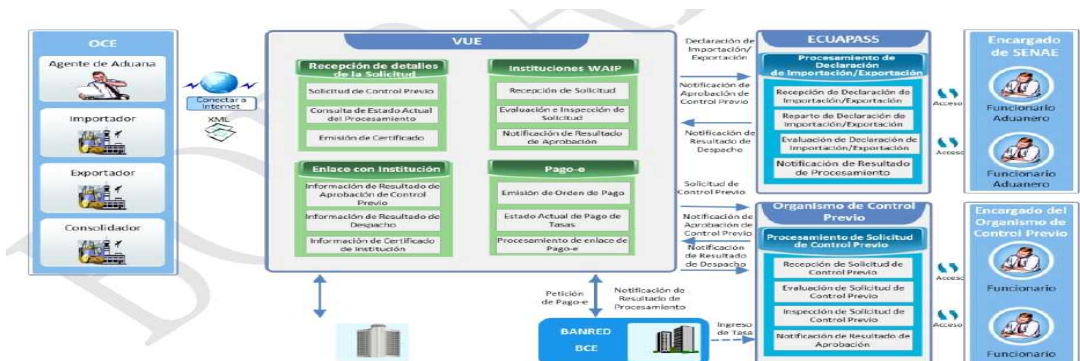
③ 무역원활화 현황

- 에콰도르 정부는 대외무역단일창구(VUE) 시스템을 통해 관세 서비스 이용자와 대외 무역 관련 사용자가 단일 창(Single Window)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신청서 세부 사항 접수 : 신청자가 각 단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승인 및 인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승인 주체에 의한 절차의 처리 : 신청서의 접수, 검토, 평가 및 승인 또는 거절
- » 관련 기관과의 링크 : 기업의 데이터, 이전 승인 결과 관리
- » 요금 지불 (Payment-e) : 인쇄율, 예상 금리 (MEER-SCAN, CCFFAA 및 INPC에만 해당)
- » ECUAPASS와의 연결 :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관련 절차 처리를 위한 ECUAPASS와의 연결

<그림 94> 에콰도르 단일 창구



자료: <https://portal.aduana.gob.ec/>

[21] 중남미_멕시코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멕시코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VUCE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인증번호가 발급된다. 이 인증번호를 가지고 멕시코 경제부에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수령하게 된다.

(i)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⁹²⁾와 멕시코 경제부⁹³⁾

- VUCE 시스템 접속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그림 95> 멕시코 단일 창구



자료: <https://www.ventanillaunica.gob.mx/vucem/index.htm>

92) VUCE는 멕시코의 Single Window System

93) <http://www.gob.mx/se/>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현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VUCE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가능하지만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상에서 조회하는 시스템은 최근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② 교환현황

- 2009년 9월부터 멕시코와 콜롬비아 간에 국가차원에서 Decision No. 53에 따라 PCO 전자 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 협정은 수출업자들에게 규제완화, 현대화, 단순화를 가능하게 했고 세관에 접수된 정보의 통제 및 보안을 향상시켰다.
-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한해에만 1,363명의 사용자로부터 40,000건의 자동화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다. 멕시코 전체 기업의 약 40%인 3,000여개의 기업이 해당 협정으로 혜택을 입었으며 이 중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분야의 수출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그림 96> 멕시코 단일 창구



Para uso exclusivo del Gobierno de Colombia

**TRATADO DE LIBRE COMERCIO CELEBRADO ENTR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LA REPUBLICA DE COLOMBIA**

CERTIFICADO DE ORIGEN

RFC Empresa

CAESIT

RUPA

자료: <http://aplicaciones.economia.gob.mx/certlcg3/principal.jsp>

③ 향후 발전계획

- 현재 멕시코 경제부에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⁹⁴ 가입국 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i) 멕시코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멕시코 경제부 Operation of Instruments for Foreign Trade부
담당자명: Silvia Aguilar Vazquez
전화: +52 55 5229 6100 (내선 : 34343)
팩스: (856-21) 452 580 이메일: silvia.aguilar@economia.gob.mx
주소: Av. Insurgentes Sur 1940, Col. Florida Alvaro Obregon, CDMX, MEXICO
- 멕시코 경제부 Maquiladora Industry Sectorial Program부
담당자명: Aldo Daniel Araiza Ortega
전화: +52 55 5229 6100 (내선 : 34373)
팩스: (856-21) 452 580 이메일: aldo.araiza@economia.gob.mx
주소: Av. Insurgentes Sur 1940, Col. Florida Alvaro Obregon, CDMX, MEXICO

94)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이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 인구는 2.1억만명, GDP는 2조불(ASEAN과 유사)로 세계 9위권의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이들 4개 회원국은 2013년 7월말에 상품교역의 91.8% 즉각 무관세에 합의하였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연계를 통해 아태지역과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 무역원활화 현황

- 멕시코세관의 VUCEM 단일 창 프로젝트(Single Window Project)는 2009년 7월에 처음 시작되어 2012년 6월에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현재 상품의 수출, 수입 및 운반 과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해당 창은 관련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제출을 위한 단일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서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공통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세계 관세기구의 카탈로그와 일치하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이룩하여 ‘단일 창’ 간의 통합을 고려하였다.
- 멕시코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으로 VUCEM2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중요한 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었다. 기존 VUCEM1과 연동되도록 고안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 안전,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 중이다.
- 회사, 개인, 고용인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른 단일창구(single window)와 연동을 통해 정보 분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EDI를 XML, UNCFAC, GOV, X12 등 SW간에 전환이 용이하도록 구축중이다.

[22] 중동국_이스라엘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상을 진행 중⁹⁵⁾이다. 이스라엘은 캐나다, EFTA, EU, 멕시코, PTN⁹⁶⁾, 터키, 미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중이며 이스라엘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PCO)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다.

(i)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그림 97>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화면

הצטרף ללשכה | כניסה לחברים | **לשכת המסחר תל אביב והמרכז** | ארגון העסקים המדול בישראל

בחר תחום פעילותך העסקית

ראשי | אודות | שירותים עסקיים | **סחר בינלאומי** | חדר חדשות | אירועים | מכללה עסקית | הטבות | צרו קשר | חיפוש כללי

קשרים בינלאומיים | יבוא, מכס ותקינה | **אטא קרנה, תעודות מקור ואישורי סחר** | לשכות שירות להנפקת רשימונים | מידע על פי מדינת

אטא קרנה, תעודות מקור ואישורי סחר

פנקס מעבר מכס לדוגמאות מסחריות, אישור תעודות מקור, אימות חתימה, החתמת חשבון, אישור מכירה חופשית, ומכירה בייבוא.

להוספת השירות

תעודות מקור ואישורי מסמכים בסחר חוץ

- אישור תעודות מקור לשכה - Certificate of Origin
- אימות חתימה - Signature Verification**
- החמת חשבון - Invoice
- מכתב באנגלית לגבי קיומה של חברה ופעילותה
- Certificate of Free Sale - אישור מכירה חופשית
- אישור מסמכים רכיב/מסמכים חוץ - Delivery Verification

אטא קרנה

יעדי קרנה ותוקפן

סוגי טובין הניתנים להוצאה תחת אטא קרנה

רועד חופשית אטא קרנה

자료: <https://www.chamber.org.il/foreigntrade/carnet/1124/>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에서는 국제무역과 관련 원산지 및 거래확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및

95) 2017년 5월 서울에서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하였다.

96) Protocol on Trade Negotiations (PTN), Bangladesh; Brazil; Chile; Egypt; Israel; Korea, Republic of; Mexico; Pakistan; Paraguay; Peru; Philippines; Serbia; Tunisia; Turkey; Uruguay

대외무역 문서관련 서비스로는 원산지증명서, 서명확인, 송장, 영어 편지, 자유 판매 증명서, 배달 및 통관증명서 확인, 국제 인증서 가져오기가 있다. 또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⁹⁷⁾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는 한 장의 원본과 4장의 복사본으로 발행되며 상공회의소에서 한 장을 보관하게 된다.

(i) 이스라엘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담당자명: Inbar cohen

전화: 972-3-5631039 이메일: chamber@chamber.org.il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문서인증부서

전화: 03-5631009-39-54-61 이메일: Carnet@chamber.org.il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현재 온라인상으로 조회할 수 없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오프라인을 발행 및 확인만이 가능하다.

② 교환현황

- 이스라엘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PCO 전자 교환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PCO 전자 교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97) <https://www.chamber.org.il/foreigntrade/carnet/1124/38118/>

3] 무역원활화 현황

- 2017년 8월에 이스라엘 세관이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인 Shaar Olami⁹⁸⁾를 발족 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진정한 전자정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이서류 스캔본 및 전자 서명된 원본 문서는 전송되지 않으며 각각의 문서는 시스템 상에서 스캔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입자가 온라인상에서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수입관련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디지털 양식의 서류들은 email을 통해 거래된다.
- 수입자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수입 서류는 세관 직원의 경우 세관 통관 일로부터 3일 동안 서류를 보관하며 수입자는 7년 동안 원본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지닌다. 세관과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omsign에서 개발 된 인증과 관련 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보다 용이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아카이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98) www.mof.gov.il/taxes

(23) MERCOSUR_브라질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i)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MDIC)

<그림 98>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MDIC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accessibility, high contrast, site map, and language options (EN, ES).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social media icons. The main header reads 'Ministério da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e Serviços'. The breadcrumb trail indicates the current page is 'PÁGINA INICIAL > COMÉRCIO EXTERIOR > REGIMES DE ORIGEM > CERTIFICADO DE ORIGEM DIGITAL - COD'. The page title is 'Certificado de Origem Digital - COD'.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categories like 'Balança Comercial', 'Comex Vis', 'Brasil Mais Produtivo', and 'Siscomex'.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CERTIFICADO DE ORIGEM DIGITAL (COD)' with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ystem's benefits, such as digital signatures and faster processing times. A right-hand navigation box lists related topics like 'ENTIDADES HABILITADAS A EMITIR COD NO BRASIL' and 'PROCEDIMENTOS PARA HABILITAÇÃO DE ENTIDADES EMISSORAS DE CERTIFICADOS DE ORIGEM'. Social media sharing buttons for Google+, Twitter, and Facebook are also visible.

자료: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regimes-de-origem/2475-certificado-de-origem-digital-cod>

○ 전자원산지증명서인 COD⁹⁹⁾를 발급한다. COD사용으로 서비스의 직접 비용이 약 35%가량 절감되었으며 증명서의 빠른 발급이 가능해졌다. COD는 ALADI에 규정된 기술 사양 및 일반 절차¹⁰⁰⁾에 따라 컴퓨터화 된 시스템을 통해 발행 되고 있다. COD 프로젝트의 시작은 2005년 모든 ALADI 회원국¹⁰¹⁾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2009년 NetMasters社가 Doc를 기반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Mercosur 국가의 세관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99) Certificado de Origem Digital

100) ALADI / SEC / di 2327에 명시. http://www.aladi.org/nsfweb/Documentos/2327Rev2_pt.pdf 참조

101)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11개국의 라틴 아메리카 통합연합.

(ii) 브라질 각 주의 산업연맹 (FIE)¹⁰²⁾

○ 브라질의 원산지증명서는 연방정부 대외무역국(SECEX)¹⁰³⁾이 허가한 기관(각 주(州)의 산업연맹 등)을 통해 발급된다.

* 일례로 상파울루 주의 경우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FIESP)¹⁰⁴⁾을 통해 발급된다.

<그림 99> 브라질 각 주별 산업연맹 홈페이지



자료: <http://www.fiesp.com.br/certificado-de-origem-2/>

102) Federação das Indústrias do Estado

103) Secretaria de Comércio Exterior

104) Federação das Indústrias do Estado de São Paulo

- 다음의 사이트에서는 SECEX가 승인한 주(州) 별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0> 브라질 각 주별 PCO 발급기관

Você está aqui: [Página Inicial](#) / [Serviços](#) / [Acordos Preferenciais](#) / [Certificado de origem preferencial](#)

Certificado de origem preferencial

[Imprimir](#) [Enviar](#)

O Certificado de Origem é o documento que identifica a origem de determinado bem para efeitos de concessão de tratamento tarifário preferencial contratual ou autônomo. Para tanto, o certificado de origem deve ser emitido em conformidade com as regras prescritas por cada Acordo ou legislação pertinente.

Abaixo conheça a lista de entidades autorizadas pela SECEX a emitir certificados de origem para os Acordos comerciais no âmbito da ALADI e de Acordos Extrarregionais.



- Acre (AC)
- Alagoas (AL)
- Amapá (AP)
- Amazonas (AM)
- Bahia (BA)
- Ceará (CE)
- Distrito Federal (DF)
- Espírito Santo (ES)
- Goiás (GO)
- Maranhão (MA)
- Mato Grosso (MT)
- Mato Grosso do Sul (MS)
- Minas Gerais (MG)
- Pará (PA)
- Paraíba (PB)
- Paraná (PR)
- Pernambuco (PE)
- Piauí (PI)
- Rio de Janeiro (RJ)
- Rio Grande do Norte (RN)
- Rio Grande do Sul (RS)
- Rondônia (RO)
- Roraima (RR)
- Santa Catarina (SC)
- São Paulo (SP)
- Sergipe (SE)
- Tocantins (TO)

자료: <http://portal.siscomex.gov.br/servicos/acordos-preferenciais/certificado-de-origem-preferencial-1>

②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 현재 MDIC, CNI, e-Cool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① 온라인 조회여부

(i) 산업통상서비스부 (MDIC) 사이트

<그림 101>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

The image shows a web browser window displaying the login page for 'CertOrigem'. The page has a blue header with the text 'Certificados de Origem' and a URL 'http://www.fiesp.com.br/ce'. Below the header is a login form titled 'CertOrigem - Login'. The form contains two input fields: 'Login:' and 'Senha:'. There are two buttons: 'Enviar' (Send) and 'Esqueci Minha Senha' (I forgot my password).

자료: <http://www.certorigem.mdic.gov.br>

○ 2009년 2월 2일부터 ALADI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CertOrigem 시스템¹⁰⁵⁾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ii)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CNI)¹⁰⁶⁾ 사이트

○ 브라질 국가산업연맹은 브라질 산업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최상위 조직

¹⁰⁵⁾<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regimes-de-origem/215-certificado-de-origem/1925-cdo-sistema-certorigem>

¹⁰⁶⁾ Confederação Nacional da Indústria

으로 브라질의 27개 주정부 산업 연맹과 약 12개 부문의 고용주 조합을 대표한다. 해당사이트는 국가산업연맹에서 제공하는 브라질의 COD 시스템으로 디지털 원산지 인증을 담당하며 해당 상품이 브라질산임을 증명한다. 1) 상품 및 수입자 등록 2) 상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 등록 3) 송장등록의 과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다.

○ 화면 오른쪽에서 해당 주(州)와 email을 입력하면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102>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



자료: <https://www.cod.cni.org.br/Home.aspx>

(iii) e-Cool :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이 운영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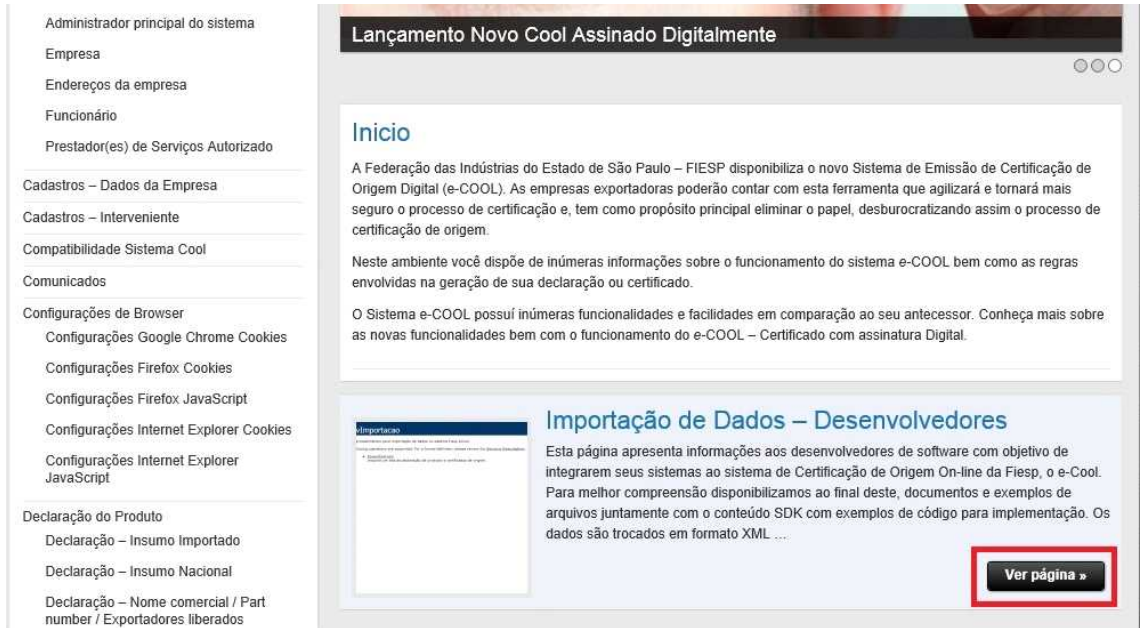
<그림 103>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자료: www.certificadobecool.com.br

- e-Cool은 FIESP(상파울루 주 산업연맹)가 운영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회사(혹은 사용자) 등록하고 CPF 고유한 암호를 사용하여 액세스 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4>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 설명



자료: <https://apps.certificadocool.com.br/help/>

② 교환현황

(i)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교환

- 2016년 9월 1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해각서(MOU) 체결로 COD기반¹⁰⁷⁾의 디지털서명을 허용할 것을 규정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는 2월 26일까지 한 번 연장되었다.

107) XML 형식

- 브라질의 MDIC 및 RFB와 아르헨티나의 생산부¹⁰⁸⁾ 및 AFIP의 지원이 있었으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 4차 양국 생산 및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다.
- 2017년 5월 12일부터 MERCOSUL/CCM/DIR. n°4지침에 따라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날짜부터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디지털형식 또는 종이형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와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따르면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는 평균 발행에 24시간 도달에 3일 정도가 소요되나 COD를 사용할 경우 발행에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처리 비용의 30 %까지 절감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③ 향후 발전계획

- PCO 전자 교환의 경우 MDIC(산업통상서비스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현재 ALADI 회원국들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우루과이와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도 올해 안에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Mercosur 국가의 디지털 원산지 인증 시스템 통합을 위한 규칙으로 Decree 8.483¹⁰⁹⁾을 따른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Portal Unico SISCOMEX는 브라질의 대외무역을 위한 단일 포털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다.

108) Ministry of Production

109) http://www.gabinetecivil.goias.gov.br/decretos/numerados/2015/decreto_8483.htm

<그림 105>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BRASIL Acesso à informação Participe Serviços Legislação Canais

Ir para o conteúdo 1 Ir para o menu 2 Ir para a busca 3 Ir para o rodapé 4

ACESSIBILIDADE ALTO CONTRASTE MAPA DO SÍTIO

Portal Único Siscomex

Buscar no Site

Perguntas Frequentes Contato Glossário Órgãos Participantes

Conheça o Portal Sistemas Legislação Serviços Informações

Você está aqui: [Página Inicial](#)

Utilização de COD no comércio entre Brasil e Argentina

A partir de 12 de maio de 2017 poderão ser utilizados Certificados de Origem Digitais (COD), com validade jurídica, no comércio entre Brasil e Argentina, validade esta estabelecida pela Diretriz MERCOSUL/CCM/DIR. n° 4, de 04/03/2010, incorporada ao Mercosul pelo 83° Protocolo adicional ao Acordo de Complementação Econômica n° 18 (ACE 18).

[Leia mais](#)

Portal Único
Acesso ao ambiente para registrar operações de comércio exterior e anexar documentos.

Como se integrar ao Portal Único

Anuentes
Acesso ao Portal Único
(Visão Integrada/Anexação de Documentos)

Sistemas

Anuente Web - Siscomex	Siscomex NovoEx	Siscomex D.E. - WEB
Visão Integrada	Drawback Isenção Web	Siscomex Importação
Siscomex Carga	Sigvig	

자료: <http://www.portalsiscomex.gov.br/>

- Siscomex Portal은 수출입의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업체, 수입업체, 운송업체, 창고 관리인, 세관 직원 등의 편의를 돕는데 사용된다.

- 통합 대외 무역 시스템 (SISCOMEX)은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 인증 및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 등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와 대외 무역 운영자 간의 상호 작용 공간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업데이트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SISCOMEX는 1992년 9월 25일 Decree 660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93년 대외 무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수출업자 간의 전자 인터페이스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통해 브라질 수출 업무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1997년에는 수입 작업을 위한 새로운 모듈의 생성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수출입에 관한 모든 행정 조치는 SISCOMEX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사양, 적용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6>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SISCOMEX) 사용법

O Portal Siscomex

Imprimir Enviar

O Portal Siscomex é uma iniciativa de governo eletrônico centrada no aumento da transparência e da eficiência nos processos e controles de exportações e importações. Voltado primordialmente aos operadores de comércio exterior - exportadores, importadores, transportadores, depositários, despachantes aduaneiros, terminais portuários etc. -, o Portal Siscomex objetiva, em sua etapa inicial de implementação, simplificar o acesso aos serviços e sistemas governamentais e à legislação pertinentes às operações de comércio exterior.

Todos os sistemas componentes do Sistema Integrado de Comércio Exterior (SISCOMEX), bem como os demais sistemas governamentais destinados à obtenção de autorizações, certificações e licenças para exportar ou importar estão presentes no Portal Siscomex. Por meio dele, os operadores do comércio exterior também contam com acesso simplificado às normas que regem as importações e exportações brasileiras, organizadas por órgão responsável pela edição ou administração da norma em questão.

O Portal Siscomex é a etapa inicial de um grande programa de reformulação da atuação governamental sobre as operações do comércio exterior brasileiro - o Programa Portal Único de Comércio Exterior. Irmanado às ações de infraestrutura promovidas pelo governo, o Programa Portal Único se apresenta como o segundo pilar basilar para o aumento da eficiência do comércio exterior brasileiro e da competitividade exportadora do País. Assim, o Portal Siscomex figura como o espaço de interação entre o governo e os operadores de comércio exterior mediante o qual importantes inovações serão apresentadas e implementadas, de forma incremental, ao longo dos próximos anos.

[Leia mais...](#)

Conheça o Portal	Sistemas	Legislação	Serviços	Informações
<p>O Portal Siscomex Programa Portal Único de Comércio Exterior Como se integrar ao Portal Único de Comércio Exterior Governo lança novo processo de exportações</p>	<p>Importação Exportação Cargas e logística Regimes Especiais Cadastrros e Habilitação Visão Integrada</p>	<p>Receita Federal SECEX Anvisa Vigiagro Inmetro Ibama [+] legislação</p>	<p>Acordos Preferenciais Comex Responde Consultas Públicas Estatísticas Invest & Export Brasil Promoção Comercial Simuladores Sistemas para Treinamento</p>	<p>Manuais Tarifa Externa Comum - TEC Bens sujeitos a tratamento administrativo Notícias Siscomex Notícias</p>

자료: <http://portal.siscomex.gov.br/conheca-o-portal>

- 또한 해당 포털은 수입, 수출, 화물 및 물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자원산지증명서(COD)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07>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상의 전자원산지증명서

The screenshot shows the Siscomex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header, a menu bar contains 'Conheça o Portal', 'Sistemas', 'Legislação', 'Serviços', and 'Informaçõ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Sistemas' and includes a search box and a grid of system categories: 'Importação', 'Exportação', 'Cargas e Logística', 'Regimes Especiais', 'Cadastros e Habilitação', and 'Visão Integrada'. Below this, the 'Lista de Sistemas' section displays several system cards. The card for 'CERTIFICADOS DE ORIGEM DIGITAIS (CO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rder. This card is associated with the 'Receita Federal' and describes a digital system for origin certificates. Other visible cards include 'ACOMPANHAMENTO DE REQUERIMENTO' (Polícia Federal) and 'ANUENTE WEB - SISCOMEX IMPORTAÇÃO' (SECEX).

자료: http://portal.siscomex.gov.br/sistemas/lista_sistemas_view?p_cat=40dc9537-1106-4bfc-b26c-90d59bc24046

(24) MERCOSUR_아르헨티나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총 35개의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3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i)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CAC, 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그림 108>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y Servicios, specifically the 'Certificados de Origen' page. The page has a red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Inicio', 'Departamento', 'Visaciones', 'Áreas', and 'Prensa'.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and a '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heade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ertificados de Origen' and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service and a list of certificate model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blue banner for 'CERTIFICADOS DE ORIGEN DIGITAL' and a login form for 'Identificación de empresas' with fields for 'Ingrese su usuario' and 'Ingrese su contraseña', and buttons for 'Olvidé mi contraseña', 'Identificarse', and 'Ir al formulario de registraci3n'. The ICC logo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자료: http://comercioexterior.cac.com.ar/institucional/Certificados_de_Origen_433

-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본부와 10개의 사무실이 있다. 현재 Mercosur, Mercosur-칠레,

Mercosur-볼리비아, Mercosur-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ALADI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CAC) 담당자 : Lic. Andrés Traverso
(atraverso@cac.com.ar)

(ii)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AIERA, Asociación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그림 109>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Asociación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Inicio

Institucional

Misión, Visión y Objetivos

Consejo Directivo

Capacitación

Curso de Comercio Exterior

- Intensivo Modalidad Virtual
- Intensivo Modalidad Presencial

Seminarios

Certificación de Origen

Certificado de Origen

Certificado de Origen Digital

Servicios

Misiones Comerciales

Oferta exportable por Rubro

Oferta exportable por Provincia

Oportunidades comerciales

Beneficios Adicionales

Comunicación

Informes económicos

Newsletter

Contacto



Certificado de Origen Digital

Acceso al Sistema COD-AIERA

Para solicitar su usuario en el Sistema COD-AIERA descargar el **Formulario de Inscripción** y enviarlo completo con sus datos a la casilla: projectocod@aiera.org

Una vez recibido el formulario será contactado para informarle sobre la capacitación.

Para mayor información dirigirse al correo electrónico: projectocod@aiera.org

De acuerdo a los últimos requerimientos de l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los países que la conforman comenzaron hace tiempo a trabajar en la implementación del Plan Piloto para la Digitalización de los Certificados de Origen, para un mayor aprovechamiento de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en el marco de la innovación tecnológica del Estado.

La Asociación de Importadores y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AIERA–, como entidad habilitada desde 1991 para emitir certificados de origen, desde el inicio de este nuevo proyecto regional participa activamente del Plan Piloto de la ALADI cooperando en su implementación, y a través del diseño un software institucional COD adecuado especialmente a todas las necesidades que requieren los exportadores en las certificaciones de origen para el marco citado.

El método de Certificación Digital (COD) impulsado por la ALADI, a través del uso de las redes de comunicación digitales busca una reducción en tiempos de transacción, mayor transparencia en las operaciones, así como la progresiva digitalización de los trámites y documentos; incrementándose la seguridad en la firma de certificados y la disminución de los fraudes y evasiones fiscales a los cuales se enfrentan los gobiernos regionales.

Este importante cambio en la modalidad de certificación digital se lanzará mientras en su primera etapa se mantendrá simultáneamente como válida la actual forma de certificación de manera impresa.

자료: <http://www.aiera.org/certificacion-digital.php>

○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은 1991년부터 허가를 얻어 특혜원산지증명서와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COD-AIERA 시스템을 통해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AIERA) 담당자 : Lic. Adriano De fina (comercial@aiera.org.ar)

(iii) 아르헨티나 수출협회(CERA, Cámara de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그림 110>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원산지증명서

The screenshot shows the CERA website interface. The header features the CERA logo (Cámara de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and the text 'WELCOME TO EX-PORTAL® The website of Argentine Exporters.' There is a search bar and a 'Buscar' button.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lists various services like 'Herramientas de Operación', 'Oportunidades Comerciales', 'Certificación de Origen', etc.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ertificación de Origen - Digital' and contains a section for 'Certificación de Origen Digital (COD)' with detailed text about the digital certification process.

자료: http://www.cera.org.ar/new-site/contenidos.php?p_seccion_izq_id=343

○ 아르헨티나 수출 협회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현 무역 협정의 틀 안에서 원산지를 인증하고 있으며, 전자원산지증명서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아르헨티나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중이다. 현재 원산지증명서의 종이발급과 전자발급을 병행하고 있다.

○ 해당 협회의 인증부서는 Mercosur, Mercosur-칠레, Mercosur-볼리비아, Mercosur-페루, Mercosur-CAN, Mercosur-멕시코, 아르헨티나 - 멕시코, Mercosur-쿠바 및 기타 지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다.

*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담당자 : Sebastian Giordano(sgiordano@cera.org.ar)

2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① 온라인 조회여부

- 앞서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세기관은 각각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모두 ALADI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이용 및 조회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11>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자료: http://www.cac.com.ar/pubban/Certificados_de_Origen_192

- 해당 시스템은 ALADI위원회에서 제정 한 규정, 표준 및 버전 관리에 따라 COD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110)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와 전자원산지증명서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며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을

110) WTO의 HS시스템에 따라 식별되며, 아르헨티나의 AFIP SIM과 MERCOSUR에 의해 적용된 ALADI (NALADI, NALADISA), Mercosur Common Nomenclature (NCM) 양식 혹은 그 확장. ALADI-COD의 최신 세부사항 확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certificadoodrigen.cac.com.ar/sauken/doc/ALADI_SEC_di2327_rev3.pdf

따르는 데이터들도 교환이 가능하다.

- 사용자 등록과 프로그램 설치 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오픈 소스인 GPLv2의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되고, ALADI의 XML COD 디지털 서명의 COD 및 DS-COD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LADI의 기술 사양을 사용하여 설명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COD Visualizer“¹¹¹⁾에서는 ALADI XML COD를 로드하여 현재 종이 양식과 비슷한 형식의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수출입 연합에서 관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관리시스템인 COD-AIERA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12> 아르헨티나 수출입연합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자료: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login.jsp>

-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수출 협회에서 관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COD)

111) http://certificadoorigen.cac.com.ar/sauken/aladi/cod_visualizer.html?skipCODLanguageSelection=yes&customStyleSheet=http://negocios.cac.com.ar/sauken/aladi/CAC_COD_1.8.0.xsl

관리시스템인 SCOD-CERA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113>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화면



자료: <http://scod.cera.org.ar/>

② 교환현황

- 현재 브라질과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XML 형태로 받아서 세관 시스템(Sistema Maria) 등록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 향후 발전계획

- 아르헨티나는 현재 우루과이 및 칠레와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IDB¹¹²⁾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역원활화를 위한 단일 창(Single Window)인 VUCEA(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Argentino)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 2016년 10월 6일 Decree 1079 / 2016를 통해 VUCEA 실행을 위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내의 다양한 모듈의 구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단일창의 구축이 완료되면 대외 무역 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 시간이 40% 정도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2)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5) MERCOSUR_파라과이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i) 산업통상부 지정기관

- 파라과이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산업통상부(MIC: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지정한 기관¹¹³⁾에서 발행한다. 지정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다.

<그림 114> 파라과이 원산지증명서 지정기관



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PRINCIPALES FUNCIONES

El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es el órgano nacional regulador de la emisión de los Certificados de Origen de Exportación de las Entidades habilitadas y autorizadas a emitir Certificados de Origen.

El Certificado de Origen es un documento por el cual el productor final, o en su caso el exportador, declaran bajo juramento que la mercancía que se va a exportar ha cumplido con las exigencias que para su elaboración establecen las normas de origen del acuerdo de que se trate. Este documento se presenta en diferentes formatos según el respectivo acuerdo, y habilitará al importador a nacionalizar las mercancías beneficiándose de las respectivas preferencias.

El SGP es un certificado de origen con preferencias arancelarias otorgadas por los países de Economías Desarrolladas y beneficia a los países de Economías de Menor Desarrollo o en Vías de desarrollo.

La emisión y visación de Certificados de Origen para la exportación de productos, se realiza dependiendo de los aranceles comerciales en el país de destino rectificadas por Paraguay y en el marco del régimen del Sistema Generalizado de Preferencia (SGP) de la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 (OMC).

Los Certificados de Origen son emitidos por las entidades habilitadas por el MIC, conforme a las normativas vigentes sobre el Régimen de Origen, a través de la Dirección de Operaciones de Comercio Exterior y de las Oficinas Regionales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ORMIC) de Alto Paraná, Itapúa, Concepción y Pedro Juan Caballero.

Se tramita a través del Sistema de la Ventanilla Única de Exportación (VUE). www.vue.org.py

Asimismo, se facilita información y se orienta al exportador en la obtención de 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en el marco de los distintos Acuerdos Comerciales con sus respectivos Regímenes de Origen.

Las Autoridades y Entidades Certificadoras de Origen están representadas por el sector público y privado.

자료: http://www.mic.gov.py/mic/site/comercio/dgce/certificado_de_origen.php

113) http://www.mic.gov.py/mic/site/comercio/dgce/direccion_de_operaciones/pdf/ENTIDADES%20AUTORIZADAS/ENTIDADES%20AUTORIZADAS%20A%20EMITIR%20CERTIFICADOS%20DE%20ORIGEN.pdf

○ 다음은 그 중 몇 개의 민간기관이다.

- » CNCSP - 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de Paragua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Services):
http://www.ccparguay.com.py/v2/?page_id=182#emision-certificados-de-origen
- » CAPEX - Camara Paraguaya de Exportadores (Paraguayan Chamber of Exporters): [<http://www.capex.org.py/index.php/en/>]
- » UIP - Union Industrial Paraguaya (Paraguayan Industrial Union):
[<http://www.uip.org.py/>]
- » CAPECO - Camara Paraguaya de Exportadores y Comercializadores de Cereales y Oleaginosas (Paraguayan Chamber of Exporters of Cereals and Oilseeds):[<http://capeco.org.py/>]

2 e-C/O 관리 및 교환 현황

1 온라인 조회여부

- 파라과이의 국립 세관 이사회(DNA: National Customs Directorate)에서 관리하는 단일 창구인 VUE(Ventana Unica del Exportador) 시스템에서 2006년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온라인접근이 가능하다.
- VUE 시스템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매뉴얼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vue.org.py/manuales/Manual_del_Usuario_Exportador_certificado_origen.pdf

<그림 115> 파라과이 단일 창구

INICIO INSTITUCIONES RECTORAS DESCARGAS CONTACTO

NOTICIAS DESTACADAS < >



★ EXPORTACIONES

CHILE ABRE TODAVÍA MÁS SU MERCADO A CARNE PARAGUAYA

MAY 12, 2017

El Servicio Agrícola Ganadero (SAG) de Chile reconoció el estatus sanitario del Paraguay, como país libre de aftosa con vacunación, lo que ampliará y diversificará los envíos de carne a dicho país, que es nuestro principal mercado, se informó ayer en rueda de prensa en la Rural.

Fuente: www.abc.com.py

자료: <http://www.vue.org.py/>

② 교환현황

- 파라과이의 경우 아직까지 타 국가 및 지역과의 PCO 전자 교환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③ 향후 발전계획

- 파라과이는 MERCOSUR의 일원으로 원산지증명서 시스템과 관련된 의견을 그들과 같이하고 있다. 현재 MERCOSUR는 디지털인장 시스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향후 전자원산지증명서교환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6] EU [한-EU FTA]

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현재 한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Customs Approved & Registered Exporter)

- ②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¹¹⁴⁾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The Registered Exporter' s System)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하에서 세관장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에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3년동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 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으로는 구비 서류 제출과 관련 심사가 생략 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게 됨으로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114) 원산지관리사 기본서 FTA 협정 및 법령 참조

-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FTA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상업서류 (Invoice)상에 기재하면 된다.¹¹⁵⁾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시스템 (The Registered Exporter' s System :REX)

- 원래 국내 수입업체들은 상대 유럽 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럽 기업들이 통관서류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란에 사업자번호 등 유사한 형태의 번호 오기로 인한 추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 그러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의 수출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 (REX)를 구축하여 2017년 개통한 상태이다.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상대국 유럽의 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CCC 및 UCC에 기반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수입국은 물품의 가치가 6천유로 이하인 경우는 상업서류 신고에 따라, 6천유로 이상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A (Form A)에 따라 특혜 원산지 증명서로서 증명하였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일반특혜관세수익국은 하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 선언을 선적서류에 기입함에 따라 특혜 원산지로서 증명 가능해졌다.

115)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1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로 간주되어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Customs Authorization No.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물품의 가치가 6천 유로 이하인 경우
- 물품의 가치가 6천 유로 이상인 경우 수출자가 REX에 등록된 경우

○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EU의 사업자는 REX 등록이 가능해졌다.
REX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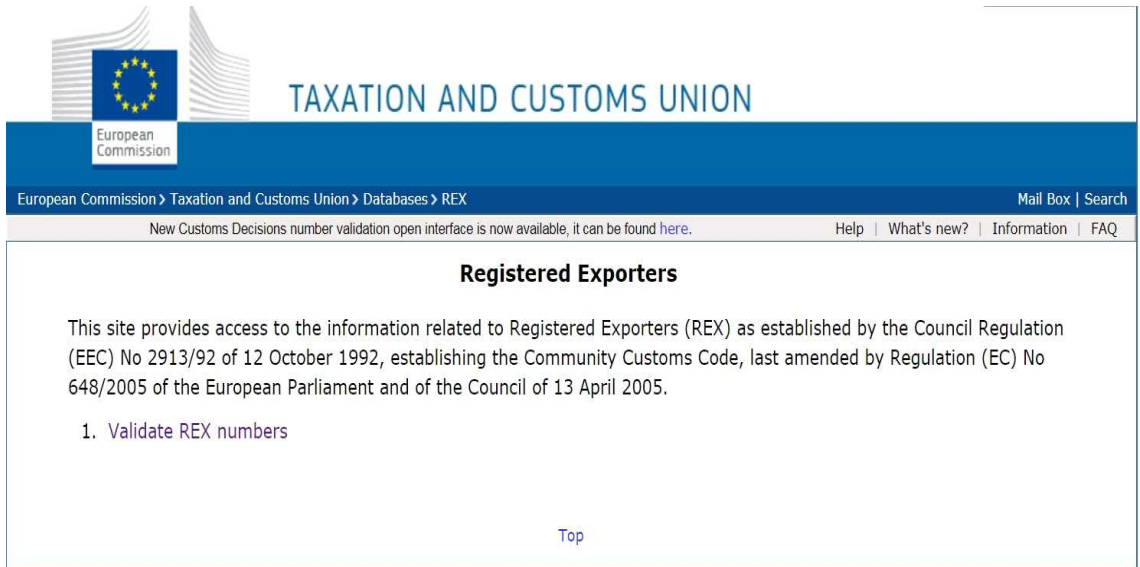
- 수출사업자 등록: 수출사업자의 신청용지에 따라, 수익국의 관할 당국이 등록한다.
- 등록된 데이터의 수정: 등록된 수출사업자는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관할 당국에 변경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변경사항의 통지를 받은 관할당국은 REX 시스템에서 수정한다,

○ EU는 일반 특혜관세 (GSP)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등록된 수출 사업자에 의한 자기인증제도를 2017년 1월1일에 도입했다. 등록 수출자에 의한 자기인증제도로의 이행기간은 수익자 국가마다 다르지만 최대 2020년 6월까지 가능하다. 이행 기간이 끝나면, 6천 유로를 초과할 경우 화물 인도장에서 EU의 GSP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서식 A (Form A) 대신 등록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온라인 조회여부

- REX 시스템 상에 등록된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하단의 그림과 같이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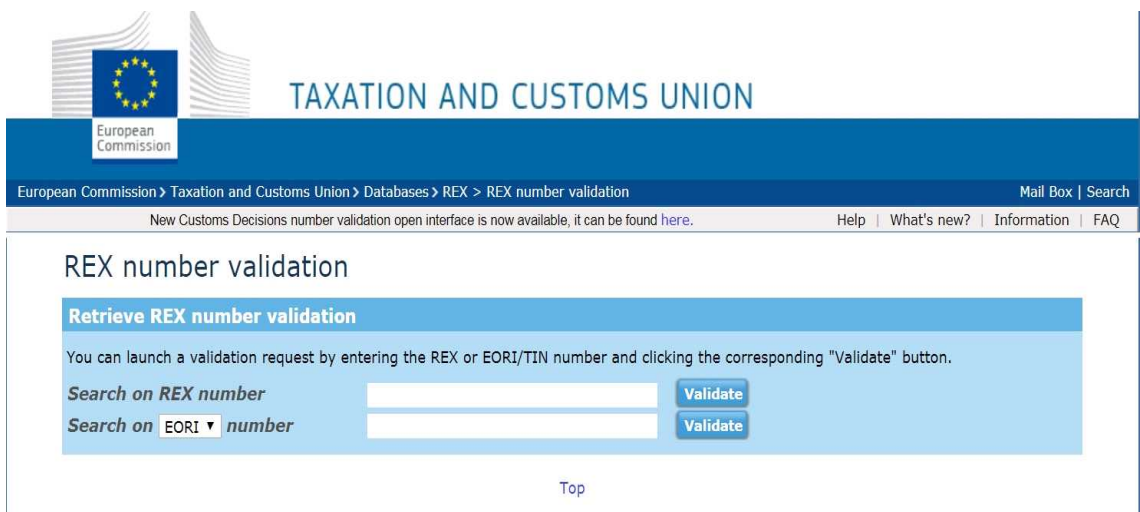
<그림 116> EU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REX)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REX system.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logo and the text "TAXATION AND CUSTOMS UNION". Below the header,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text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 > Databases > REX". On the right side of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links for "Mail Box" and "Search".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main content area with the title "Registered Exporters". The text below the title reads: "This site provides access to the information related to Registered Exporters (REX) as established by th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last amended by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Below this text, there is a list item "1. Validate REX numbers". At the bottom of the main content area, there is a "Top" link.

자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그림 117> EU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REX)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interface of the REX system.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logo and the text "TAXATION AND CUSTOMS UNION". Below the header,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text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 > Databases > REX > REX number validation". On the right side of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links for "Mail Box" and "Search".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main content area with the title "REX number validation". Below the title, there is a section titled "Retrieve REX number validation". The text below this section reads: "You can launch a validation request by entering the REX or EORI/TIN number and clicking the corresponding 'Validate' button." Below this text, there are two search forms. The first form is labeled "Search on REX number" and has a text input field and a "Validate" button. The second form is labeled "Search on EORI number" and has a text input field and a "Validate" button. At the bottom of the main content area, there is a "Top" link.

자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 신청 시에는 사업자와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된 데이터 모든 부분의 공개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REX 번호, 등록자 유효 기간은 공개된다. REX시스템 상에서 검색하여 GSP의 특혜를 받은 EU의 수입사업자 및 지역누적을 적용하여 他 GSP수입국의 등록 수출업자가 작성한 원산지선언을 사용한 GSP 수입국의 등록 수출업자는 원산지선언의 유효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④ 무역원활화 현황

- 유럽집행위원회(EC)는 해상 및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2010/65/EU 지침으로 해상 운송을 위한 국가 단일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 NSW)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NSW의 조화로운 이해와 구현을 위한 지침을 2015년에 공고하였다¹¹⁶⁾.
- EU 집행위원회는 EMSA (European Maritime Single Window)를 지원하고 회원국 및 해운업계와 상의하여 2015년 eManifest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EU 국가들의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 교환을 위해서 e-Maritime 이니셔티브 이후 조화로운 방식의 보고가 가능하도록 각 국가별로 단일 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 권고, 지침 및 표준을 바탕으로 NSW의 개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¹¹⁷⁾.
- NSW는 당국이 제출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게 해주어, 해운업에도 도움을 준다. 선박은 보다 빠른 통관 및 해제시간으로 이익을 얻고 항구에서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이 개선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 행위에 대한 잠재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116)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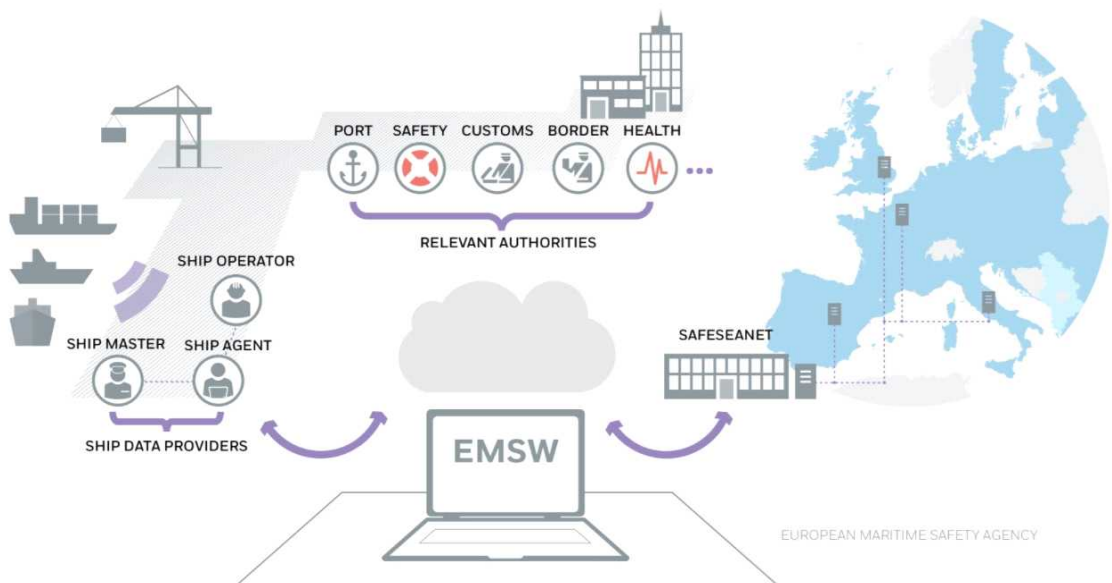
117) 2010년 EU는 “보고 서식 지침 (Reporting Formalities Directive)” 를 통해 EU 회원국들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해운업의 주된 이점은 선박 해운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당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단일 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① 통관지연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 ② 처리 시간 단축
- ③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치
- ④ 투명성 증가

○ EU는 공고한 지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주,항만, 화주 협회로 구성된 각국의 eMs를 결성하였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국가별 단일창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해운물류부문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물류/ 운송포럼으로 제조공장 및 화주들이 운송 관련 정보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18> 유럽 해운물류 단일창구 (European Maritime Single Window)



자료: <http://www.emsa.europa.eu/related-projects/emsw.html>

2. e-C/O 교환 근거 조항

(1) ALADI · MERCOSUR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는 회원국들 간의 국경 간 무역촉진을 위해 2004년에 원산지증명 관련 절차를 위한 기술이 도입되었다. ALADI의 상임이사국 결의안 278¹¹⁸⁾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인증서 발급, 서명, 전송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의 구현을 계획하였다¹¹⁹⁾. 이것은 ALADI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 인증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종이 양식에서 전자문서로의 전달을 의미하며 종이 양식으로 발행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디지털 원산지증명서(COD)의 형식은 XML이며 합의된 표준은 ISO 8859/1이다. ALADI의 디지털 원산지 인증의 일반 절차(ALADI/SEC/di 2327/Rev.2, ALADI/CR/Resolución 386) 및 ALADI 회원국에서의 COD 교환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ALADI/SEC/dt 533, ALADI/SEC/dt 536)에 대해서는 해당 근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디지털 원산지 인증을 위한 기술 여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¹²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회원국은 모두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가로서 동 기구의 틀 안에서 역내 통합을 위한 경제보완협정(ACE¹²¹⁾)를 체결 운용 중에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MERCOSUL/CCM/DIR N°4/00의 규정에 따라 ALADI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들 중 e-C/O를 교환하고 있는 협정간의 C/O 발급 형식은 기본적으로 기관발급¹²²⁾을 따르고 있다.

118) Resolución 278 del Comité de Representantes de la ALADI

119) ALADI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디지털화 제안서“(2004.9.23.)

120) <http://www.aladi.org/sitioAladi/facilitacionComercioCOD.html> 문서 확인

121) 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número

122) 브라질-아르헨티나 경제동반협정(ACE14), 칠레-콜롬비아(ACE24), 칠레-에콰도르(ACE65), 콜롬비아-멕시코(ACE33)

① 브라질 - 아르헨티나 e-C/O 교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Digital Origin Certificate - COD)의 교환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 되었다¹²³⁾. 브라질의 COD 디지털 서명은 브라질 공개 키 인프라 (ICP-Brasil) 표준의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제공된다. COD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면 Single Portal Siscomex에 접속하면 된다. 협정상의 관련 조항으로는 MERCOSUR 회원국가의 디지털원산지인증시스템 통합을 위한 규칙 (MERCOSUL/CCM/DIR N°4/00) 그리고 ACE 18(MERCOSUR)¹²⁴⁾, ACE14(아르헨티나-브라질)¹²⁵⁾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종이 형식 또는 온라인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MERCOSUL/CCM/DIR N°4/00

원 문	한 글 본
<p>TEXTO CONSOLIDADO E ORDENADO DAS "INSTRUÇÕES PARA OCONTROLE DE CERTIFICADOS DE ORIGEM POR PARTE DAS ADMINISTRAÇÕES ADUANEIRAS E DO " INSTRUÇÕES PARA ENTIDADES HABILITADAS À EMISSÃO DE CERTIFICADOS DE ORIGEM" TENDO EM VISTA: O Tratado de Assunção, o Protocolo de Ouro Preto, os</p> <p>Art.2 - A presente Diretriz será incorporada aos ordenamentos jurídicos nacionais dos Estados Partes num prazo de 30 (trinta) dias, contados a partir da entrada em vigor da Dec. CMC N°..3/00. Art. 3 - A Dir. CCM N° 12/96 e suas modificações, aprovadas pelas Dir. CCM N°s.</p> <p>(중략)</p> <p>D- CONTROLE DO CERTIFICADO DE ORIGEM</p> <p>1. As certificações realizar-se-ão no modelo de</p>	<p>"원산지 증명서의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단체를 위한 지침"</p> <p>보기 : Asuncion 조약, Ouro Preto 의정서,</p> <p>제 2 조 -이 지침은 Decree CMC No. 3/00의 발효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3 조 - CCM 법 No. 12/96 및 CCM Dir이 승인 한 수정본. 2/97, 11/98, 20/97, 15/99는 국내법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p> <p>(중략)</p> <p>원산지 증명서 관리</p> <p>1. 인증은 ALADI 이전의 XIV 추가 의정서에 의해</p>

123) 이 발표는 이달 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양국 생산 및 무역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124) <http://www.mercosur.int/innovaportal/v/3751/11/innova.front/protocolos-adicionales-al-ace-n%C2%B0-18-aladi>

125) <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negociacoes-internacionais/132-acordos-dos-quai-s-o-brasil-e-parte/1818-acordos-brasil-argentina-ace-14>

<p>formulário de certificação de origem estabelecido pela Resolução GMC Nº 41/95, formalizada perante a ALADI pelo XIV Protocolo Adicional ao (중략)</p>	<p>공식화된 결의 GMC No. 41/95로 설립된 표준형태의 원산지증명의 모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p>
<p>5. Será exigida a apresentação do Certificado de Origem no original somente. O mesmo não será aceito em outras versões, fotocópias ou transmitidos por fax. (중략)</p>	<p>5.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다. (중략)</p>
<p>ANEXO II</p> <p>B- CERTIFICADOS DE ORIGEM As certificações serão realizadas no modelo de formulário de certificação de origem estabelecido pela Resolução GMC Nº 41/95, formalizada perante a ALADI pelo XIV</p>	<p>부속서 II</p> <p>B- 원산지 증명서 인증은 ALADI 이전에 XIV 추가 의정서에 의해 공식화된 결의 GMC No. 41/95에 의해 제정된 원산지증명양식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p>

자료: http://www.mercosur.int/msweb/portal%20intermediario/Normas/normas_web/Directivas/P/Dir_004_000_Instrutivo%20Controle%20Certificados%20Origem_At%204_00.pdf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디지털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의 규칙을 2017년 5월 외교통상부 장관 조레 SECEX n° 18 126)을 통해 발표하였다.

- Portaria Secex n° 18

원 문	한 글 본
<p>"Art. 238-A Fica autorizada, a partir de 10 de abril de 2017, a emissão de Certificados de Origem Digital (COD) por entidades certificadoras de origem habilitadas.Parágrafo único. A SECEX publicará em Diário Oficial e divulgará no sítio eletrônico do MDIC (www.mdic.gov.br) as entidades habilitadas a emitir COD."</p>	<p>"238-A 조는 2017 년 4 월 10 일 현재, 실제에 의한 디지털 원산지 증명서 (COD)는 SECEX 및 MDIC 웹사이트 (www.mdic.gov.br)를 통해 발행 할 수 있다. "</p>

자료: <http://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jornal=1&pagina=44&data=12/05/2017>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전자원산지증명서(COD) 교환은 SCOD 시스템을 통해

126) Portaria Secex n° 18

수출자가 디지털 인증서를 XML 형식으로 생성한 후, 수입자 (혹은 세관 중개인)에게 전송한다.¹²⁷⁾ 이후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형식의 발급시스템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② 이외에도 MERCOSUR 회원국인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간에 (MERCOSUL/CCM/DIR N°4/00)에 근거하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에콰도르의 경제보완협정(ACE) 제65호에 따라 양국 간 교역 촉진을 위해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 ASEAN

① 아세안회원국간의 e-C/O 교환

현재 아세안회원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ATIGA Form D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완료하였다. 그러나 전자교환 (real-time electronic exchange) 단계인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현재 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이며 이들은 역내 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및 관련 통관서류를 공유하고 있다.

-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 ANNEX 8

원 문	한 글 본
Rule 26 - Equivalence of Paper and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Form D)	규칙 26 - 종이와 전자 원산지 증명서 (전자 양식 D)의 동등성
1. A Certificate of Origin (Form D) in electronic format may be applied for, issued, and accepted in lieu of one in paper format, with equivalent legal effect.	1. 전자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 (Form D)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 형식으로 발행 및 접수 할 수 있다.

¹²⁷⁾ <http://www.afip.gov.ar/cod/documentos/MANUALDEUSUARIOEXTERNOSV13.pdf> (매뉴얼)

<p>2. Rules 27 to 31 shall apply to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e-Form D).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Rules 27 to 31, Rules 1 to 6, 8, 10, 11, 14 to 16, and 18 to 25 shall also apply to the processing of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e-Form D).</p>	<p>2. 규칙 27~31 전자 인증서 (e-Form D)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규칙 27~31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칙 1~6,8,10,11, 14~16 및 18-25 전자 인증서 (전자 형식 D)의 처리에도 적용된다.</p>
<p>Rule 27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Form D)</p>	<p>규칙 27 원산지 증명서 (전자양식 D)</p>
<p>1. In order to ensure interoperability, Member States shall exchange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e-Form D) in accordance with the e-ATIGA Form D Process Specification and Message Implementation Guideline, as may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중략)</p>	<p>1.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e-ATIGA 양식 D를 자주 업데이트 되는 프로세스 사양서 및 실시지침에 따라 전자인증서 (e-Form D)로 교환한다. (중략)</p>

자료: http://fta.mti.gov.my/miti-fta/resources/ATIGA_Annex-8-CCP-amended-to-accomodate-e-Form-D.pdf

아세안회원국들은 e-Form D를 교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각 국가의 단일창구를 연계·통합한 지역단위의 아세안단일창구(ASW)를 구축하였다.

-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ASEAN Single Window

원 문	한 글 본
<p>18. The ASEAN Single Window (ASW) is a unique regional initiative that connects and integrates National Single Windows (NSWs) of Member States. The ASW objective is to expedite cargo clearance within the context of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in ASEAN. ASW implementation ensures compatibility of Member States NSWs with international open communication standards while also ensuring that each of those Member States can then exchange data securely and reliably with any trading partners that use international open standards. Simpler and faster processing time, and a more transparent way of doing</p>	<p>18. ASW (ASEAN Single Window)는 지역별 이니셔티브로서, 회원국의 NSW (National Single Windows)를 통합한다. ASW의 목적은 ASEAN의 경제 통합으로 증가한 화물 및 통관처리를 신속 하게하는 것이다. ASW 구현은 다음과 같은 호환성을 보장 한다. 국제통신 표준을 갖춘 각 회원국의 NSW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제적 거래 파트너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보다 간단하고 빠른 처리 시간과 더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ASEAN Single Window의 주요</p>

business – these are the main goals of the ASEAN Single Window initiative.	목표이다.
--	-------

자료: <http://www.miti.gov.my/miti/resources/fileupload/Write-up%20on%20ASEAN%20Trade%20in%20Goods%20Agreement%20%28ATIGA%29.pdf>

(3) 뉴질랜드-중국 FTA

뉴질랜드-중국 FTA 협정 하에 뉴질랜드는 세관이 승인한 인증기관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NZFTA)의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뉴질랜드의 세관당국의 포털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양식만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상공회의소¹²⁸⁾는 중국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C/O 신청 및 상대국 세관으로 제출이 가능하여 교환형태는 인터넷형이다. 또한, e-C/O 신청자는 PDF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 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중국 해관(GACC)은 중국-뉴질랜드 FTA하의 전자적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중국 세관 GACC No. 84

원 문	한 글 본
(중략) 4. As from 20 December 2016, as regards the import goods whose Origin Certificate data is received by the Customs, the importer may be exempted from paper Origin Certificate submission for FTA duty application to the goods. 5. As regards containerized goods whose Origin Certificate data is received by the Custom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are compliant with the rule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TA the importer may submit the through-transport	(중략) 4. 2016년 12월 20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은 수입자는 세관으로의 FTA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 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데이터가 세관에 의해 접수된 컨테이너의 물품에 관해서는, 그 상품이 FTA에 따른 직접운송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자는 컨테이너에 변경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송 증명서(운송중인 번호

¹²⁸⁾ <https://www.chamberdocs.co.nz/>

certificate that can prove no change in Container Number and Seal Number during the course of transport.	및 봉인 번호)를 제출 할 수 있다.
--	----------------------

자료: <https://www.aucklandchamber.co.nz/media/46303851/gacc-jev-announcement-84-eng-translation-nzcs.pdf>

- 중국 세관 GACC No.175

원 문	한 글 본
<p>Article 17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nsignee of the import goods or the agent thereof may submit to Customs a Declaration of Origin:</p> <p>(a) the aggregate Customs value of the goods does not exceed US\$1,000 upon verification by Customs in accordance with law; or</p> <p>(b) Customs has, as prescribed by law, issued an administrative ruling on the origin of identical goods that deems the goods to qualify as originating in New Zealand, and the administrative ruling has not lost its validity or been repealed.</p> <p>Article 18 In making export declaration for goods, the consignor of the export goods shall, in accordance with Customs declaration requirements, fill out the Export Declaration Form of the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ubmit to Customs a Certificate of Origin in electronic form under the FTA, or, in the case of inability to submit the electronic copy, the consignor of the export goods shall submit to Customs a photo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p>	<p>제 17 조 수입 물품의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을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p> <p>(a) 상품의 총 세관 가치는 법률에 따라 세관의 검증을 거쳐 1,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p> <p>(b) 세관은 법에 규정 된 바에 따라 상품이 뉴질랜드에서 원산지로 인정되는 동일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행정 판결을 발표했으며 행정 판결은 그 유효성을 잃지 않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p> <p>제 18 조 수출 물품의 위탁자는 세관 신고 요건에 따라 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전자 증명서를 제출한다. 전자 사본을 제출할 수없는 경우 수출 물품의 위탁자는 FTA에 의거하여 양식을 제출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한다.</p>

자료: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888c22a7-41d6-45a6-b61b-47038672723d.html>

3. 종합적 연구결과

- 25개 조사대상국 중 23개 국가가 e-C/O 신청 및 발급 조회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 (현황) 미얀마, 이스라엘을 제외한 23개 국가들은 e-C/O 신청 및 발급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급주체) 정부기관(산업부, 무역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나뉜다. 대부분 독창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해놓은 상태이다.
 - (활용) 일반적으로 등록된 수출업체는 언제, 어디서든지 웹사이트를 통해 e-C/O 처리 진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국가별 e-C/O 교환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식적으로 교환단계인 국가들은 양자간(bilateral) 혹은 지역 단위(Sub-regional)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조사대상국 중 아세안과 중남미 지역은 지역단위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및 통관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교환형식) 조사결과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인터넷형 (웹 방식)과 발급시스템형 방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근거법령) 지역단위(아세안, 중남미 국가)로 국가 간 e-C/O 교환은 FTA 협정상의 근거 조항 혹은 국내법 근거 조항 바탕으로 이뤄진다.

○ 지역단위의 e-C/O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C/O 양식의 표준화 여부와 교환이 이루어질 환경이 되는 국가단일창구의 역할이 크다.

- (전자무역의 국제표준) 전자 무역 서류의 제출 및 교환을 위한 세계적인 표준형식으로는 WCO의 Data Model (DM), UN의 UN/TDED, UN/EDIFACT, UN/CEFACT 그리고 ISO 표준이 있다. 이중 조사대상국들의 e-C/O 교환을 위한 표준화 형식으로 WCO DM 모델이 대표적이다.
- (WCO DM) 세계관세기구의 데이터 모델로 2009년에 출시된 버전 3.0은 국가단일창구에서의 e-C/O 교환에 적합하다. 2012년에 출시된 버전 3.3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버전인 3.4는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를 포함하고 있다.
- (국가단일창구)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단일창구 시스템의 구현은 무역관계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된 통관서류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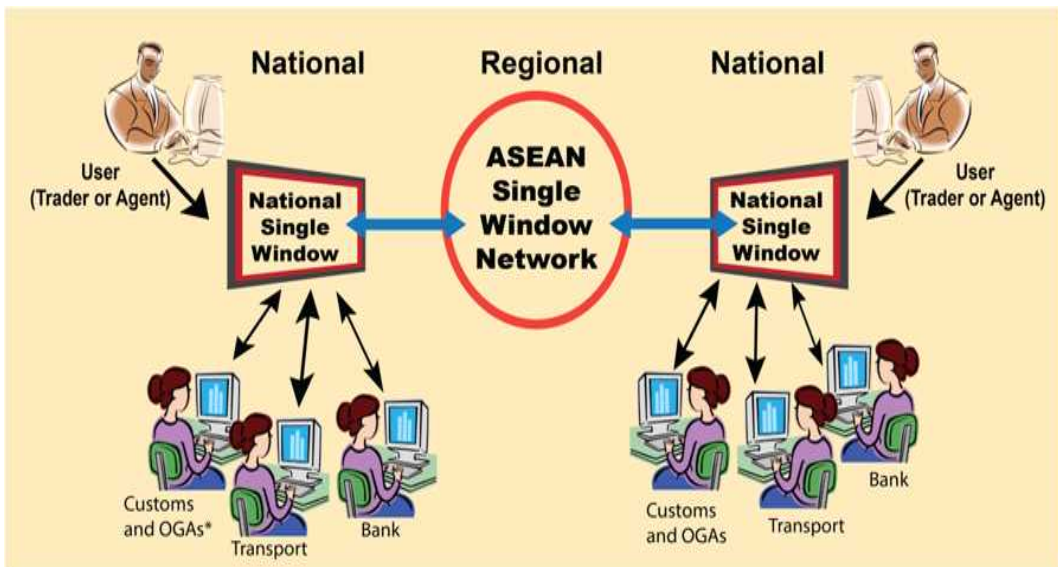
○ (아세안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모델을 도입했거나 구축중이다.

- 아세안국가들의 대부분은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모델인 WCO DM(Data Model)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는 아세안상품 무역협정(ATIGA)의 역내원산지증명서인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표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ATIGA Form D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를 구축 완료하였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²⁹⁾은 실시간 전자교환(real-time electronic

exchange) 단계인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여 역내 원산지 증명서 (ATIGA Form D) 및 통관서류를 공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단일창구는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비준절차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NSW의 연동을 통한 ASW로의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가 승인 되는대로 ASW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 ASW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그림 119> 아세안 단일창구 네트워크 (ASW)



자료: www.asw.asean.org

○ (중남미국가) 국가별로 e-C/O 발달 정도에 편차가 있으나, 인근 국가와 교환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인근

129) 태국은 일전에 2018년 1월 라이브운영에

- 국가와의 양자간(bilateral) e-C/O 교환을 활발히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5월부터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정식 e-C/O 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 또한, 이들 국가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한 번의 접속으로 전체통관 서류를 한곳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맺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협정상에 국가 단일창구의 정보처리상호운용에 관련하여 무역원활화 관련 장(chapter)을 추가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해당 네 국가들은 e-C/O를 활발히 교환 중에 있으며, 내년 2018년까지 이외의 통관 서류도 교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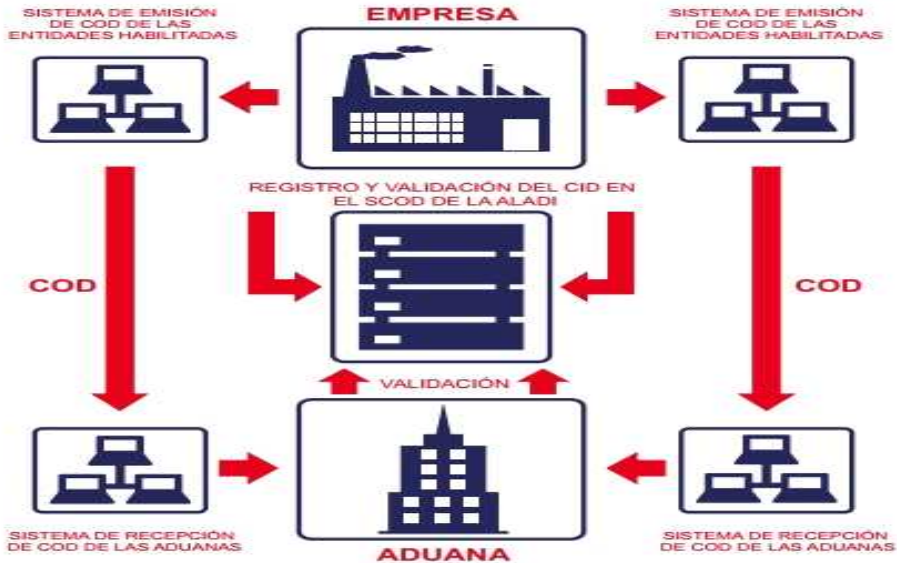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¹³⁰⁾ 회원국들간 공통적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 e-C/O 교환을 추진 중이다.

- 2004년에 ALADI는 공통의 프레임 하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디지털화 제안」을 준비함으로써 국경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ALADI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원산지증명 (Digital Certificate of origin)을 구현하여 실제 무역서류 발급을 전자적으로 대체하여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절차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 ‘17년 5월부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e-C/O 교환을 시작하였으며,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등 여타 ALADI 회원국들도 조만간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콜롬비아의 경우 단일창구인 VUCE를 근접 국가들의 단일창구와의 통합을

130) Asociacion Latino Americana de Integracion의 약자이며 회원국들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있다.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0> ALADI - 전자원산지증명서 (COD)



자료: www.aladi.org

○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C/O 교환 (시범 단계 포함)이 있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이루고 있는 근접 국들과의 양자간 (Bilateral) 혹은 지역단위 (Subregional) 형태로 e-C/O 교환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 대상국 중 아세안회원국들과 중남미의 경우가 지역단위 형태로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뿐만이 아닌 전자적 통관 서류 교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6개국 e-C/O 관리 및 교환현황]

	국가명	발급기관	신청	조회 (가입 O/X)	발급	교환현황 및 형식	논의현황	WCO D/M	단일창구(NSW)
1	중국	출입검역험검역국 (EIQ) *국가질량감독검역험검역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qiye.ccpiteco.net	www.chinaorigin.gov.cn (O) qiye.ccpiteco.net (O)	qiye.ccpiteco.net	중국-한국 e-C/O교환중 (전용회선형) 뉴질랜드-중국 e-C/O교환중 (~17년4월) (웹방식)	칠레, 파키스탄과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 중	WCO DM 2.0 WCO DM 3.0 프로젝트 완료	9 개 지역별 SW
2	일본	상공회의소	http://www.jcci.or.jp/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e-C/O 교환 파일럿 실험 완료	WCO DM 3.0 적합성확인 완료	NACCS
3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http://www.eicindia.net/public/login.aspx	http://115.112.238.86/public/coostat.us.aspx (X)	http://www.eicindia.net/public/login.aspx		인도-한국 e-C/O 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중	'06년 WCO DM2.0 요청서제출	SWIFT
4	인도네시아	IPSKA (Instansi Penerbit Surat Keterangan Asal) * Ministry of Trade 무역부 수산물검역청	http://e-ska.kemendag.go.id/cms.php		http://e-ska.kemendag.go.id/cms.php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WCO DM 3.0 적합성확 인 완료	INSW
5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 *국제통상산업부 국제상공회의소	http://newepco.dagangnet.com.my/dnex/login/	http://newepco.dagangnet.com.my/dnex/login/ (O)	http://newepco.dagangnet.com.my/dnex/login/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WCO DM 3.4 사용 작업 진행중	myTradelink (MNSW)
6	필리핀	관세국 수출조정부 :공인된 VASP (Value-Added Service Provider)의 e-COS 시스템	InterCommerceNetwork Services(INS) 시스템		InterCommerceNetwork Services(INS) 시스템			WCO DM 모델 구축 완료	PNSW구축 중
7	싱가포르	관세청	https://globletrade.services https://www.certoforigin.com	https://www.tradexchange.gov.sg (O)	https://globletrade.services https://www.certoforigin.com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TradeNet (Single Electronic Window)
8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국		http://reg-users.dft.go.th (O) https://verify.dft.go.th/verify		ATIGA FORM D (웹방식) 교환시범 운영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WCO DM 3.1 도입중	TNSW
9	베트남	산업무역부 상공회의소	http://www.ecosys.gov.vn/ http://covcci.com.vn/index.aspx?sMo dule=addmodule&stypeid=44&spag e=15		http://www.ecosys.gov.vn/ http://covcci.com.vn/index.aspx?sMo dule=addmodule&stypeid=44&spa ge=15	ATIGA FORM D 교환시범 참가예정	베트남-칠레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 중	VNACCS 시스템 운영중	VNSW
10	라오스	상공회의소 *상무부	http://www.ecolao.gov.la/		http://www.ecolao.gov.la/			WCO DM 모델 구축 완료	LNSW구축 중
11	캄보디아	상무부 CO Automation	https://co.moc.gov.kh/Verify/Index		https://co.moc.gov.kh/Verify/Index			WCO DM 모델 구축 완료	CNSW구축 중
12	미얀마	상업부 무역국 상공회의소 연맹	http://www.umfcci.net/ecoo		http://www.umfcci.net/ecoo				MNSW개발 중
13	칠레	산업협회 중앙원산지증명기관	http://www.sofofa.cl/Login/logemp.a sp?p=10	http://www.sofofa.cl/sofofa/index.asp x?channel=4377 (X)	http://www.sofofa.cl/Login/logemp. asp?p=10	칠레 - 콜롬비아 ('09년 9 월~), 칠레-에콰도르('14년 6월~) e-C/O 교환중 (발급시스템형)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중	WCO DM 3.1 구축 완료	SICEX
14	과테말라	VUPE의 SEADEx시스템 *경제부	https://seadex.export.com.gt/seadex/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https://seadex.export.com.gt/seadex/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VUPE *멕시코의 단일창구 VUPE 전자적교환 시범단계 착수
15	엘살바도르	통합대외무역시스템 SICEX		https://www.centrex.gob.sv (O)			중미 SIECA 국가들과의 e-C/O 교환시스템 구축 논의중	WCO DM 모델 구축 완료	
16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c 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c 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X)	https://salidademercancias.dian.gov. c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콜롬비아-멕시코('09년 9 월~), 콜롬비아-칠레('09년 9월) e-C/O 교환중 (발급시스템형)	콜롬비아-멕시코간의 원산지 절차 인종 완화 프로젝트 실행 중		VUCE *멕시코SISEX 연결 고려
17	페루	무역관광부	https://www.sunat.gob.pe/xssecurity/ SignOnVerification.htm?signonForwa rdAction=https%3A%2F%2Fwww.sun at.gob.pe%2Fol-ti-itrheregpagorhe.do	https://www.sunat.gob.pe/xssecurity/ SignOnVerification.htm?signonForwa rdAction=https%3A%2F%2Fwww.sun at.gob.pe%2Fol-ti-itrheregpagorhe.do (X)	https://www.sunat.gob.pe/xssecurity/ SignOnVerification.htm?signonFor wardAction=https%3A%2F%2Fwww. sunat.gob.pe%2Fol-ti-itrheregpa gorhe.do			WCO DM 3.3과 적합성 완료	VUCE
18	호주	CertConnect *Australian Business Consulting and Solutions (호 주상공회의소 대표, 외교통상부 인정) eCertify *Australian Business Chamber	http://ww2.tradestylus.com.au/nswbc/ https://www.ecertify.com/		http://ww2.tradestylus.com.au/nswbc/ https://www.ecertify.com/ AANZFTA e-PCO		AANZFTA e-C/O 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중		
19	뉴질랜드	Export NZ 상공회의소(지역별)	https://www.ecertify.com/ https://www.chamberdocs.co.nz/	https://exportnz.certifynz.co.nz/login (O) https://www.chamberdocs.co.nz/ (O)	https://www.ecertify.com/ AANZFTA e-PCO	뉴질랜드-중국 e-C/O교환중 (~17년4월) (웹방식)	AANZFTA e-C/O 교환 시스템 구축 논의중	WCO DM 3.2 구축 완료 및 NSW 적용	TSW
20	에콰도르	VUE의 Ecuapass 시스템 *산업자원부	https://portal.aduana.gob.ec/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https://portal.aduana.gob.ec/ (시스템 설치 후 접근 가능)	에콰도르-칠레e-C/O 교환중 ('14년 6월 ~) (발급시스템형)		WCO DM 3.0 구축완료 및 NSW와 연계작업 수행 중	VUE
21	멕시코	경제부(VUCE)	https://www.ventanillaunica.gob.mx/v ucem/index.htm		https://www.ventanillaunica.gob.mx/ vucem/index.htm	멕시코-콜롬비아e-C/O 교환중 ('09년 9월~)	멕시코-태평양동맹국 가입국 간 e-C/O 교환 논의 중	WCO DM 3.0 프로젝트 완료	VUCE
22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산업연맹(州 별) *연방정부대외무역국(SECEX)승인기관 (상파울루주)	http://www.certorigem.mdic.gov.br www.certificadoecool.com.br (상파울루주)	http://www.certorigem.mdic.gov.br (O) https://www.cod.cni.org.br/Home.aspx (O)	http://www.certorigem.mdic.gov.br (O) www.certificadoecool.com.br(상파울루주)	브라질-아르헨티나e-C/O 교환중 ('17년5월) (발급시스템형)	ALADI 회원국들과의 e-C/O 교환 논의중	WCO DM 3.5 프로젝트 완료	SISCO MEX

23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http://www.cac.com.ar/pubban/Certificados_de_Origen_192		http://www.cac.com.ar/pubban/Certificados_de_Origen_192	브라질-아르헨티나 e-C/O 교환중(~17년5월) (발급시스템형)	칠레, 우루과이와 e-C/O 교환 예정	지역간 프로젝트 MERCOSUR 전용 시스템 MODDA : WCO DM기반 작업 완료	VUCEA 구축 추진 중
		수출입연합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login.jsp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login.jsp				
		수출협회	http://scod.cera.org.ar/		http://scod.cera.org.ar/				
24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지정기관		http://www.vue.org.py (O)			향후 MERCOSUR 국가들과 e-C/O 교환 고려 중	지역간 프로젝트 MERCOSUR 전용 시스템 MODDA : WCO DM기반 작업 중	
25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WCO DM 3.0 구축 완료	
26	유럽	EU 집행위원회 시스템 (REX)		인증수출자 조회 시스템 (REX)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					

*피워임기관

제3장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현황 및 발전방안

1. e-C/O 논의 현황

-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서시스템(CO-PASS)¹³¹⁾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용과 통관소요시간 절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축되었다.
-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적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형식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CO위조방지, 그리고 원본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1> 한·중 CO-PASS 처리 절차



자료: 관세청

131)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관리 및 교환 그리고 지원해주는 모델로 국가간 e-C/O 자료교환에 있어서의 진위여부 그리고 통계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 브랜드명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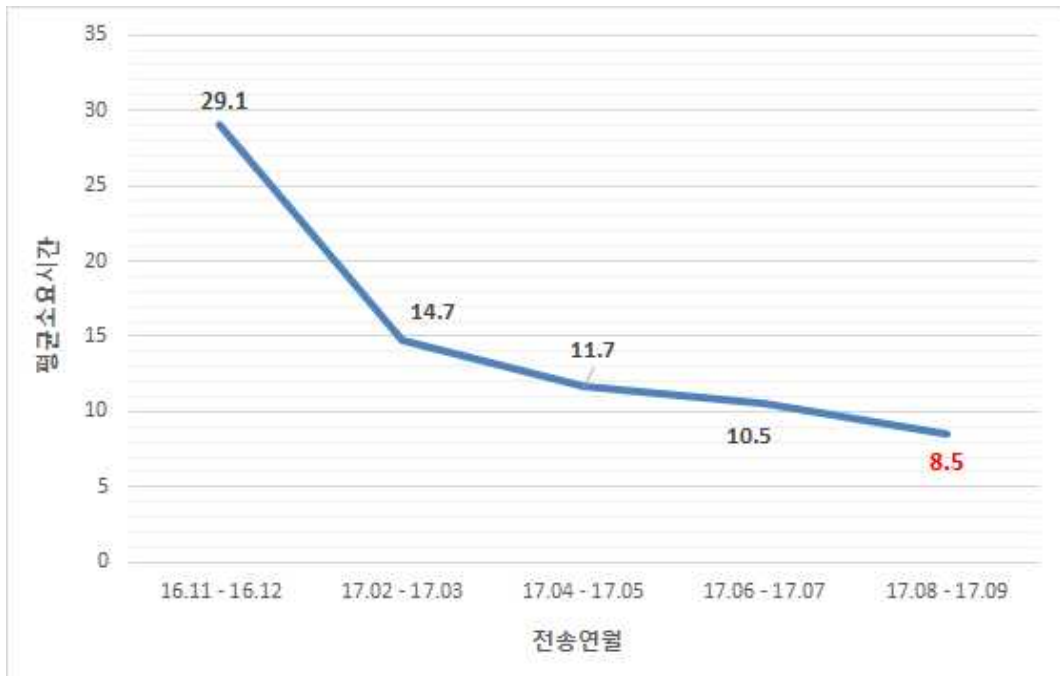
-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처리 절차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본 C/O를 전달해야 하는 형식으로 위조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자방식의 원산지증명서 (e-C/O)는 수출자 세관과 수입자 세관 당국 간 자료를 직접 교환하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 발송으로 서류가 수입국에 발송한 물품보다 더 늦게 도착할 경우에는 물품을 통관시키기 까지 시간이 걸려 통관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이 수입항에 하역 후 야적장 (container yard) 이용으로 창고비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e-C/O 교환 시스템인 CO - PASS를 이용하면서 통관지연에 따른 애로 감소와 부가적인 물류비용 (창고비용) 절감은 가능하나, 절감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FTA는 EODES 도입으로 이러한 e-C/O 교환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 시스템을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2017년 5월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이행환경 개선과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절감을 목표로 다른 국가들과의 e-C/O 시스템 확대 적용을 하고자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등 여러 협정상대국들과 관련 안건으로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 인도와의 e-C/O 도입 회의 (17.6)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시 「e-C/O교환 관련 안건」으로 향후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 측의 e-C/O 도입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며 e-C/O 도입 회의 등 한국과의 e-C/O 교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한-중미 FTA¹³²⁾ 이행 원활화를 위한 FTA 관계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132) '17년 4월 가서명

2. e-C/O 도입 · 확대 시 기대효과

- FTA 체결국과의 e-C/O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통관시간 절감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한-중 FTA 전자통관시스템인 CO-PASS 시행 이후의 통관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CO-PASS 이용에 있어서의 평균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자적으로 CO를 송부한 시점부터 수령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22> 한·중 CO-PASS e-C/O 교환 평균 소요시간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 한·중 CO-PASS 시행 후 통관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C/O 교환 평균 소요시간이 CO-PASS 시범기간 ('16년 11월 - '16년 12월)의 약 29시간 대비 정식시행기간('17년 08월 ~ '17년09월)은 약 8.5시간으로 20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e-C/O 시스템 도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통관시간 감소에 기여하며, 시스템이 안정화될수록 이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 해관 총서 제25호 공고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기존 각 지역 해관의 독립적 관리 감독체제를 철폐하고 통일적으로 통관 수속 및 관리가 가능한 「통관일체화」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식 발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화가 미비하여, 통관개혁 조치에 따른 한-중 통관시간 절감이라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한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본 C/O 제출이 잦은 편이다. FTA 既체결국과의 e-C/O 교환 확대를 통해 원본 C/O 제출 면제와 상호 간 신속한 원산지 증명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CO-PASS 도입이후 동일 분기 대비 절대적 발급 건(수)의 증가는 원산지 증명서 절차 간소화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향후 FTA 활용률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중 FTA 발효 1년차에는 종이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발효 2년차에는 EODES의 시행으로 전자적 원산

지증명서 교환을 실시하였다. 실제 발급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6년 1, 2분기의 13,417건 대비 '17년 1, 2분기는 71,9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e-C/O 교환시스템 안정화에 따라 1년 동안의 발급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한-중 FTA의 EODES를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 교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격 시행 이후 '17년 5월부터 '17년 10월까지의 총 발급 건수는 10만 건¹³³⁾ 정도이다. 한-중EODES를 통한 한-중간의 총 e-C/O 교환건수는 연간 약 35만 건¹³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3> 한·중EODES 전면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133) 한-중 APTA e-C/O 월별 발급 건(수)는 5월(17,480), 6월(16,019), 7월(15,736), 8월(17,472), 9월(20,751), 10월(15,378)로 월 평균 10만 건 이며 연 평균 20만 건 정도이다.

134) 16년 4분기 ~ 17년 2분기까지의 한-중 FTA e-C/O 총 발급 건수에 한-중 APTA e-C/O 연 평균 발급 건수를 합한 값이다.

- 실제 한-중 FTA 발효 1년차와 2년차의 수출입 활용률 변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중국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비관세조치 확대 및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서 對중국 수출 활용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55% 대비 '17년 2분기는 42%로 전년분기 대비 약 13%정도 떨어졌다.
- 수출품목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상이하게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對중국 수출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효 1년차인 '16년 2분기의 33% 대비 '17년 2분기는 36.2%로 전년분기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EODES 도입이 중소기업 FTA 활용으로의 편의를 증대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활용만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부재하여 일반 인력에 FTA 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e-C/O 교환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특혜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간소화의 결과로 중소기업의 FTA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른 수출활용 증가라 해석 가능하다.

<표 5>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활용률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기업	2016년 (발효 1년차)	49.0	46.5	55.0	54.5	50.2	61.4	50.5	61.2
	2017년 (발효 2년차)	41.0	60.7	42.0	60.5	-	-	-	-
중소기업	2016년 (발효 1년차)	26.1	53.9	33.0	63.4	37.1	66.0	37.8	66.9
	2017년 (발효 2년차)	39.4	68.5	36.2	68.1	-	-	-	-

자료: 관세청 DB 바탕으로 작성

- 한편,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활용률의 증가가 전적으로 한-중 EODES 도입에 따른 효과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우선 한-중EODES 도입 및 활용에 따라 기업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업측면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C/O는 기본적으로 종이형식(hard copy)로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이비용¹³⁵⁾이 발생한다. 그리고 C/O 원본 제출 의무화로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하기 이전에 C/O 원본이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서류 특급 발송 비용도 발생한다. 그러나 한-중 EODES의 도입으로 對중국 수출 시 원본 C/O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본 C/O 제출을 위한 우편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rray}{ccccccc} \text{우편비용} & 35 \text{ 만} & \times & 45,100\text{원} & = & \text{약 } 158\text{억 원} \\ & (\text{발급건수}) & & (\text{국제우편비용}) & & (\text{절감 예측비용}) \end{array}$$

- 또한, C/O의 전자적 발행으로 인해 기업의 FTA활용 편의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FTA활용 전담인력의 업무로드가 줄어들어 따른 인력비용 절감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 당 약 40만원의 인력비용 절감으로 한-중EODES 도입에 따른 전체 對중국 수출 기업¹³⁶⁾의 총 인력비용 절감은 약 128억 원¹³⁷⁾으로 예상된다.

$$\begin{array}{ccccccc} \text{인력비용} & 11 \text{ 건} & \times & 6 \text{ 일} & \times & 6,030\text{원} & = \text{약 } 40\text{만 원} \\ & (35\text{만 건} / 32,064\text{개(기업)}) & & \text{종이C/O발급 시} & & \text{'16년 기준} & (\text{절감 예측비용}) \\ & & & \text{통관까지} & & \text{최저임금} & \\ & & & \text{소요시간} & & & \end{array}$$

135) 세관 측에서의 C/O 종이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136) '16년 3분기부터 ' 17년 2분기까지의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2,064개이다.

137) 산출근거 : 32,064개 (기업) x 40만원 (인력비용)

- 이뿐만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CO 관련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화물이나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예를들어 물품납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입통관지연으로 인해 생산 및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기업이윤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C/O 교환을 하면 물류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EODES의 도입으로 '16년 3분기부터 '17년 2분기까지 3만 여개의 對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시간이 평균적으로 2일¹³⁸⁾ 정도 빨라짐에 따라 물류흐름이 빨라지는 효과에 도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2> 참조)

138) <그림122>에 따라 통관시간이 20일 (약 2일) 단축되었다.

3. 한국 e-C/O 시스템 발전방안

(1) C/O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애로가 많고,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엄격한 국가

○ 한국은 우선적으로 C/O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 대상으로 한국과의 e-C/O 교환을 제안한 상태이다. e-C/O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지체 사례가 많은 국가가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 C/O 관련 문제로는 C/O 인쇄상태, 서명 및 인장의 색, 단순기재 오류, 전자인장 인정거부 등을 이유로 통관지체 사례가 ‘15년 66건에서 ‘16년 193건으로 급증하였다¹³⁹⁾.
- 기관발급방식인 아세안·인도·중국에서는 C/O 진위 의심 시 「통관보류 또는 담보금 납부 후 통관」으로 C/O 심사가 엄격한 편이다.

<표 6> 既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협정	C/O 발급방식	통관애로 발생빈도	e-C/O교환 적합도
칠레	자율	소수	적합(2순위)
EFTA	자율	없음	부적합
ASEAN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인도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중국	기관	다수발생	적합(1순위)
EU, 터키	자율	없음	부적합
페루	자율	소수	적합(2순위)
콜롬비아	자율	소수	적합(2순위)
베트남	기관	소수	적합(1순위)
미국	자율	없음	부적합
호주	자율, 기관병행	없음	부적합
캐나다	자율	없음	부적합
뉴질랜드	자율	없음	부적합
중미6개국 (발효예정)	자율	소수 (예상)	적합(2순위)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139)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2) C/O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국가

- 한국이 현재까지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한 상대국의 C/O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다.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보통 C/O 표준서식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지만 C/O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기업 비용 발생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표 7> 既체결 FTA e-C/O 교환 적합도 종합

협정	발효일	C/O 발급방식	C/O서식	C/O원본 요구제출
칠레	'04.04	자율	표준서식	X
EFTA	'06.09	자율	송품장	X
ASEAN	'07.06	기관	표준서식	O
인도	'10.01	기관	표준서식	O
중국	'15.12	기관	표준서식	X ¹⁴⁰⁾
EU	'11.07	자율	송품장	X
페루	'11.08	기관 → 자율	표준서식	O
콜롬비아	'16.07	자율	표준서식	O
베트남	'15.12	기관	표준서식	O
미국	'12.03	자율	자율	X
호주	'14.12	자율, 기관병행	없음	X
캐나다	'15.01	자율	없음	X
뉴질랜드	'15.12	자율	없음	X
중미6개국	(발효예정)	자율	표준서식	-

자료: FTA 포털 정보 저자 재정리

- 따라서 향후 e-C/O 교환 시스템을 제안할 국가들은 C/O의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율발급 또한 교환 가능한 표준서식과 플랫폼만 갖추어 진다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로까지 e-C/O 확대가 가능하겠다. 이럴 경우 C/O의 기관발급과 자율

140) 한-중EODES를 통한 e-C/O 교환 이후 C/O원본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

발급의 C/O 교환패턴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발급의 주체가 상이한 것 이외에는 발급형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3) e-C/O 교환 추진대상국의 기존에 구축된 국가 간 자료교환시스템에 한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추진 제안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교환 모델의 시스템은 발급시스템형, 전용회선형, 인터넷형, 번호통지형으로 총 네 가지이다. 해당 모델은 e-C/O 교환 추진상대국의 기술적 여건에 맞춰 원활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표 8> e-C/O 교환모델 현황

구분	특징
발급시스템형	·중남미형 ·수출국 세관에서 e-C/O 발급시스템을 제공 ·수출자는 발급시스템으로 e-C/O를 작성 하여 수입자에게 PDF형식으로 전송
전용회선형	·중국형 ·세관 당국간 전용선을 통해 e-C/O 자료 실시간 교환 (한-중 e-C/O 교환)
인터넷형	·관세청 기본모델 (국가 간 자료교환사업) ·세관 당국 간 보안인터넷 망을 통해 e-C/O 자료 실시간 교환
번호통지형	·이스라엘형 ·수출자가 C/O번호를 수입자에게 제공 ·수입국 세관은 C/O번호를 수출국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 조회

자료: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 이외에도 현재 한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 모델은 대표적으로 WCO DM (Data Model)모델이 있다. 국제 관세기구는 2005년 WCO DM 버전 2.0을 출시하였으며 다음 3.0버전은

2009년 말에 출시되었다. DM 모델의 버전2.0버전과 버전3.0의 주된 차이점은 버전3.0의 경우 세관 혹은 국경 간 상호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절차인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WCO DM 3.0버전은 최적화된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통관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의 국제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표 9> WCO DM 모델 버전별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요약)
WCO DM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2월에 출시된 WCO 데이터 모델 버전 3.0 - 단일창구 (SINGLE WINDOW) 프로젝트에 적합 - 관세, 해양 안전, 통계, 농업, 식품 안전, 환경 포함 - WCO 단일 창구 데이터 통일 지침 포함 - 새로운 UN / EDIFACT 메시지 개발 - XML 생성
WCO DM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9월 버전3.1 출시 - 여러 국가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 수용 - 버전 3.0의 전체 범위에 기반 - 단일 창구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이 시작 - 온라인 eHandbook, ePrimer 및 eSupport 게시
WCO DM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9월 최종 버전 3.2 출시 - 정렬 된 수출 수입 자료 집합 - 상품에 대한 정정, 중요한 인감 정보 - 생산 된 IMO FAL & Valuation Sub 모델
WCO DM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추가적 세관 절차가 포함 - 원산지 증명서, 위생 및 식물 위생 증명서 포함
WCO DM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출시되어 ASEAN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포함 - Maritime Single Window (초기 단계) - eCert에 근거한 전자 식물 위생 증명서 - 국제식품규격 협회 인증서 - EU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WCO DM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출시되어 EU e-Maritime Single Window에 대한 정보 패키지 포함 (최종) - UNESCO-WCO 문화재 수출 모델 인증서 - 동물 건강 증명서 (일반)에 관한 정보 패키지 포함
WCO DM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출시되어 EU CDM-DIP, ASYCUDA-DIP - IMO-FAL양식을 WCO DM으로의 연계 작업 시작

자료: WCO(2015), More about information packages & the future of the WCO data model

- e-C/O 교환 확대를 위해서는 추진 상대국의 기술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e-C/O 교환모델 중 추진상대국이 既교환중인 모델(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여 향후 교환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D와 같은 경우에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적으로 시범 교환 중에 있다. ATIGA FORM-D의 형식은 상호 간 WCO DM 모델 3.4 버전의 기술적 프레임이 갖춰진 하에서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인 UNI-PASS는 관세 행정의 표준화에 따라 WCO DM 3.4 모델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 FTA간의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 이미 지역 간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ATIGA FORM-D의 기술적 프레임에 한국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의 e-C/O 교환 표준화 기술 프레임 제안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관련 국제규범이 GATT 제9조(Marks of Origin) 및 CCC Kyoto 협약부속서(D.1 내지 D.3)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원활한 FTA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없는 상태이다.
-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논의는 무역원활화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총회(AFACT)에서 2004년 프로젝트화 되어 추진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당시 e-C/O를 부분적으로 발급하는 데에 그친 상태이다.

- 앞으로 국가 간 E-C/O 교환 추진 시에 전자 무역 서류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WCO, ISO, UN, AFACT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통일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추이를 보며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e-C/O 교환 확대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Bilateral) 상호인정(호환) 보다는 더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WCO DM 표준 모델과 상호 호환 가능하며 국제 표준 모델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

우리나라는 한-중 FTA의 e-C/O 교환과 APTA로의 시스템 사용 범위 확장을 통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타 국가들과의 세계적인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에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16년 전체 통관애로 분석에 따르면 전체 511건중 FTA 원산지분야가 47% (240건)를 차지하며, 이중 193건인 81%가 C/O 불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C/O 인쇄상태, 서명·인장의 색, 단순기재 오류, 전자진장 인정거부 등을 유로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C/O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계적 e-C/O 교환 논의 흐름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국가 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 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추진대상국일 가능성이 큰 FTA 既체결국·협상진행국 그리고 여건조성국에 해당하는 총 26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국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를 조사하고, e-C/O 관리 현황 즉, e-C/O 신청·조회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국이 타 국가와의 e-C/O 교환 여부 및 계획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국의 무역원활화의 일환인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진행 현황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국가별 단일창구 시스템 (National Single Window System)의 구축 여부에 관해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국가별로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스템의 기본 플랫폼이 국제 표준을 따르는지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국 중 아세안 국가의 미얀마,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23개 국가들에서는 e-C/O 신청 및 발급 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급 주체에 따라 정부기관 (산업부, 무역통상부 등), 상공회의소, (산업별) 연맹·협회 등의 민간기관들이 운영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출업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C/O 진행정보를 조회사이트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e-C/O 교환 여부 및 계획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상황이다. 특징적으로 e-C/O 교환 (시범 단계 포함)이 있는 국가들은 지역무역 협정을 이루고 있는 근접 국들과의 양자간 (Bilateral) 혹은 지역단위 (Subregional) 형태로 e-C/O 교환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국 중 아세안회원국들과 중남미의 경우가 지역단위 형태로 인터넷형과 발급시스템형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뿐만이 아닌 전자적 통관 서류 교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의 출현과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수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자적 통관 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든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는 UN/CEFACT의 권고 33에 따라 정보와 문서를 표준화하고 무역 및 운송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별로 단일 창구 (National Single Window)를 구축하여, 세관신고서, 관세 지불, 원산지증명서 등을 일원화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아세안과 중남미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NSW 구축을 위한 자금 및 기술적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구축단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국가단일창구 (NSW)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중 4개 국가는 현재 기업이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등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 하던 절차를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하였다.

또한, 이 해당 국가들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별 국가단일창구를 통합한 아세안 단일창구 (ASW)를 운영하여 아세안 역내 원산지증명서 (Intra-ASEAN certificate of origin, ATIGA Form D)를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실시간 구현 단계의 일환으로 「Live Implementation Phase」에 참여하여 역내

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등을 공유하고 있다. ASW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 D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는 여전히 종이형식의 Form D 형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e-C/O 교환을 근접 국가들과 양자간에 활발히 시행중에 있으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콜롬비아, 칠레·에콰도르, 칠레·우루과이, 콜롬비아·에콰도르, 콜롬비아·멕시코) 중남미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합 무역 시스템에 연동시킴에 따라 통관 서류를 한 곳에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LADI) 속하는 브라질은 ALADI 회원국들과 공통적인 프레임워크 형식 하에 e-C/O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17년 5월부터 브라질·아르헨티나 e-C/O 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2011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맺은 태평양동맹은 국가 단일창구의 정보처리상호운용에 관해 협정문 상의 무역원활화 장(chapter)에 추가하고자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렇게 조사대상국들의 전자자료교환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봄에 따라 타 국가와 e-C/O 교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e-C/O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의 확대는 상대국과의 e-C/O 교환 시스템 플랫폼이 상호 연동이 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플랫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여부와 전자무역서류 교환에 있어 국제표준을 따르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도 e-C/O 교환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교환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e-C/O 교환 추진대상국이 既구축한 e-C/O 교환 모델에 한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국가 단일창구로 e-C/O 교환 모델을 연계하여 상대국 단일 창구와 연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간 E-C/O 교환 추진 시에 전자 무역 서류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WCO, ISO, UN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통일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추이를 보며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e-C/O 교환 확대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Bilateral) 상호인정(호환) 보다는 더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WCO DM 표준 모델과 상호 호환 가능하며 국제 표준 모델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세청 (2016),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e-C/O 교환확대 추진 기본 계획”
- 외교부 “베트남 현지신문 주요기사”, 2016.11.17.,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4658

<해외문헌>

- ALADI(2014), LA CERTIFICACIÓN DE ORIGEN DIGITAL DE LA ALADIUNA HERRAMIENTA PARA LA FACILITACIÓN DEL COMERCIO REGIONAL
- APEC(2011),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in APEC: A Case Study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O)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2017), Digital Trade Facilitation: Paperless Trad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Dagang Net(2016) Electronic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ePCO
- ERIA(2015), AEC Blueprint Implementation Performance and Challenges:Trade Facilitation
- ESCAP(2017), Overview of APTA and E-CO under APTA Cholpon-Ata, Kyrgyzstan
- United Nations(2012), Data Harmonization and Modelling Guide for Single Window Environment
- UNESCAP(2013), Business Process Analysis For Agricultural Trade Facilitation in Myanmar
- World Customs Organization(2007), WCO Data Model, SINGLE WINDOW DATA HARMONISATION
- World Customs Organization(2015), More about information packages & the future of the WCO data model
- World Customs Organization(2017), Global adoption of th WCO Data Model
- JIPEDEC(2008), 特惠原産地証明書の電子化に係るガイドライン
- 日本貿易会(2008),原産地証明書の電子化について~証明書番号の連絡による確認スキーム~

- 日本貿易関係手続簡易化協会(2012), アセアン・シングルウィンドウ(ASW)構築 計画に関する調査報告書

<해외사이트>

- 과테말라 VUPE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조회사이트
<http://vupe.export.com.gt/wp-content/blogs.dir/8/files/IT-01-002XInstructivoXElaboraciXXnXdXCertificadosXdXOrigenXFormasXA-SeadexXWeb.pdf>
- 뉴질랜드 Export NZ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s://exportnz.certifynz.co.nz/login>
- 뉴질랜드 NZC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절차
<http://www.ivslimited.co.nz/services/export-services/certificate-of-origin/determing-origin-questionnaire-cfta>
- 뉴질랜드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http://www.aucklandchamber.co.nz/global/export-document-certification/>
-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통합사이트
<http://www.chamberdocs.co.nz/>
- 뉴질랜드 단일창구
<http://www.tsw.govt.nz/prod/external/application/log>
- 라오스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http://www.ecolao.gov.la>
- 라오스 단일창구
<http://www.laonsw.net>
- 라오스 트레이드포털
<http://www.laotradeportal.gov.lain/app.html>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http://www.sela.org/>
-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원산지증명서 인증 기술 여건
<http://www.aladi.org/sitioAladi/facilitacionComercioCOD.html>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특혜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newepco.dagangnet.com.my>
- 말레이시아 단일창구
<http://www.mytradelink.gov.my/>
- 멕시코 단일창구
<http://www.ventanillaunica.gob.mx/vucem/index.htm>

- 베트남 산업무역부 전자원산지증명서 발행·관리시스템
<http://www.ecosys.gov.vn/>
- 베트남 상공회의소
www.covcci.com.vn
- 베트남 단일창구
<http://vnsw.gov.vn/>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이트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regimes-de-origem/2475-certificado-de-origem-digital-cod>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www.certorigem.mdic.gov.br>
- 브라질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
<http://www.fiesp.com.br/certificado-de-origem-2/>
- 브라질 각 주별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http://portal.siscomex.gov.br/servicos/acordos-preferenciais/certificado-de-origem-preferencial-1>
-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www.cod.cni.org.br/Home.aspx>
- 브라질 e-Cool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www.certificadoecool.com.br
- 브라질 대외무역시스템
<http://www.portalsiscomex.gov.br/>
- 싱가포르 tradexchange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http://www.tradexchange.gov.sg/>
- 싱가포르 Gets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http://www.crimsonlogic.com/news.html>
-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http://comercioexterior.cac.com.ar/>
- 아르헨티나 수출입연합
<http://www.aiera.org/certificacion-digital.php>
-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원산지증명서
http://www.cera.org.ar/new-site/contenidos.php?p_seccion_izq_id=343
- 아르헨티나 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http://www.cac.com.ar/pubban/Certificados_de_Origen_192

- 아르헨티나 수출입연합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https://codaiera.com.ar/proyectocod/login.jsp>
- 아세안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asean.org>
- 아세안-중국 FTA 홈페이지
<http://www.asean-cn.org/>
-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http://www.chamber.org.il/foreigntrade/carnet/1124/>
- 인도 수산물수출개발원
http://mpeda.gov.in/MPEDA/certificate_origin.php#
- 인도 섬유위원회
<http://textilescommittee.nic.in/services/certificate-origin>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icindia.gov.in/Services/Compliance/compliance.aspx47>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특혜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115.112.238.86/public/coostatus.aspx>
- 인도 SWIFT 단일창구
<http://www.icegate.gov.in/SWIFT>
- 인도네시아 단일창구
<http://www.insw.go.id/>
- 인도네시아 무역부 전자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조회 사이트
<http://e-ska.kemendag.go.id/cms.php>
- 인도네시아 수산검역청 홈페이지
<http://www.bkipm.kkp.go.id/>
- 일본 상공회의소
<http://www.jcci.or.jp/>
- 일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
<http://www.naccs.jp>
- 에콰도르 ECUAPASS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portal.aduana.gob.ec/>
- 중국 검험검역전자업무망
<http://www.eciq.cn/>
- 중국 信城通네트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스템
<http://www.itownet.cn/>

-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인증 절차
http://oldwww.co.ccpit.org/Consulate/Consulate_Flow.html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http://www.chinaorigin.gov.cn/>
- 칠레 산업연합회
<http://www.sofofa.cl/Login/logemp.asp?p=10>
- 칠레 통합대외무역시스템 SICEX
<http://www.sicexchile.cl/portal/web/sicex/inicio>
- 캄보디아 전자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사이트
<http://co.moc.gov.kh/Verify/Index>
- 콜롬비아 DIAN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http://salidademercancias.dian.gov.co/WebArquitectura/DefLogin.faces>
- 콜롬비아 DIAN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http://certificadosdeorigen.dian.gov.co/Verifica/in>
- 태국 단일창구
<http://www.thainsw.net/INSW/index.jsp>
- 파라과이 단일창구
<http://www.vue.org.py/>
- 페루 VUCE 대외무역단일창구
<http://www.sunat.gob.pe/xssecurity/SignOnVerification.htm>
- 필리핀 단일창구
<http://nsw.gov.ph/dexmex.php>
- 호주 남부상공회의소
<http://business-sa.com/>
- 호주 비즈니스 컨설팅 및 솔루션
<http://www.australianbusiness.com.au>
- 호주 퀸즈랜드 상공회의소
www.cciq.com.au
- 호주 서부상공회의소
www.cciwa.com
- 호주 산업협회
<http://www.aigroup.com.au/business-services/trade/certificateoforigin/>
- 호주 Business Chamber 특혜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조회사이트
<http://ww2.tradestylus.com.au/nswb- c/>

- 호주 AANZ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http://ww2.tradestylus.com.au/cciq/>
- 호주 전자원산지증명서 시스템
<http://www.ecertify.com/>
- EU 인증수출자등록시스템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validation.jsp?Lang=en